

제19138호 2017. 11. 23.(목)

【부 령】

○보건복지부령제534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3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7-212호(국적회복) 16

○국방부고시제2017-39호(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 20

○환경부고시제2017-213호(전국 생태·자연도(生態·自然圖) 일부 수정·보완) 21

○환경부고시제2017-214호(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2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8호(김포한강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5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31

○문화재청고시제2017-137호(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 135

○문화재청고시제2017-138호(사적 제152호 함양 사근산성 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136

○문화재청고시제2017-140호(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 140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7-52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140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8호(국적상실)..... 141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1호(국적상실)..... 14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0호(도로구역 결정<변경>) 143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1호(접도구역지정 및 해제) 14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502호(지형도면<변경>) 144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55호(시설항로표지 신설) 145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43호(시설항로표지 현상변경)..... 14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7-44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 변경) 145

【공 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7호(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47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8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8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19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49

(이면 계속)

○행정안전부공고제2017-221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150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5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150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7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1
○보건복지부공고제2017-688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2
○환경부공고제2017-779호(화학물질의 용기·포장에 대한 표시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53
○환경부공고제2017-781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3
○환경부공고제2017-782호(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54
○환경부공고제2017-784호(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55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0호(2017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156
○고용노동부공고제2017-381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59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596호(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60
○해양수산부공고제2017-927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1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0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규등록).....	162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7-101호(엑셀러레이터 신규등록).....	163
○통계청공고제2017-185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63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89호(반월특수지역 개발구역 중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조성사업 4차지역 준공인가).....	164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6호(항만공사 실시계획).....	168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67호(항만공사 실시계획).....	168
○서부지방산림청공고제2017-43호(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예정지).....	169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4호(은평 재정비촉진지구 준주거시설2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70
○서울특별시고시제2017-425호(은평 재정비촉진지구 BL2-14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171
○경기도고시제2017-273호(오산 오산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173
○경기도공고제2017-1486호(축정대행업 신규등록)	185
○강원도공고제2017-1278호(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자진반납>)	185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69호(건축설계공모)	186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70호(건축설계공모)	190
○부산광역시교육청공고제2017-271호(건축설계공모)	193
○(서울)구로구공고제2017-1709호(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197
○안동시공고제2017-2119호(도산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개최) ...	197

【상 훈】

○서훈(국토교통부)	198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	202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202

●국토교통부고시제2017-758호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2007.4.20 개정 전 규정)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5차), 개발계획 변경(20차) 및 실시계획 변경(18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 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1.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 변경(15차)

가. 지구 명칭 (변경없음) :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10,865,251.0㎡ → 10,864,559.7㎡ (감 691.3㎡)

라. 지구의 지정(변경)일자 : 관보고시일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20차) 승인

가. 택지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개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변경없음) : 개재생략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

다. 개발계획의 개요

1)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개재생략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 계획(변경)

○ 변압기 설비용량은 지구내 변전소를 신설하여 공급

- 기정 : 278,452kVA → 변경 : 255,322kVA

○ 전력공급설비는 전기공급자가 부담

나) 도시가스 공급계획(변경)

○ 개발난방용(단독주택, 교육시설, 종교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및 취사용 LNG를 서울도시가스(주) 및 인천도시가스(주)로부터 수급

- 기정 : 25,098천Nm³/년 → 변경 : 23,637천Nm³/년

다) 열공급 계획(변경)

○ 집단에너지 사업자인 청라에너지(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 기정 : 423.62Gcal/h → 변경 : 397.02Gcal/h

라) 집단에너지 공급 타당성 검토 (변경)

구분		검토기준	당해사업지구	판정	장기지구 포함시	판정
최대열부하(Gcal/h)	기정	150이상	423.62	○	453.71	○
	변경	150이상	397.02	○	427.11	○
열사용량(Gcal/년)	기정	300,000이상	1,079,998.7	○	1,166,990.71	○
	변경	300,000이상	1,057,349.8	○	1,144,341.81	○
열밀도(Gcal/km ² ·h)	기정	30이상	39.0	○	39.0	○
	변경	30이상	36.5	○	36.5	○

3) 통신시설계획 (변경)

- 가정용, 근린생활시설용, 상업용, 공공용으로 구분하여 수요추정
- 기정 : 124,982회선 → 변경 : 128,906회선

4)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 일반도로 (변경)
 - 기정 : 303개 노선, 92,754m → 변경 : 304개 노선, 92,764m
-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 기정 : 263개 노선, 22,075m → 변경 : 264개 노선, 22,065m
- 자전거전용도로 (변경)
 - 기정 : 70개 노선, 11,168m → 변경 : 71개 노선, 11,160m
- 기타도로 (변경)
 - 기정 : 163,643.4㎡ → 변경 : 163,816.9㎡

나) 주차장 계획 (변경)

- 기정 : 42개소, 74,525.5㎡ → 변경 : 42개소, 74,523.3㎡

5) 대상토지의 단계별 구성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6)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7) 관계기관의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발계획 변경 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라. 개발기간(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총계	10,865,251.0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15.2	513,953.0	10,864,559.7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15.2	513,261.7	감 691.3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693,118.3	2,009,156.6	794,936.2	546,982.4	167,744.1	174,299.0	-	3,693,118.3	2,009,156.6	794,936.2	546,982.4	167,744.1	174,299.0	-	-	34.0	34.0
	단독주택	542,847.1	175,161.1	151,921.1	52,204.1	84,797.3	78,763.5	-	542,847.1	175,161.1	151,921.1	52,204.1	84,797.3	78,763.5	-	-	5.0	5.0
	필지형	407,840.2	175,161.1	151,921.1	52,204.1	28,553.9	-	-	407,840.2	175,161.1	151,921.1	52,204.1	28,553.9	-	-	-	3.8	3.8
	블록형	135,006.9	-	-	-	56,243.4	78,763.5	-	135,006.9	-	-	-	56,243.4	78,763.5	-	-	1.2	1.2
	공동주택	3,066,730.3	1,794,941.4	618,028.2	480,844.9	80,468.0	92,447.8	-	3,066,730.3	1,794,941.4	618,028.2	480,844.9	80,468.0	92,447.8	-	-	28.2	28.2
	연립주택	242,147.8	143,542.2	98,605.6	-	-	-	-	242,147.8	143,542.2	98,605.6	-	-	-	-	-	2.2	2.2
	아파트	2,824,582.5	1,651,399.2	519,422.6	480,844.9	80,468.0	92,447.8	-	2,824,582.5	1,651,399.2	519,422.6	480,844.9	80,468.0	92,447.8	-	-	26.0	26.0
근린생활시설	83,540.9	39,054.1	24,986.9	13,933.4	2,478.8	3,087.7	-	83,540.9	39,054.1	24,986.9	13,933.4	2,478.8	3,087.7	-	-	0.8	0.8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68,889.3	184,084.2	164,369.7	164,905.3	-	13,292.1	142,238.0	800,481.0	184,084.2	164,369.7	164,905.3	-	13,292.1	273,829.7	증 131,591.7	6.2	7.4
	주상복합	83,706.8	-	-	83,706.8	-	-	-	83,706.8	-	-	83,706.8	-	-	-	-	0.8	0.8
	상업용지	197,483.9	-	135,664.2	61,819.7	-	-	-	197,483.9	-	135,664.2	61,819.7	-	-	-	-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0	-	-	-	-	-	18,865.0	20,001.5	-	-	-	-	-	20,001.5	증 1,136.5	0.2	0.2
	업무용지	91,518.2	30,141.8	28,705.5	19,378.8	-	13,292.1	-	91,518.2	30,141.8	28,705.5	19,378.8	-	13,292.1	-	-	0.8	0.8
	자족시설용지	123,373.0	-	-	-	-	-	123,373.0	253,828.2	-	-	-	-	-	253,828.2	증 130,455.2	1.1	2.4
	도시지원시설	153,942.4	153,942.4	-	-	-	-	-	153,942.4	153,942.4	-	-	-	-	-	-	1.4	1.4
SciencePark	59,739.0	59,739.0	-	-	-	-	-	59,739.0	59,739.0	-	-	-	-	-	-	0.5	0.5	
Business Incubator	94,203.4	94,203.4	-	-	-	-	-	94,203.4	94,203.4	-	-	-	-	-	-	0.9	0.9	
도시형공업	-	-	-	-	-	-	-	-	-	-	-	-	-	-	-	0.0	0.0	

구분	면적(m ²)																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소계	6,503,243.4	1,389,496.9	999,653.8	3,142,855.6	145,998.0	453,524.1	371,715.0	6,370,960.4	1,389,496.9	999,653.8	3,142,855.6	145,998.0	453,524.1	239,432.0	감 132,283.0	59.8	58.6		
교육시설	361,005.2	184,883.7	100,554.5	60,862.1	4,808.3	9,896.6	-	361,005.2	184,883.7	100,554.5	60,862.1	4,808.3	9,896.6	-	-	3.3	3.3		
공공편의시설	48,231.0	23,734.5	11,755.8	7,985.7	-	-	4,755.0	47,031.0	23,734.5	11,755.8	7,985.7	-	-	3,555.0	감 1,200.0	0.4	0.4		
종합의료시설	25,575.6	25,575.6	-	-	-	-	-	25,575.6	25,575.6	-	-	-	-	-	-	0.2	0.2		
사회체육시설	27,179.5	14,851.2	12,328.3	-	-	-	-	27,179.5	14,851.2	12,328.3	-	-	-	-	-	0.3	0.3		
문화시설	46,164.6	-	-	-	-	46,164.6	-	46,164.6	-	-	-	-	46,164.6	-	-	0.4	0.4		
복지시설	44,549.8	37,318.7	4,111.0	3,120.1	-	-	-	44,549.8	37,318.7	4,111.0	3,120.1	-	-	-	-	0.4	0.4		
청소년시설	14,992.9	-	-	-	-	14,992.9	-	14,992.9	-	-	-	-	14,992.9	-	-	0.1	0.1		
종교시설	30,451.2	5,948.3	6,768.6	11,888.0	3,043.9	1,981.4	821.0	30,457.0	5,948.3	6,768.6	11,888.0	3,043.9	1,981.4	826.8	증 5.8	0.3	0.3		
공급차리시설	58,864.4	5,250.2	7,596.4	46,017.8	-	-	-	58,864.4	5,250.2	7,596.4	46,017.8	-	-	-	-	0.5	0.5		
위험물저장 및처리시설	10,654.1	5,117.9	-	1,922.2	-	2,286.0	1,328.0	10,654.5	5,117.9	-	1,922.2	-	2,286.0	1,328.4	증 0.4	0.1	0.1		
주차장	74,525.5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4.0	74,523.3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1.8	감 2.2	0.7	0.7		
유보지	130,914.0	-	-	-	-	-	130,914.0	-	-	-	-	-	-	-	감 130,914.0	1.2	0.0		
농업관련용지	821.1	-	821.1	-	-	-	-	821.1	-	821.1	-	-	-	-	-	0.0	0.0		
공원	2,372,214.7	59,466.6	106,179.4	1,986,454.2	17,275.0	114,630.5	88,209.0	2,372,178.5	59,466.6	106,179.4	1,986,454.2	17,275.0	114,630.5	88,172.8	감 36.2	21.8	21.8		
경관녹지	90,423.7	43,956.6	-	46,370.0	97.1	-	-	90,423.7	43,956.6	-	46,370.0	97.1	-	-	-	0.8	0.8		
완충녹지	116,060.7	46,496.9	23,382.0	23,689.6	-	10,566.2	11,926.0	116,019.2	46,496.9	23,382.0	23,689.6	-	10,566.2	11,884.5	감 41.5	1.1	1.1		
공공공지	570,702.2	127,770.3	168,360.4	119,395.6	36,257.2	84,164.7	34,754.0	569,931.3	127,770.3	168,360.4	119,395.6	36,257.2	84,164.7	33,983.1	감 770.9	5.3	5.2		
유수지	197,184.1	28,895.2	-	63,327.1	43,082.7	61,879.1	-	197,184.1	28,895.2	-	63,327.1	43,082.7	61,879.1	-	-	1.8	1.8		
광장	151,068.5	114,713.6	13,063.7	21,093.4	1,151.9	1,045.9	-	151,068.5	114,713.6	13,063.7	21,093.4	1,151.9	1,045.9	-	-	1.4	1.4		
하천	75,363.0	-	-	56,936.8	-	3,748.2	14,678.0	75,875.1	-	-	56,936.8	-	3,748.2	15,190.1	증 512.1	0.7	0.7		
수로대체용지	7,722.0	-	-	7,722.0	-	-	-	7,722.0	-	-	7,722.0	-	-	-	-	0.1	0.1		
도로	2,048,235.6	643,53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826.0	2,048,399.1	643,53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989.5	증 163.5	18.8	18.9		
군시설용지	340.0	-	-	340.0	-	-	-	340.0	-	-	340.0	-	-	-	-	0.0	0.0		

바.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면적(변경)

- 기정 : 10,865,251.0m²

(1단계 : 3,582,737.7m², 2단계 : 1,958,959.7m², 3단계 : 3,854,743.3m², 4단계 : 313,742.1m², 5단계 : 641,115.2m², 6단계 : 513,953.0m²)

- 변경 : 10,864,559.7m² (감 691.3m²)

(1단계 : 3,582,737.7m², 2단계 : 1,958,959.7m², 3단계 : 3,854,743.3m², 4단계 : 313,742.1m², 5단계 : 641,115.2m², 6단계 : 513,261.7m²)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 등의 관계도서는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 : 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18차) 승인

가.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게재생략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변경없음) : 게재생략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1)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게재생략

2)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게재생략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비율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총계	10,865,251.0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15.2	513,953.0	10,864,559.7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15.2	513,261.7	감 691.3	100.0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3,693,118.3	2,009,156.6	794,936.2	546,982.4	167,744.1	174,299.0	-	3,693,118.3	2,009,156.6	794,936.2	546,982.4	167,744.1	174,299.0	-	-	34.0	34.0
	단독주택	542,847.1	175,161.1	151,921.1	52,204.1	84,797.3	78,763.5	-	542,847.1	175,161.1	151,921.1	52,204.1	84,797.3	78,763.5	-	-	5.0	5.0
	필지형	407,840.2	175,161.1	151,921.1	52,204.1	28,553.9	-	-	407,840.2	175,161.1	151,921.1	52,204.1	28,553.9	-	-	-	3.8	3.8
	블록형	135,006.9	-	-	-	56,243.4	78,763.5	-	135,006.9	-	-	-	56,243.4	78,763.5	-	-	1.2	1.2
	공동주택	3,066,730.3	1,794,941.4	618,028.2	480,844.9	80,468.0	92,447.8	-	3,066,730.3	1,794,941.4	618,028.2	480,844.9	80,468.0	92,447.8	-	-	28.2	28.2
	연립주택	242,147.8	143,542.2	98,605.6	-	-	-	-	242,147.8	143,542.2	98,605.6	-	-	-	-	-	2.2	2.2
	아파트	2,824,582.5	1,651,399.2	519,422.6	480,844.9	80,468.0	92,447.8	-	2,824,582.5	1,651,399.2	519,422.6	480,844.9	80,468.0	92,447.8	-	-	26.0	26.0
근린생활시설	83,540.9	39,054.1	24,986.9	13,933.4	2,478.8	3,087.7	-	83,540.9	39,054.1	24,986.9	13,933.4	2,478.8	3,087.7	-	-	0.8	0.8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계	668,889.3	184,084.2	164,369.7	164,905.3	-	13,292.1	142,238.0	800,481.0	184,084.2	164,369.7	164,905.3	-	13,292.1	273,829.7	증 131,591.7	6.2	7.4
	주상복합	83,706.8	-	-	83,706.8	-	-	-	83,706.8	-	-	83,706.8	-	-	-	-	0.8	0.8
	상업용지	197,483.9	-	135,664.2	61,819.7	-	-	-	197,483.9	-	135,664.2	61,819.7	-	-	-	-	1.8	1.8
	문화예술용지	18,865.0	-	-	-	-	-	18,865.0	20,001.5	-	-	-	-	-	20,001.5	증 1,136.5	0.2	0.2
	업무용지	91,518.2	30,141.8	28,705.5	19,378.8	-	13,292.1	-	91,518.2	30,141.8	28,705.5	19,378.8	-	13,292.1	-	-	0.8	0.8
	자족시설용지	123,373.0	-	-	-	-	-	123,373.0	253,828.2	-	-	-	-	-	253,828.2	증 130,455.2	1.1	2.4
	도시지원시설	153,942.4	153,942.4	-	-	-	-	-	153,942.4	153,942.4	-	-	-	-	-	-	1.4	1.4
	SciencePark	59,739.0	59,739.0	-	-	-	-	-	59,739.0	59,739.0	-	-	-	-	-	-	0.5	0.5
	Business Incubator	94,203.4	94,203.4	-	-	-	-	-	94,203.4	94,203.4	-	-	-	-	-	-	0.9	0.9
	도시형공업	-	-	-	-	-	-	-	-	-	-	-	-	-	-	-	0.0	0.0
공공 시설 용지	소계	6,503,243.4	1,389,496.9	999,653.8	3,142,855.6	145,998.0	453,524.1	371,715.0	6,370,960.4	1,389,496.9	999,653.8	3,142,855.6	145,998.0	453,524.1	239,432.0	감 132,283.0	59.8	58.6
	교육시설	361,005.2	184,883.7	100,554.5	60,862.1	4,808.3	9,896.6	-	361,005.2	184,883.7	100,554.5	60,862.1	4,808.3	9,896.6	-	-	3.3	3.3
	공공편의시설	48,231.0	23,734.5	11,755.8	7,985.7	-	-	4,755.0	47,031.0	23,734.5	11,755.8	7,985.7	-	-	3,555.0	감 1,200.0	0.4	0.4
	종합의료시설	25,575.6	25,575.6	-	-	-	-	-	25,575.6	25,575.6	-	-	-	-	-	-	0.2	0.2
	사회체육시설	27,179.5	14,851.2	12,328.3	-	-	-	-	27,179.5	14,851.2	12,328.3	-	-	-	-	-	0.3	0.3
	문화시설	46,164.6	-	-	-	-	-	46,164.6	46,164.6	-	-	-	-	46,164.6	-	-	0.4	0.4
	복지시설	44,549.8	37,318.7	4,111.0	3,120.1	-	-	-	44,549.8	37,318.7	4,111.0	3,120.1	-	-	-	-	0.4	0.4
	청소년단체	14,992.9	-	-	-	-	-	14,992.9	14,992.9	-	-	-	-	14,992.9	-	-	0.1	0.1
	종교시설	30,451.2	5,948.3	6,768.6	11,888.0	3,043.9	1,981.4	821.0	30,457.0	5,948.3	6,768.6	11,888.0	3,043.9	1,981.4	826.8	증 5.8	0.3	0.3
	공급차리시설	58,864.4	5,250.2	7,596.4	46,017.8	-	-	-	58,864.4	5,250.2	7,596.4	46,017.8	-	-	-	-	0.5	0.5
	위험물저장 및차리시설	10,654.1	5,117.9	-	1,922.2	-	2,286.0	1,328.0	10,654.5	5,117.9	-	1,922.2	-	2,286.0	1,328.4	증 0.4	0.1	0.1
	주차장	74,525.5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4.0	74,523.3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1.8	감 2.2	0.7	0.7
	유보지	130,914.0	-	-	-	-	-	-	130,914.0	-	-	-	-	-	-	감 130,914.0	1.2	0.0
	농업관련용지	821.1	-	821.1	-	-	-	-	821.1	-	821.1	-	-	-	-	-	0.0	0.0
	공원	2,372,214.7	59,466.6	106,179.4	1,986,454.2	17,275.0	114,630.5	88,209.0	2,372,178.5	59,466.6	106,179.4	1,986,454.2	17,275.0	114,630.5	88,172.8	감 36.2	21.8	21.8
	경관녹지	90,423.7	43,956.6	-	46,370.0	97.1	-	-	90,423.7	43,956.6	-	46,370.0	97.1	-	-	-	0.8	0.8
	완충녹지	116,060.7	46,496.9	23,382.0	23,689.6	-	10,566.2	11,926.0	116,019.2	46,496.9	23,382.0	23,689.6	-	10,566.2	11,884.5	감 41.5	1.1	1.1
	공공공지	570,702.2	127,770.3	168,360.4	119,395.6	36,257.2	84,164.7	34,754.0	569,931.3	127,770.3	168,360.4	119,395.6	36,257.2	84,164.7	33,983.1	감 770.9	5.3	5.2
	유수지	197,184.1	28,895.2	-	63,327.1	43,082.7	61,879.1	-	197,184.1	28,895.2	-	63,327.1	43,082.7	61,879.1	-	-	1.8	1.8
	광장	151,068.5	114,713.6	13,063.7	21,093.4	1,151.9	1,045.9	-	151,068.5	114,713.6	13,063.7	21,093.4	1,151.9	1,045.9	-	-	1.4	1.4
하천	75,363.0	-	-	56,936.8	-	3,748.2	14,678.0	75,875.1	-	-	56,936.8	-	3,748.2	15,190.1	증 512.1	0.7	0.7	
수로대체용지	7,722.0	-	-	7,722.0	-	-	-	7,722.0	-	-	7,722.0	-	-	-	-	0.1	0.1	
도로	2,048,235.6	643,59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826.0	2,048,399.1	643,59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989.5	증 163.5	18.8	18.9	
군시설용지	340.0	-	-	340.0	-	-	-	340.0	-	-	340.0	-	-	-	-	0.0	0.0	

라.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제세생략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위치(변경없음) : 게재생략

2) 면적(변경)

- 기정 : 10,865,251.0㎡

(1단계 : 3,582,737.7㎡, 2단계 : 1,958,959.7㎡, 3단계 : 3,854,743.3㎡, 4단계 : 313,742.1㎡, 5단계 : 641,115.2㎡, 6단계 : 513,953.0㎡)

- 변경 : 10,864,559.7㎡ (감 691.3㎡)

(1단계 : 3,582,737.7㎡, 2단계 : 1,958,959.7㎡, 3단계 : 3,854,743.3㎡, 4단계 : 313,742.1㎡, 5단계 : 641,115.2㎡ 6단계 : 513,261.7㎡)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단계) : 붙임1-1

아.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귀속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단계) : 붙임1-2

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 붙임2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

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 붙임3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 (031-999-5735)에 비치

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단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1	운양동		122	-	3	구	48.0	48.0	48.0	한국토지주택공사					
2	운양동		122	-	4	구	36.0	36.0	36.0	국(농림수산식품부)					
3	운양동		122	-	5	구	132.0	132.0	132.0	한국토지주택공사					
4	운양동		122	-	13	구	53.0	53.0	53.0	한국토지주택공사					
5	운양동		124	-	1	대	200.0	200.0	2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	운양동		124	-	11	대	154.0	154.0	154.0	한국토지주택공사					
7	운양동		124	-	28	잡	32.0	32.0	32.0	한국토지주택공사					
8	운양동		124	-	29	잡	1,106.0	1,106.0	1,106.0	한국토지주택공사					
9	운양동		125	-	3	도	95.0	95.0	95.0	한국토지주택공사					
10	운양동		125	-	4	도	49.0	49.0	49.0	국(농림수산식품부)					
11	운양동		125	-	5	도	123.0	123.0	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12	운양동		125	-	10	도	82.0	82.0	82.0	한국토지주택공사					
13	운양동		130	-	5	차	4,466.0	4,466.0	4,466.0	한국토지주택공사					
14	운양동		130	-	11	대	143.0	143.0	143.0	한국토지주택공사					
15	운양동		130	-	12	답	1,045.0	1,045.0	1,045.0	한국토지주택공사					
16	운양동		132	-	2	도	18.0	18.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17	운양동		134	-	4	계	151.0	151.0	151.0	한국토지주택공사					
18	운양동		134	-	5	구	124.0	124.0	124.0	한국토지주택공사					
19	운양동		140	-	1	답	8.0	8.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20	운양동		140	-	2	대	58.0	58.0	58.0	한국토지주택공사					
21	운양동		140	-	3	답	154.0	154.0	154.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6단계								
22	운양동		150	-	0	장	113.0	113.0	1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3	운양동		150	-	1	전	24.0	24.0	24.0	한국토지주택공사						
24	운양동		150	-	6	장	49.0	49.0	49.0	한국토지주택공사						
25	운양동		151	-	1	전	27.0	27.0	27.0	한국토지주택공사						
26	운양동		151	-	2	대	312.0	312.0	312.0	한국토지주택공사						
27	운양동		151	-	3	도	3.0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28	운양동		151	-	4	대	623.0	623.0	623.0	한국토지주택공사						
29	운양동		151	-	5	대	469.0	469.0	469.0	한국토지주택공사						
30	운양동		151	-	6	대	521.0	521.0	521.0	한국토지주택공사						
31	운양동		151	-	7	전	318.0	318.0	318.0	한국토지주택공사						
32	운양동		151	-	9	전	660.0	660.0	660.0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운양동		152	-	5	대	515.0	515.0	515.0	한국토지주택공사						
34	운양동		152	-	6	대	350.0	350.0	350.0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운양동		152	-	8	대	1,855.0	1,855.0	1,855.0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운양동		154	-		대	397.0	397.0	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37	운양동		155	-	1	대	249.0	249.0	249.0	한국토지주택공사						
38	운양동		155	-	2	대	613.0	613.0	613.0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운양동		155	-	3	대	650.0	650.0	650.0	한국토지주택공사						
40	운양동		155	-	5	대	51.0	51.0	51.0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운양동		156	-	1	답	61.0	61.0	61.0	한국토지주택공사						
42	운양동		157	-	2	대	84.0	84.0	84.0	한국토지주택공사						
43	운양동		163	-	1	도	56.0	56.0	56.0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운양동		163	-	2	답	524.0	524.0	524.0	한국토지주택공사						
45	운양동		164	-	0	대	232.0	232.0	232.0	한국토지주택공사						
46	운양동		165	-	1	대	297.0	297.0	297.0	한국토지주택공사						
47	운양동		165	-	2	도	9.0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48	운양동		166	-	1	잡	496.0	496.0	496.0	한국토지주택공사						
49	운양동		166	-	2	도	73.0	73.0	73.0	한국토지주택공사						
50	운양동		166	-	4	대	496.0	496.0	496.0	한국토지주택공사						
51	운양동		167	-	1	도	107.0	107.0	107.0	한국토지주택공사						
52	운양동		167	-	2	대	395.0	395.0	395.0	한국토지주택공사						
53	운양동		167	-	3	중	777.0	777.0	777.0	한국토지주택공사						
54	운양동		167	-	5	전	930.0	930.0	930.0	한국토지주택공사						
55	운양동		168	-	1	대	276.0	276.0	276.0	한국토지주택공사						
56	운양동		168	-	2	대	678.0	678.0	678.0	한국토지주택공사						
57	운양동		168	-	4	대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58	운양동		168	-	5	대	38.0	38.0	38.0	한국토지주택공사						
59	운양동		168	-	6	대	8.0	8.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60	운양동		168	-	7	전	43.0	43.0	43.0	한국토지주택공사						
61	운양동		169	-	0	대	680.0	680.0	680.0	한국토지주택공사						
62	운양동		169	-	1	전	1,885.0	1,885.0	1,885.0	한국토지주택공사						
63	운양동		169	-	2	대	670.0	670.0	670.0	한국토지주택공사						
64	운양동		169	-	3	대	400.0	400.0	4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5	운양동		170	-	0	답	916.0	916.0	916.0	한국토지주택공사						
66	운양동		171	-	2	전	148.0	148.0	148.0	한국토지주택공사						
67	운양동		171	-	3	대	589.0	589.0	589.0	한국토지주택공사						
68	운양동		171	-	5	대	189.0	189.0	189.0	한국토지주택공사						
69	운양동		171	-	6	대	359.0	359.0	359.0	한국토지주택공사						
70	운양동		172	-	1	중	20.0	20.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71	운양동		172	-	6	잡	26.0	26.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72	운양동		172	-	17	도	62.0	62.0	62.0	한국토지주택공사						
73	운양동		174	-	1	답	884.0	884.0	884.0	한국토지주택공사						
74	운양동		174	-	3	구	18.0	18.0	18.0	한국토지주택공사						
75	운양동		175	-	1	대	659.0	659.0	659.0	한국토지주택공사						
76	운양동		175	-	2	구	367.0	367.0	367.0	한국토지주택공사						
77	운양동		175	-	3	답	782.0	782.0	782.0	한국토지주택공사						
78	운양동		175	-	4	대	997.0	997.0	997.0	한국토지주택공사						
79	운양동		175	-	5	대	240.0	240.0	240.0	한국토지주택공사						
80	운양동		176	-	1	답	67.0	67.0	67.0	한국토지주택공사						
81	운양동		176	-	2	구	2.0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82	운양동		284	-	1	전	422.0	422.0	422.0	한국토지주택공사						
83	운양동		285	-	0	답	234.0	234.0	234.0	한국토지주택공사						
84	운양동		286	-	0	답	111.0	111.0	111.0	한국토지주택공사						
85	운양동		287	-	1	답	196.0	196.0	196.0	한국토지주택공사						
86	운양동		288	-	1	전	208.0	208.0	208.0	한국토지주택공사						
87	운양동		288	-	2	전	374.0	374.0	374.0	한국토지주택공사						
88	운양동		289	-	0	전	575.0	575.0	575.0	한국토지주택공사						
89	운양동		289	-	1	대	515.0	515.0	515.0	한국토지주택공사						
90	운양동		289	-	2	잡	134.0	134.0	134.0	한국토지주택공사						
91	운양동		289	-	3	전	178.0	178.0	178.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6단계									
92	운양동		289	-	4	전	105.0	105.0	105.0	한국토지주택공사							
93	운양동		290	-	0	대	886.0	886.0	886.0	한국토지주택공사							
94	운양동		290	-	1	대	635.0	635.0	635.0	한국토지주택공사							
95	운양동		290	-	2	대	552.0	552.0	552.0	한국토지주택공사							
96	운양동		290	-	3	답	106.0	106.0	106.0	한국토지주택공사							
97	운양동		290	-	4	도	180.0	180.0	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98	운양동		291	-	0	답	159.0	159.0	159.0	한국토지주택공사							
99	운양동		291	-	1	답	124.0	124.0	124.0	한국토지주택공사							
100	운양동		291	-	2	대	192.0	192.0	192.0	한국토지주택공사							
101	운양동		291	-	3	대	21.0	21.0	21.0	한국토지주택공사							
102	운양동		292	-	0	대	408.0	408.0	408.0	한국토지주택공사							
103	운양동		292	-	1	대	369.0	369.0	369.0	한국토지주택공사							
104	운양동		292	-	2	대	339.0	339.0	339.0	한국토지주택공사							
105	운양동		292	-	3	대	411.0	411.0	411.0	한국토지주택공사							
106	운양동		292	-	4	대	493.0	493.0	493.0	한국토지주택공사							
107	운양동		292	-	5	도	296.0	296.0	296.0	한국토지주택공사							
108	운양동		292	-	6	대	387.0	387.0	387.0	한국토지주택공사							
109	운양동		292	-	7	대	381.0	381.0	38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0	운양동		292	-	8	대	387.0	387.0	387.0	한국토지주택공사							
111	운양동		292	-	9	대	363.0	363.0	363.0	한국토지주택공사							
112	운양동		292	-	10	답	89.0	89.0	8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3	운양동		292	-	11	도	357.0	357.0	357.0	한국토지주택공사							
114	운양동		292	-	12	대	345.0	345.0	345.0	한국토지주택공사							
115	운양동		292	-	13	대	381.0	381.0	381.0	한국토지주택공사							
116	운양동		292	-	14	대	423.0	423.0	423.0	한국토지주택공사							
117	운양동		292	-	15	대	429.0	429.0	429.0	한국토지주택공사							
118	운양동		292	-	16	대	466.0	466.0	466.0	한국토지주택공사							
119	운양동		292	-	17	도	417.0	417.0	417.0	한국토지주택공사							
120	운양동		292	-	18	잡	33.0	33.0	33.0	한국토지주택공사							
121	운양동		293	-	0	답	165.0	165.0	165.0	한국토지주택공사							
122	운양동		293	-	1	답	81.0	81.0	81.0	한국토지주택공사							
123	운양동		293	-	2	대	488.0	488.0	488.0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운양동		294	-	3	전	350.0	350.0	350.0	한국토지주택공사							
125	운양동		294	-	4	잡	433.0	433.0	433.0	한국토지주택공사							
126	운양동		294	-	5	전	212.0	212.0	212.0	한국토지주택공사							
127	운양동		294	-	8	대	209.0	209.0	209.0	한국토지주택공사							
128	운양동		294	-	9	도	41.0	41.0	41.0	한국토지주택공사							
129	운양동		294	-	10	대	59.0	5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130	운양동		294	-	11	전	384.0	384.0	3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31	운양동		294	-	12	도	110.0	110.0	11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2	운양동		294	-	13	전	140.0	140.0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3	운양동		294	-	15	도	11.0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134	운양동		295	-	0	대	513.0	513.0	513.0	한국토지주택공사							
135	운양동		295	-	1	전	330.0	330.0	33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6	운양동		296	-	0	대	220.0	220.0	220.0	한국토지주택공사							
137	운양동		296	-	1	전	345.0	345.0	345.0	한국토지주택공사							
138	운양동		297	-	1	대	562.0	562.0	562.0	한국토지주택공사							
139	운양동		297	-	2	대	463.0	463.0	463.0	한국토지주택공사							
140	운양동		297	-	3	대	238.0	238.0	238.0	한국토지주택공사							
141	운양동		297	-	4	대	456.0	456.0	456.0	한국토지주택공사							
142	운양동		297	-	5	대	370.0	370.0	370.0	한국토지주택공사							
143	운양동		297	-	6	대	441.0	441.0	441.0	한국토지주택공사							
144	운양동		297	-	7	대	284.0	284.0	2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45	운양동		297	-	8	도	237.0	237.0	237.0	한국토지주택공사							
146	운양동		297	-	9	대	168.0	168.0	168.0	한국토지주택공사							
147	운양동		297	-	10	대	51.0	51.0	51.0	한국토지주택공사							
148	운양동		297	-	11	대	284.0	284.0	2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49	운양동		298	-	1	대	251.0	251.0	251.0	한국토지주택공사							
150	운양동		298	-	3	대	185.0	185.0	185.0	한국토지주택공사							
151	운양동		298	-	4	대	506.0	506.0	506.0	한국토지주택공사							
152	운양동		299	-	0	대	555.0	555.0	555.0	한국토지주택공사							
153	운양동		300	-	1	대	398.0	398.0	398.0	한국토지주택공사							
154	운양동		300	-	2	대	417.0	417.0	417.0	한국토지주택공사							
155	운양동		300	-	3	도	344.0	344.0	344.0	한국토지주택공사							
156	운양동		300	-	4	대	462.0	462.0	462.0	한국토지주택공사							
157	운양동		300	-	5	대	548.0	548.0	548.0	한국토지주택공사							
158	운양동		300	-	6	대	468.0	468.0	468.0	한국토지주택공사							
159	운양동		300	-	7	도	81.0	81.0	81.0	한국토지주택공사							
160	운양동		300	-	8	대	129.0	129.0	129.0	한국토지주택공사							
161	운양동		300	-	9	대	399.0	399.0	399.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6단계									
162	운양동		300	-	10	임	1,638.0	1,638.0	1,638.0	한국토지주택공사							
163	운양동		300	-	11	도	122.0	122.0	122.0	한국토지주택공사							
164	운양동		300	-	12	대	5.0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165	운양동		300	-	13	대	97.0	97.0	97.0	한국토지주택공사							
166	운양동		300	-	14	도	78.0	78.0	78.0	한국토지주택공사							
167	운양동		300	-	15	대	58.0	58.0	58.0	한국토지주택공사							
168	운양동		300	-	16	전	116.0	116.0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169	운양동		300	-	17	대	45.0	45.0	45.0	한국토지주택공사							
170	운양동		300	-	18	대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171	운양동		300	-	19	임	1,017.0	1,017.0	1,017.0	한국토지주택공사							
172	운양동		300	-	20	임	998.0	998.0	998.0	한국토지주택공사							
173	운양동		300	-	21	대	1,147.0	1,147.0	1,147.0	한국토지주택공사							
174	운양동		300	-	22	임	384.0	384.0	384.0	한국토지주택공사							
175	운양동		300	-	23	임	135.0	135.0	135.0	한국토지주택공사							
176	운양동		301	-	1	도	30.0	30.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177	운양동		301	-	2	대	298.0	298.0	298.0	한국토지주택공사							
178	운양동		301	-	3	도	364.0	364.0	364.0	한국토지주택공사							
179	운양동		301	-	4	대	827.0	827.0	827.0	한국토지주택공사							
180	운양동		301	-	5	전	165.0	165.0	165.0	한국토지주택공사							
181	운양동		302	-	1	대	529.0	529.0	529.0	한국토지주택공사							
182	운양동		302	-	2	도	26.0	26.0	26.0	한국토지주택공사							
183	운양동		302	-	3	답	1,980.0	1,980.0	1,980.0	한국토지주택공사							
184	운양동		303	-	1	전	651.0	651.0	651.0	한국토지주택공사							
185	운양동		303	-	2	대	545.0	545.0	545.0	한국토지주택공사							
186	운양동		304	-	0	대	9.0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187	운양동		317	-	0	전	12.0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188	운양동		318	-	0	대	124.0	124.0	124.0	한국토지주택공사							
189	운양동		319	-	0	대	407.0	407.0	407.0	한국토지주택공사							
190	운양동		320	-	0	대	59.0	59.0	59.0	한국토지주택공사							
191	운양동		328	-	2	대	31.0	31.0	31.0	한국토지주택공사							
192	운양동		328	-	4	장	63.0	63.0	63.0	한국토지주택공사							
193	운양동		328	-	5	대	90.0	90.0	90.0	한국토지주택공사							
194	운양동		329	-	2	대	161.0	161.0	161.0	한국토지주택공사							
195	운양동		330	-	0	대	489.0	489.0	489.0	한국토지주택공사							
196	운양동		331	-	1	도	20.0	20.0	20.0	한국토지주택공사							
197	운양동		331	-	2	도	66.0	66.0	66.0	한국토지주택공사							
198	운양동		331	-	3	전	248.0	248.0	248.0	한국토지주택공사							
199	운양동		331	-	4	대	850.0	850.0	850.0	한국토지주택공사							
200	운양동		332	-	0	대	337.0	337.0	337.0	한국토지주택공사							
201	운양동		333	-	0	대	144.0	144.0	144.0	한국토지주택공사							
202	운양동		334	-	1	대	267.0	267.0	267.0	한국토지주택공사							
203	운양동		334	-	2	도	13.0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04	운양동		401	-	4	답	2.0	2.0	2.0	한국토지주택공사							
205	운양동		401	-	6	답	121.0	121.0	121.0	한국토지주택공사							
206	운양동		401	-	13	답	79.0	79.0	79.0	한국토지주택공사							
207	운양동		401	-	19	답	302.0	302.0	302.0	한국토지주택공사							
208	운양동		401	-	22	답	257.0	257.0	257.0	한국토지주택공사							
209	운양동		401	-	47	답	16.0	16.0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210	운양동		405	-	0	답	635.0	635.0	635.0	한국토지주택공사							
211	운양동		412	-	2	도	13.0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12	운양동		412	-	3	전	77.0	77.0	77.0	한국토지주택공사							
213	운양동		412	-	4	대	323.0	323.0	323.0	한국토지주택공사							
214	운양동		412	-	5	도	24.0	24.0	24.0	한국토지주택공사							
215	운양동		413	-	1	답	718.0	718.0	718.0	한국토지주택공사							
216	운양동		413	-	2	도	12.0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217	운양동		413	-	7	도	47.0	47.0	47.0	한국토지주택공사							
218	운양동		414	-	1	도	31.0	31.0	31.0	한국토지주택공사							
219	운양동		415	-	1	대	579.0	579.0	579.0	한국토지주택공사							
220	운양동		415	-	3	도	10.0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221	운양동		416	-	1	전	636.0	636.0	636.0	한국토지주택공사							
222	운양동		416	-	2	도	10.0	10.0	10.0	한국토지주택공사							
223	운양동		417	-	1	도	16.0	16.0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224	운양동		417	-	2	답	920.0	920.0	920.0	한국토지주택공사							
225	운양동		417	-	5	대	4.0	4.0	4.0	한국토지주택공사							
226	운양동		417	-	6	전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27	운양동		417	-	8	답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228	운양동		417	-	9	답	44.0	44.0	44.0	한국토지주택공사							
229	운양동		419	-	2	전	854.0	854.0	854.0	한국토지주택공사							
230	운양동		419	-	3	장	742.0	742.0	742.0	한국토지주택공사							
231	운양동		419	-	5	목	762.0	762.0	762.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232	운양동		421	-	0	장	13.0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33	운양동		421	-	1	전	77.0	77.0	77.0	한국토지주택공사					
234	운양동		426	-	4	전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235	운양동		428	-	2	도	89.0	89.0	89.0	한국토지주택공사					
236	운양동		428	-	3	대	377.0	377.0	377.0	한국토지주택공사					
237	운양동		428	-	5	대	192.0	192.0	192.0	한국토지주택공사					
238	운양동		428	-	6	대	331.0	331.0	331.0	한국토지주택공사					
239	운양동		430	-	0	대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240	운양동		433	-	1	도	2.0	2.0	2.0	국(기획재정부)					
241	운양동		433	-	2	대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242	운양동		434	-	0	전	627.0	627.0	627.0	한국토지주택공사					
243	운양동		435	-	1	전	613.0	613.0	613.0	한국토지주택공사					
244	운양동		435	-	2	도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245	운양동		436	-	0	답	70.0	70.0	70.0	한국토지주택공사					
246	운양동		437	-	1	답	4,281.0	4,281.0	4,281.0	한국토지주택공사					
247	운양동		438	-	1	답	111.0	111.0	111.0	한국토지주택공사					
248	운양동		452	-	0	답	430.0	430.0	430.0	한국토지주택공사					
249	운양동		453	-	0	답	2,193.0	2,193.0	2,193.0	한국토지주택공사					
250	운양동		454	-	1	답	1,530.0	1,530.0	1,530.0	한국토지주택공사					
251	운양동		454	-	2	답	1,408.0	1,408.0	1,408.0	한국토지주택공사					
252	운양동		455	-	0	답	468.0	468.0	468.0	한국토지주택공사					
253	운양동		456	-	0	답	2,362.0	2,362.0	2,362.0	한국토지주택공사					
254	운양동		457	-	2	답	2,075.0	2,075.0	2,075.0	한국토지주택공사					
255	운양동		1219	-	16	도	826.0	826.0	826.0	국(국토교통부)					
256	운양동		1219	-	29	도	136.0	136.0	136.0	국(국토교통부)					
257	운양동		1219	-	31	도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258	운양동		1219	-	32	도	35.0	35.0	35.0	한국토지주택공사					
259	운양동		1219	-	36	도	86.0	86.0	86.0	한국토지주택공사					
260	운양동		1219	-	71	도	11.0	11.0	11.0	국(국토교통부)					
261	운양동		1219	-	75	도	60.0	60.0	60.0	국(국토교통부)					
262	운양동		1219	-	77	도	351.0	351.0	351.0	국(국토교통부)					
263	운양동		1219	-	80	도	26.0	26.0	26.0	국(국토교통부)					
264	운양동		1219	-	82	도	2.0	2.0	2.0	국(국토교통부)					
265	운양동		1219	-	83	도	109.0	109.0	109.0	국(국토교통부)					
266	운양동		1219	-	84	도	1.0	1.0	1.0	국(국토교통부)					
267	운양동		1219	-	85	도	388.0	388.0	388.0	국(국토교통부)					
268	운양동		1440	-	69	구	459.0	459.0	459.0	국(농림수산식품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69	운양동		1440	-	71	도	6.0	6.0	6.0	김포시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0	운양동		1440	-	72	답	709.0	709.0	709.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1	운양동		1440	-	73	답	1,251.0	1,251.0	1,251.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2	운양동		1440	-	74	답	654.0	654.0	654.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3	운양동		1440	-	85	답	51.0	51.0	51.0	국(국토교통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4	운양동		1440	-	86	답	12.0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5	운양동		1440	-	87	도	102.0	102.0	102.0	김포시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6	운양동		1440	-	88	답	267.0	267.0	267.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7	운양동		1440	-	89	답	322.0	322.0	322.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8	운양동		1440	-	90	답	310.0	310.0	310.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79	운양동		1440	-	91	답	12.0	12.0	12.0	국(국토교통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0	운양동		1440	-	107	답	1,080.0	1,080.0	1,080.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1	운양동		1440	-	108	답	50.0	50.0	50.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2	운양동		1440	-	109	답	5.0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3	운양동		1440	-	139	답	265.0	265.0	265.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4	운양동		1440	-	141	답	1,060.0	1,060.0	1,060.0	한국토지주택공사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285	운양동	산	2	-	0	입	1,200.0	1,200.0	1,200.0	한국토지주택공사					
286	운양동	산	3	-	0	입	4,781.0	4,781.0	4,781.0	한국토지주택공사					
287	운양동	산	4	-	0	입	5,792.0	5,792.0	5,792.0	한국토지주택공사					
288	운양동	산	5	-	0	입	2,524.0	2,524.0	2,524.0	한국토지주택공사					
289	운양동	산	6	-	2	입	851.0	851.0	851.0	한국토지주택공사					
290	운양동	산	6	-	3	입	1,209.0	1,209.0	1,209.0	한국토지주택공사					
291	운양동	산	6	-	4	입	1,839.0	1,839.0	1,839.0	한국토지주택공사					
292	운양동	산	7	-	1	입	137.0	137.0	137.0	한국토지주택공사					
293	운양동	산	9	-	5	입	865.0	865.0	865.0	한국토지주택공사					
294	운양동	산	13	-	9	입	520.0	520.0	520.0	한국토지주택공사					
295	운양동	산	14	-	0	입	61.0	61.0	61.0	한국토지주택공사					
296	장기동		97	-	11	대	24.0	24.0	24.0	한국토지주택공사					
297	장기동		99	-	15	구	798.0	798.0	798.0	한국토지주택공사					
298	장기동		104	-	11	답	67.0	67.0	67.0	한국토지주택공사					
299	장기동		104	-	12	답	869.0	869.0	869.0	한국토지주택공사					
300	장기동		104	-	13	답	602.0	602.0	602.0	한국토지주택공사					
301	장기동		104	-	14	답	185.0	185.0	185.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계	6단계								
302	장기동		104	-	25	답	34.0	34.0	34.0	한국토지주택공사						
303	장기동		106	-	5	구	321.0	321.0	321.0	국(농림수산식품부)						
304	장기동		106	-	15	답	273.0	273.0	273.0	한국토지주택공사						
305	장기동		106	-	16	답	1,394.0	1,394.0	1,394.0	한국토지주택공사						
306	장기동		106	-	17	도	315.0	315.0	315.0	국(농림수산식품부)						
307	마산동		148	-	5	전	136.0	136.0	136.0	한국토지주택공사						
308	마산동		149	-	1	대	277.0	277.0	277.0	한국토지주택공사						
309	마산동		149	-	6	대	385.0	385.0	385.0	한국토지주택공사						
310	마산동		150	-	0	대	8.0	8.0	8.0	한국토지주택공사						
311	마산동		150	-	1	전	728.0	728.0	728.0	한국토지주택공사						
312	마산동		151	-	1	전	998.0	998.0	998.0	한국토지주택공사						
313	마산동		151	-	2	대	383.0	383.0	383.0	한국토지주택공사						
314	마산동		152	-	0	전	88.0	88.0	88.0	한국토지주택공사						
315	마산동		153	-	0	전	83.0	83.0	83.0	한국토지주택공사						
316	마산동		154	-	0	전	1,461.0	1,461.0	1,461.0	한국토지주택공사						
317	마산동		155	-	1	전	720.0	720.0	720.0	한국토지주택공사						
318	마산동		155	-	5	장	1,043.0	1,043.0	1,043.0	한국토지주택공사						
319	마산동		156	-	0	전	1,362.0	1,362.0	1,362.0	한국토지주택공사						
320	마산동		157	-	0	전	1,681.0	1,681.0	1,681.0	한국토지주택공사						
321	마산동		158	-	0	전	397.0	397.0	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322	마산동		159	-	0	전	1,141.0	1,141.0	1,141.0	한국토지주택공사						
323	마산동		160	-	0	답	2,638.0	2,638.0	2,638.0	한국토지주택공사						
324	마산동		160	-	1	전	856.0	856.0	856.0	한국토지주택공사						
325	마산동		160	-	2	전	1,091.0	1,091.0	1,091.0	한국토지주택공사						
326	마산동		160	-	3	전	793.0	793.0	793.0	한국토지주택공사						
327	마산동		161	-	0	전	641.0	641.0	641.0	한국토지주택공사						
328	마산동		162	-	1	대	668.0	668.0	668.0	한국토지주택공사						
329	마산동		162	-	2	전	912.0	912.0	912.0	한국토지주택공사						
330	마산동		163	-	1	도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331	마산동		163	-	2	대	460.0	460.0	460.0	한국토지주택공사						
332	마산동		164	-	0	대	90.0	90.0	90.0	한국토지주택공사						
333	마산동		164	-	1	대	44.0	44.0	44.0	한국토지주택공사						
334	마산동		164	-	2	대	569.0	569.0	569.0	한국토지주택공사						
335	마산동		164	-	3	전	532.0	532.0	532.0	한국토지주택공사						
336	마산동		164	-	4	대	241.0	241.0	241.0	한국토지주택공사						
337	마산동		164	-	5	도	7.0	7.0	7.0	한국토지주택공사						
338	마산동		164	-	6	도	24.0	24.0	24.0	한국토지주택공사						
339	마산동		164	-	7	도	43.0	43.0	43.0	한국토지주택공사						
340	마산동		164	-	8	도	175.0	175.0	175.0	한국토지주택공사						
341	마산동		164	-	9	대	279.0	279.0	279.0	한국토지주택공사						
342	마산동		164	-	10	입	52.0	52.0	52.0	한국토지주택공사						
343	마산동		164	-	11	전	662.0	662.0	662.0	한국토지주택공사						
344	마산동		164	-	13	도	284.0	284.0	284.0	국(국토교통부)						
345	마산동		186	-	4	전	140.0	140.0	140.0	한국토지주택공사						
346	마산동		186	-	5	도	63.0	63.0	63.0	한국토지주택공사						
347	마산동		439	-	4	도	58.0	58.0	58.0	국(국토교통부)						
348	마산동		439	-	6	도	66.0	66.0	66.0	국(국토교통부)						
349	마산동		439	-	8	도	746.0	746.0	746.0	국(국토교통부)						
350	마산동		442	-	0	도	416.0	416.0	416.0	국(국토교통부)						
351	마산동	산	12	-	0	입	745.0	745.0	745.0	한국토지주택공사						
352	마산동	산	12	-	2	입	100.0	100.0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353	마산동	산	13	-	0	입	486.0	486.0	486.0	한국토지주택공사						
354	마산동	산	15	-	0	입	1,164.0	1,164.0	1,164.0	한국토지주택공사						
355	마산동	산	18	-	0	입	3,957.0	3,957.0	3,957.0	한국토지주택공사						
356	마산동	산	20	-	2	입	397.0	397.0	397.0	한국토지주택공사						
357	마산동	산	24	-	0	입	73.0	73.0	73.0	한국토지주택공사						
358	마산동	산	26	-	1	입	436.0	436.0	436.0	한국토지주택공사						
359	마산동	산	26	-	2	도	28.0	28.0	28.0	한국토지주택공사						
360	마산동	산	27	-	0	입	550.0	550.0	550.0	한국토지주택공사						
361	구래동		5016	-	0	대	90.0	90.0	90.0	한국토지주택공사						
362	구래동		5017	-	0	답	626.0	626.0	626.0	한국토지주택공사						
363	구래동		5018	-	0	도	231.0	231.0	231.0	김포시						
364	구래동		5019	-	0	도	17.0	17.0	17.0	김포시						
365	구래동		5020	-	0	도	250.0	250.0	250.0	김포시						
366	구래동		5021	-	0	도	157.0	157.0	157.0	김포시						
367	구래동		5022	-	0	도	13.0	13.0	13.0	김포시						
368	구래동		5023	-	0	도	167.0	167.0	167.0	김포시						
369	구래동		5024	-	0	도	165.0	165.0	165.0	김포시						
370	구래동		5025	-	0	도	83.0	83.0	83.0	한국토지주택공사						
371	구래동		5026	-	0	창	539.0	539.0	539.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372	구래동		5027	-	0	도	175.0	175.0	175.0	김포시						
373	구래동		5028	-	0	도	22.0	22.0	22.0	김포시						
374	구래동		5029	-	0	도	144.0	144.0	144.0	김포시						
375	구래동		5030	-	0	대	55.0	53.0	53.0	한국토지주택공사						
376	구래동		5031	-	0	대	66.0	66.0	66.0	한국토지주택공사						
377	구래동		5032	-	0	대	55.0	55.0	55.0	한국토지주택공사						
378	구래동		5033	-	0	전	3,145.0	3,145.0	3,145.0	한국토지주택공사						
379	구래동		5034	-	0	도	83.0	83.0	83.0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지분427/83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380	구래동		5035	-	0	도	99.0	99.0	99.0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지분603/99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381	구래동		5036	-	0	대	242.0	242.0	242.0	한국토지주택공사						
382	구래동		5037	-	0	대	109.0	109.0	109.0	한국토지주택공사						
383	구래동		5038	-	0	도	123.0	123.0	123.0	김포시						
384	구래동		5039	-	0	도	29.0	29.0	29.0	김포시						
385	구래동		5040	-	0	도	15.0	15.0	15.0	김포시						
386	구래동		5041	-	0	도	202.0	202.0	202.0	김포시						
387	구래동		5042	-	0	전	2,092.0	2,092.0	2,092.0	한국토지주택공사						
388	구래동		5043	-	0	도	4.0	4.0	4.0	김포시						
389	구래동		5044	-	0	도	14.0	14.0	14.0	김포시						
390	구래동		5045	-	0	도	19.0	19.0	19.0	김포시						
391	구래동		5046	-	0	도	19.0	19.0	19.0	김포시						
392	구래동		5047	-	0	전	781.0	781.0	781.0	한국토지주택공사						
393	구래동		5048	-	0	전	6.0	6.0	6.0	한국토지주택공사						
394	구래동		5049	-	0	전	667.0	667.0	667.0	한국토지주택공사						
395	구래동		5050	-	0	전	192.0	192.0	192.0	한국토지주택공사						
396	구래동		5051	-	0	전	426.0	426.0	426.0	한국토지주택공사						
397	구래동		5052	-	0	임	175.0	175.0	175.0	한국토지주택공사						
398	구래동		5053	-	0	전	1,468.0	1,468.0	1,468.0	한국토지주택공사						
399	구래동		5054	-	0	전	1,725.0	1,725.0	1,725.0	한국토지주택공사						
400	구래동		5055	-	0	전	800.0	800.0	800.0	한국토지주택공사						
401	구래동		5056	-	0	전	202.0	202.0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402	구래동		5057	-	0	대	516.0	516.0	516.0	한국토지주택공사						
403	구래동		5058	-	0	전	1,044.0	1,044.0	1,044.0	한국토지주택공사						
404	구래동		5059	-	0	대	40.0	40.0	40.0	한국토지주택공사						
405	구래동		5060	-	0	대	288.0	288.0	288.0	한국토지주택공사						
406	구래동		5062	-	0	대	5.0	5.0	5.0	한국토지주택공사						
407	구래동		5063	-	0	대	174.0	174.0	174.0	한국토지주택공사						
408	구래동		5064	-	0	대	29.0	29.0	29.0	한국토지주택공사						
409	구래동		5067	-	0	전	100.0	100.0	100.0	한국토지주택공사						
410	구래동		5068	-	0	대	260.0	260.0	260.0	한국토지주택공사						
411	구래동		5069	-	0	전	627.0	627.0	627.0	한국토지주택공사						
412	구래동		5070	-	0	대	475.0	475.0	475.0	한국토지주택공사						
413	구래동		5071	-	0	임	1,006.0	1,006.0	1,006.0	한국토지주택공사						
414	구래동		5076	-	0	도	3.0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415	구래동		5111	-	0	도	99.0	99.0	99.0	김포시						
416	구래동		5113	-	0	창	89.0	89.0	89.0	한국토지주택공사						
417	구래동		5115	-	0	도	539.0	539.0	539.0	김포시						
418	구래동		5117	-	0	전	1,299.0	1,299.0	1,299.0	한국토지주택공사						
419	구래동		5119	-	0	임	127.0	127.0	127.0	한국토지주택공사						
420	구래동		5120	-	0	대	416.0	416.0	416.0	한국토지주택공사						
421	구래동		5121	-	0	임	112.0	112.0	112.0	한국토지주택공사						
422	구래동		5122	-	0	도	79.0	79.0	79.0	김포시						
423	구래동		5123	-	0	도	318.0	318.0	318.0	김포시						
424	구래동		5124	-	0	장	190.0	190.0	190.0	한국토지주택공사						
425	구래동		5125	-	0	전	91.0	91.0	91.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426	구래동		5126	-	0	도	132.0	132.0	132.0	김포시						
427	구래동		5127	-	0	도	43.0	43.0	43.0	김포시						
428	구래동		5128	-	0	전	191.0	191.0	191.0	김포시						
429	구래동		5129	-	0	도	25.0	25.0	25.0	김포시						
430	구래동		5130	-	0	잡	763.0	763.0	763.0	한국토지주택공사						
431	구래동		5134	-	0	잡	1,107.0	1,107.0	1,107.0	한국토지주택공사						
432	구래동		5136	-	0	잡	547.0	547.0	547.0	한국토지주택공사						
433	구래동		5138	-	1	구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434	구래동		5139	-	0	전	456.0	456.0	456.0	한국토지주택공사						
435	구래동		5140	-	1	도	241.0	241.0	241.0	김포시						
436	구래동		5141	-	0	도	112.0	112.0	112.0	김포시						
437	구래동		5142	-	1	도	38.0	38.0	38.0	김포시						
438	구래동		5143	-	0	전	104.0	104.0	104.0	김포시						
439	구래동		5144	-	0	잡	87.0	87.0	87.0	한국토지주택공사						
440	구래동		5145	-	1	도	4.0	4.0	4.0	김포시						
441	구래동		5148	-	0	도	194.0	194.0	194.0	국(농림수산식품부)						
442	구래동		5151	-	2	구	181.0	181.0	181.0	국(농림수산식품부)						
443	구래동		5169	-	1	전	255.0	255.0	255.0	한국토지주택공사						
444	구래동		5170	-	1	답	644.0	644.0	644.0	한국토지주택공사						
445	구래동		5171	-	1	답	326.0	326.0	326.0	한국토지주택공사						
446	구래동		5172	-	2	답	1,135.0	1,135.0	1,135.0	한국토지주택공사						
447	구래동		5173	-	2	답	333.0	333.0	333.0	한국토지주택공사						
448	구래동		5225	-	0	대	446.0	446.0	446.0	한국토지주택공사						
449	구래동		5226	-	0	전	1,848.0	1,848.0	1,848.0	한국토지주택공사						
450	구래동		5227	-	0	대	12.0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451	구래동		6273	-	0	전	47.0	47.0	47.0	한국토지주택공사						
452	구래동		6274	-	0	전	1,536.0	1,536.0	1,536.0	한국토지주택공사						
453	구래동		6275	-	0	전	1,913.0	1,913.0	1,913.0	한국토지주택공사						
454	구래동		6276	-	0	차	979.0	979.0	979.0	한국토지주택공사						
455	구래동		6277	-	0	구	286.0	286.0	286.0	한국토지주택공사						
456	구래동		6279	-	0	장	2,560.0	2,560.0	2,560.0	한국토지주택공사						
457	구래동		6280	-	0	전	133.0	133.0	133.0	한국토지주택공사						
458	구래동		6281	-	0	답	1,420.0	1,420.0	1,420.0	한국토지주택공사						
459	구래동		6284	-	0	장	206.0	206.0	206.0	한국토지주택공사						
460	구래동		6290	-	0	전	1,135.0	1,135.0	1,135.0	한국토지주택공사						
461	구래동		6291	-	0	장	1,361.0	1,361.0	1,361.0	한국토지주택공사						
462	구래동		6299	-	0	장	3.0	3.0	3.0	한국토지주택공사						
463	구래동		6300	-	0	답	5,959.0	5,959.0	5,959.0	한국토지주택공사						
464	구래동		6301	-	0	답	2,644.0	2,644.0	2,644.0	한국토지주택공사						
465	구래동		6302	-	0	구	949.0	949.0	949.0	한국토지주택공사						
466	구래동		6303	-	0	답	132.0	108.0	108.0	한국토지주택공사						
467	구래동		6307	-	0	장	449.0	449.0	449.0	한국토지주택공사						
468	구래동		6311	-	0	장	582.0	582.0	582.0	한국토지주택공사						
469	구래동		6313	-	0	전	747.0	747.0	747.0	한국토지주택공사						
470	구래동		6314	-	0	전	747.0	747.0	747.0	한국토지주택공사						
471	구래동		6315	-	0	전	1,514.0	1,514.0	1,514.0	한국토지주택공사						
472	구래동		6316	-	0	대	662.0	662.0	662.0	한국토지주택공사						
473	구래동		6317	-	0	대	564.0	564.0	564.0	한국토지주택공사						
474	구래동		6318	-	0	대	660.0	660.0	660.0	한국토지주택공사						
475	구래동		6319	-	0	입	805.0	805.0	805.0	한국토지주택공사						
476	구래동		6320	-	0	전	447.0	447.0	447.0	한국토지주택공사						
477	구래동		6321	-	0	대	860.0	860.0	860.0	한국토지주택공사						
478	구래동		6322	-	0	전	508.0	508.0	508.0	한국토지주택공사						
479	구래동		6323	-	0	전	1,926.0	1,926.0	1,926.0	한국토지주택공사						
480	구래동		6324	-	0	대	116.0	116.0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481	구래동		6325	-	0	대	806.0	806.0	806.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482	구래동		6326	-	0	구	16.0	16.0	16.0	한국토지주택공사						
483	구래동		6330	-	0	도	513.0	87.0	87.0	국(국토교통부)						
484	구래동		6330	-	3	도		411.0	411.0	국(국토교통부)						
485	구래동		6336	-	0	도	2,067.0	2,067.0	2,067.0	국(국토교통부)						
486	구래동		6337	-	0	도	349.0	349.0	349.0	국(국토교통부)						
487	구래동		6338	-	0	도	145.0	145.0	145.0	국(국토교통부)						
488	구래동		6350	-	0	도	664.0	664.0	664.0	국(국토교통부)						
489	구래동		6353	-	1	도	135.0	135.0	135.0	국(국토교통부)						
490	구래동		6353	-	2	도	223.0	223.0	223.0	국(국토교통부)						
491	구래동		6361	-	1	구	896.0	896.0	896.0	국(농림수산식품부)						
492	구래동		6362	-	1	도	745.0	745.0	745.0	국(농림수산식품부)						
493	구래동		6364	-	1	답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494	구래동		6366	-	1	답	66.0	66.0	66.0	한국토지주택공사						
495	구래동		6381	-	1	구	55.0	55.0	55.0	국(농림수산식품부)						
496	구래동		6464	-	1	도	224.0	224.0	224.0	한국토지주택공사						
497	구래동		6467	-	0	구	344.0	344.0	344.0	한국토지주택공사						
498	구래동		6468	-	0	구	12.0	12.0	12.0	한국토지주택공사						
499	구래동		6469	-	0	구	36.0	36.0	3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0	구래동		6470	-	0	구	11.0	11.0	11.0	한국토지주택공사						
501	구래동		6471	-	0	구	22.0	22.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502	구래동		6472	-	0	구	36.0	36.0	3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3	구래동		6473	-	0	구	96.0	96.0	9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4	구래동		6474	-	0	구	30.0	30.0	30.0	한국토지주택공사						
505	구래동		6475	-	0	구	36.0	36.0	3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6	구래동		6476	-	0	구	66.0	66.0	66.0	한국토지주택공사						
507	구래동		6477	-	0	구	151.0	151.0	151.0	한국토지주택공사						
508	구래동		6478	-	0	구	48.0	48.0	48.0	한국토지주택공사						
509	구래동		6479	-	0	전	3,064.0	3,064.0	3,064.0	한국토지주택공사						
510	구래동		6480	-	0	전	2,600.0	2,600.0	2,600.0	한국토지주택공사						
511	구래동		6481	-	0	잡	1,444.0	1,444.0	1,444.0	한국토지주택공사						
512	구래동		6482	-	0	전	1,048.0	1,048.0	1,048.0	한국토지주택공사						
513	구래동		6483	-	0	전	1,557.0	1,557.0	1,557.0	한국토지주택공사						
514	구래동		6484	-	0	잡	1,445.0	1,445.0	1,445.0	한국토지주택공사						
515	구래동		6485	-	0	답	3,517.0	3,517.0	3,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516	구래동		6486	-	0	구	71.0	71.0	71.0	한국토지주택공사						
517	구래동		6487	-	0	구	101.0	101.0	101.0	한국토지주택공사						
518	구래동		6488	-	0	답	1,395.0	1,395.0	1,395.0	한국토지주택공사						
519	구래동		6489	-	0	답	973.0	973.0	973.0	한국토지주택공사						
520	구래동		6490	-	0	답	973.0	973.0	973.0	한국토지주택공사						
521	구래동		6491	-	0	답	963.0	963.0	963.0	한국토지주택공사						
522	구래동		6492	-	0	답	2,092.0	2,092.0	2,092.0	한국토지주택공사						
523	구래동		6493	-	0	전	3,848.0	3,848.0	3,848.0	한국토지주택공사						
524	구래동		6494	-	0	전	2,660.0	2,660.0	2,660.0	한국토지주택공사						
525	구래동		6495	-	0	전	202.0	202.0	202.0	한국토지주택공사						
526	구래동		6496	-	0	전	103.0	103.0	103.0	한국토지주택공사						
527	구래동		6498	-	0	구	395.0	395.0	395.0	한국토지주택공사						
528	구래동		6499	-	0	전	2,877.0	2,877.0	2,877.0	한국토지주택공사						
529	구래동		6604	-	0	천	28.0	28.0	28.0	국(국토교통부)						
530	구래동		6607	-	0	도	298.0	298.0	298.0	국(국토교통부)						
531	구래동		6608	-	1	전	19.0	19.0	19.0	한국토지주택공사						
532	구래동		6609	-	1	답	42.0	42.0	42.0	김포시						
533	구래동		6610	-	0	도	1,063.0	1,063.0	1,063.0	국(국토교통부)						
534	구래동		6611	-	0	도	77.0	77.0	77.0	국(국토교통부)						
535	구래동		6614	-	1	답	180.0	180.0	180.0	한국토지주택공사						
536	구래동		6616	-	0	답	64.0	64.0	64.0	한국토지주택공사						
537	구래동		6620	-	1	도	387.0	387.0	387.0	국(국토교통부)						
538	구래동		6623	-	1	전	784.0	784.0	784.0	한국토지주택공사						
539	구래동		6624	-	0	답	124.0	124.0	124.0	김포시						
540	구래동		6625	-	1	전	2,237.0	2,237.0	2,237.0	한국토지주택공사						
541	구래동		6626	-	0	답	144.0	144.0	144.0	김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542	구래동	6627	-	1	구	136.0	136.0	136.0	국(농림수산식품부)						
543	구래동	6628	-	1	구	381.0	381.0	381.0	국(농림수산식품부)						
544	구래동	6632	-	0	천	6,418.0	6,418.0	6,418.0	국(국토교통부)						
545	구래동	6641	-	2	전	42.0	42.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546	구래동	6642	-	0	답	144.0	144.0	144.0	한국토지주택공사						
547	구래동	6643	-	1	답	9.0	9.0	9.0	김포시						
548	구래동	6644	-	1	답	23.0	23.0	23.0	한국토지주택공사						
549	구래동	6645	-	0	답	171.0	171.0	171.0	한국토지주택공사						
550	구래동	6646	-	0	답	18.0	18.0	18.0	김포시						
551	구래동	6647	-	0	답	2,627.0	2,627.0	2,627.0	한국토지주택공사						
552	구래동	6648	-	0	답	103.0	103.0	103.0	김포시						
553	구래동	6649	-	0	답	3,081.0	3,081.0	3,081.0	한국토지주택공사						
554	구래동	6650	-	0	답	260.0	260.0	260.0	김포시						
555	구래동	6651	-	0	도	1,539.0	1,539.0	1,539.0	국(농림수산식품부)						
556	구래동	6652	-	0	구	2,104.0	2,104.0	2,104.0	국(농림수산식품부)						
557	구래동	6653	-	0	전	1,947.0	1,947.0	1,947.0	한국토지주택공사						
558	구래동	6654	-	0	전	3,123.0	3,123.0	3,123.0	한국토지주택공사						
559	구래동	6655	-	0	전	3,211.0	3,211.0	3,211.0	한국토지주택공사						
560	구래동	6656	-	0	과	963.0	963.0	963.0	한국토지주택공사						
561	구래동	6657	-	0	답	3.0	3.0	3.0	김포시						
562	구래동	6658	-	0	과	2,838.0	2,838.0	2,838.0	한국토지주택공사						
563	구래동	6659	-	0	답	46.0	46.0	46.0	김포시						
564	구래동	6660	-	0	과	3,862.0	3,862.0	3,862.0	한국토지주택공사						
565	구래동	6661	-	0	답	80.0	80.0	80.0	김포시						
566	구래동	6662	-	0	답	3,913.0	3,913.0	3,913.0	한국토지주택공사						
567	구래동	6663	-	0	답	44.0	44.0	44.0	김포시						
568	구래동	6664	-	0	답	3,990.0	3,990.0	3,990.0	한국토지주택공사						
569	구래동	6665	-	0	답	27.0	27.0	27.0	김포시						
570	구래동	6666	-	0	답	2,538.0	2,538.0	2,538.0	한국토지주택공사						
571	구래동	6667	-	0	답	21.0	21.0	21.0	김포시						
572	구래동	6668	-	0	답	3,338.0	3,338.0	3,338.0	한국토지주택공사						
573	구래동	6669	-	0	도	1,155.0	1,155.0	1,155.0	국(농림수산식품부)						
574	구래동	6670	-	0	도	1,151.0	1,151.0	1,151.0	국(농림수산식품부)						
575	구래동	6671	-	0	구	678.0	678.0	678.0	국(농림수산식품부)						
576	구래동	6672	-	0	답	1,641.0	1,641.0	1,641.0	한국토지주택공사						
577	구래동	6673	-	0	답	2,071.0	2,071.0	2,071.0	한국토지주택공사						
578	구래동	6674	-	0	답	2,860.0	2,860.0	2,860.0	한국토지주택공사						
579	구래동	6675	-	0	답	2,943.0	2,943.0	2,943.0	한국토지주택공사						
580	구래동	6676	-	0	답	1,701.0	1,701.0	1,701.0	한국토지주택공사						
581	구래동	6677	-	0	답	953.0	953.0	953.0	한국토지주택공사						
582	구래동	6678	-	0	답	1,159.0	1,159.0	1,159.0	한국토지주택공사						
583	구래동	6679	-	0	답	881.0	881.0	881.0	한국토지주택공사						
584	구래동	6680	-	0	답	1,329.0	1,329.0	1,329.0	한국토지주택공사						
585	구래동	6681	-	0	답	1,565.0	1,565.0	1,565.0	한국토지주택공사						
586	구래동	6682	-	0	답	462.0	462.0	462.0	한국토지주택공사						
587	구래동	6695	-	0	구	29.0	29.0	29.0	국(농림수산식품부)						
588	구래동	6696	-	0	도	26.0	26.0	26.0	국(농림수산식품부)						
589	구래동	6698	-	0	구	47.0	47.0	47.0	국(농림수산식품부)						
590	구래동	6712	-	0	답	511.0	511.0	511.0	한국토지주택공사						
591	구래동	6713	-	0	답	672.0	672.0	672.0	한국토지주택공사						
592	구래동	6714	-	0	답	665.0	665.0	665.0	한국토지주택공사						
593	구래동	6715	-	0	답	526.0	526.0	526.0	한국토지주택공사						
594	구래동	6716	-	0	답	672.0	672.0	672.0	한국토지주택공사						
595	구래동	6717	-	0	답	537.0	537.0	537.0	한국토지주택공사						
596	구래동	6718	-	0	구	445.0	445.0	445.0	국(농림수산식품부)						
597	구래동	6789	-	1	구	1,282.0	1,282.0	1,282.0	국(농림수산식품부)						
598	구래동	6790	-	0	도	498.0	485.0	485.0	국(농림수산식품부)						
599	구래동	6791	-	1	구	288.0	288.0	288.0	국(농림수산식품부)						
600	구래동	6792	-	1	답	846.0	846.0	8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01	구래동	6793	-	1	답	655.0	655.0	655.0	한국토지주택공사						
602	구래동	6794	-	1	답	5,636.0	5,636.0	5,636.0	한국토지주택공사						
603	구래동	6795	-	0	답	3,185.0	3,185.0	3,185.0	한국토지주택공사						
604	구래동	6796	-	1	답	929.0	929.0	929.0	한국토지주택공사						
605	구래동	6797	-	0	구	615.0	615.0	615.0	국(농림수산식품부)						
606	구래동	6798	-	0	답	2,330.0	2,330.0	2,330.0	한국토지주택공사						
607	구래동	6799	-	0	답	2,239.0	2,239.0	2,239.0	한국토지주택공사						
608	구래동	6800	-	0	답	1,531.0	1,531.0	1,531.0	한국토지주택공사						
609	구래동	6801	-	0	전	225.0	225.0	225.0	한국토지주택공사						
610	구래동	6802	-	0	대	825.0	825.0	825.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611	구래동		6803	-	0	전	324.0	324.0	324.0	한국토지주택공사						
612	구래동		6804	-	0	전	461.0	461.0	461.0	한국토지주택공사						
613	구래동		6805	-	0	대	327.0	327.0	327.0	한국토지주택공사						
614	구래동		6806	-	0	전	630.0	630.0	630.0	한국토지주택공사						
615	구래동		6807	-	0	답	1,243.0	1,243.0	1,243.0	한국토지주택공사						
616	구래동		6808	-	0	대	833.0	833.0	833.0	한국토지주택공사						
617	구래동		6809	-	0	전	820.0	820.0	820.0	한국토지주택공사						
618	구래동		6810	-	0	전	1,051.0	1,051.0	1,051.0	한국토지주택공사						
619	구래동		6811	-	0	전	946.0	946.0	9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20	구래동		6812	-	0	답	6,324.0	6,324.0	6,324.0	한국토지주택공사						
621	구래동		6813	-	0	전	205.0	205.0	205.0	한국토지주택공사						
622	구래동		6814	-	0	전	773.0	773.0	773.0	한국토지주택공사						
623	구래동		6815	-	0	대	428.0	428.0	428.0	한국토지주택공사						
624	구래동		6816	-	0	임	1,437.0	1,437.0	1,437.0	한국토지주택공사						
625	구래동		6817	-	0	대	409.0	409.0	409.0	한국토지주택공사						
626	구래동		6818	-	0	목	792.0	792.0	792.0	한국토지주택공사						
627	구래동		6819	-	0	대	786.0	786.0	786.0	한국토지주택공사						
628	구래동		6820	-	0	임	4,040.0	4,040.0	4,040.0	한국토지주택공사						
629	구래동		6821	-	0	임	1,246.0	1,246.0	1,2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30	구래동		6822	-	0	임	795.0	795.0	795.0	한국토지주택공사						
631	구래동		6823	-	0	임	618.0	618.0	618.0	한국토지주택공사						
632	구래동		6824	-	0	전	3,270.0	3,270.0	3,270.0	한국토지주택공사						
633	구래동		6825	-	0	임	1,933.0	1,933.0	1,933.0	한국토지주택공사						
634	구래동		6826	-	0	전	661.0	661.0	661.0	한국토지주택공사						
635	구래동		6827	-	0	전	337.0	337.0	337.0	한국토지주택공사						
636	구래동		6828	-	0	답	1,131.0	1,131.0	1,131.0	한국토지주택공사						
637	구래동		6829	-	0	전	42.0	42.0	42.0	한국토지주택공사						
638	구래동		6830	-	0	답	518.0	518.0	518.0	한국토지주택공사						
639	구래동		6831	-	0	대	178.0	178.0	178.0	한국토지주택공사						
640	구래동		6832	-	0	임	1,637.0	1,637.0	1,637.0	한국토지주택공사						
641	구래동		6833	-	0	임	5,095.0	5,095.0	5,095.0	한국토지주택공사						
642	구래동		6834	-	0	대	300.0	300.0	3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43	구래동		6835	-	0	대	236.0	236.0	236.0	한국토지주택공사						
644	구래동		6836	-	0	장	549.0	549.0	549.0	한국토지주택공사						
645	구래동		6837	-	0	임	792.0	792.0	792.0	한국토지주택공사						
646	구래동		6838	-	0	장	548.0	548.0	548.0	한국토지주택공사						
647	구래동		6839	-	0	전	1,772.0	1,772.0	1,772.0	한국토지주택공사						
648	구래동		6840	-	0	임	218.0	218.0	218.0	한국토지주택공사						
649	구래동		6841	-	0	임	3,900.0	3,900.0	3,900.0	한국토지주택공사						
650	구래동		6851	-	0	장	882.0	882.0	882.0	한국토지주택공사						
651	구래동		6852	-	0	전	546.0	546.0	5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52	구래동		6853	-	0	전	2,785.0	2,785.0	2,785.0	한국토지주택공사						
653	구래동		6854	-	0	대	108.0	108.0	108.0	한국토지주택공사						
654	구래동		6855	-	0	전	1,188.0	1,188.0	1,188.0	한국토지주택공사						
655	구래동		6856	-	0	장	2,053.0	2,053.0	2,053.0	한국토지주택공사						
656	구래동		6857	-	0	답	3,845.0	3,845.0	3,845.0	한국토지주택공사						
657	구래동		6858	-	0	답	1,388.0	1,388.0	1,388.0	한국토지주택공사						
658	구래동		6859	-	0	전	65.0	65.0	65.0	한국토지주택공사						
659	구래동		6860	-	0	전	1,434.0	1,434.0	1,434.0	한국토지주택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660	구래동		6861	-	0	잡	1,848.0	1,848.0	1,848.0	한국토지주택공사						
661	구래동		6862	-	0	도	420.0	420.0	420.0	한국토지주택공사						
662	구래동		6863	-	0	장	3,546.0	3,546.0	3,5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63	구래동		6864	-	0	도	237.0	237.0	237.0	한국토지주택공사						
664	구래동		6865	-	0	도	116.0	116.0	116.0	한국토지주택공사						
665	구래동		6866	-	0	장	1.0	1.0	1.0	한국토지주택공사						
666	구래동		6867	-	0	장	192.0	169.0	169.0	한국토지주택공사						
667	구래동		6868	-	0	전	11.0	9.0	9.0	한국토지주택공사						
668	구래동		6869	-	0	답	622.0	622.0	622.0	한국토지주택공사						
669	구래동		6870	-	0	도	333.0	333.0	333.0	국(국토교통부)						
670	구래동		6871	-	0	도	123.0	26.0	26.0	국(국토교통부)						
671	구래동		6871	-	2	도		73.0	73.0	국(국토교통부)						
672	구래동	산	683	-	0	임	2,739.0	2,739.0	2,739.0	한국토지주택공사						
673	구래동	산	686	-	0	임	1,488.0	1,488.0	1,488.0	한국토지주택공사						
674	구래동	산	687	-	0	임	992.0	992.0	992.0	한국토지주택공사						
675	구래동	산	692	-	0	임	9,030.0	9,030.0	9,030.0	한국토지주택공사						
676	구래동	산	712	-	0	임	8,001.0	8,001.0	8,001.0	한국토지주택공사						
677	구래동	산	713	-	0	임	22,971.0	22,971.0	22,971.0	한국토지주택공사						
678	구래동	산	714	-	0	임	1,941.0	1,941.0	1,941.0	한국토지주택공사						
679	구래동	산	715	-	0	임	346.0	346.0	346.0	한국토지주택공사						
680	구래동	산	716	-	0	임	1,724.0	1,724.0	1,724.0	한국토지주택공사						
681	구래동	산	717	-	0	임	298.0	298.0	298.0	한국토지주택공사						
682	구래동	산	718	-	0	임	9,664.0	9,664.0	9,664.0	한국토지주택공사						
683	구래동	산	719	-	0	임	215.0	215.0	215.0	한국토지주택공사						
684	구래동	산	720	-	0	도	145.0	145.0	145.0	김포시						
685	구래동	산	721	-	0	도	22.0	22.0	22.0	한국토지주택공사						
686	구래동	산	722	-	0	임	225.0	225.0	225.0	한국토지주택공사						
687	구래동	산	723	-	0	도	172.0	172.0	172.0	김포시						
688	구래동	산	724	-	0	도	66.0	66.0	66.0	김포시						
689	구래동	산	725	-	0	도	43.0	43.0	43.0	김포시						
690	구래동	산	726	-	0	임	34.0	34.0	34.0	한국토지주택공사						
691	구래동	산	727	-	0	도	431.0	431.0	431.0	김포시						
692	구래동	산	728	-	0	임	1,388.0	1,388.0	1,388.0	김포시						
693	구래동	산	729	-	0	도	13.0	13.0	13.0	김포시						
694	구래동	산	730	-	0	도	298.0	298.0	298.0	국(국토교통부)						
695	구래동	산	731	-	0	도	422.0	422.0	422.0	국(국토교통부)						
696	구래동	산	732	-	0	도	397.0	397.0	397.0	국(국토교통부)						
697	구래동	산	736	-	0	도	62.0	62.0	62.0	국(국토교통부)						
698	구래동	산	764	-	0	임	13.0	13.0	13.0	한국토지주택공사						
699	구래동	산	765	-	0	임	415.0	415.0	415.0	한국토지주택공사						
700	구래동	산	766	-	0	임	1,257.0	1,257.0	1,257.0	한국토지주택공사						
701	구래동	산	767	-	0	임	3,937.0	3,937.0	3,937.0	한국토지주택공사						
702	구래동	산	768	-	0	임	73.0	73.0	73.0	한국토지주택공사						
703	구래동	산	774	-	0	임	210.0	210.0	210.0	한국토지주택공사						
704	구래동	산	775	-	0	임	13,207.0	13,207.0	13,207.0	한국토지주택공사						

붙임1-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귀속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6단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1	운양동	122	-	4	구	36.0	36.0	36.0	국(농림수산식품부)							
2	운양동	125	-	4	도	49.0	49.0	49.0	국(농림수산식품부)							
3	운양동	433	-	1	도	2.0	2.0	2.0	국(기획재정부)							
4	운양동	1219	-	16	도	826.0	826.0	826.0	국(국토교통부)							
5	운양동	1219	-	29	도	136.0	136.0	136.0	국(국토교통부)							
6	운양동	1219	-	71	도	11.0	11.0	11.0	국(국토교통부)							
7	운양동	1219	-	75	도	60.0	60.0	60.0	국(국토교통부)							
8	운양동	1219	-	77	도	351.0	351.0	351.0	국(국토교통부)							
9	운양동	1219	-	80	도	26.0	26.0	26.0	국(국토교통부)							
10	운양동	1219	-	82	도	2.0	2.0	2.0	국(국토교통부)							
11	운양동	1219	-	83	도	109.0	109.0	109.0	국(국토교통부)							
12	운양동	1219	-	84	도	1.0	1.0	1.0	국(국토교통부)							
13	운양동	1219	-	85	도	388.0	388.0	388.0	국(국토교통부)							
14	운양동	1440	-	69	구	459.0	459.0	459.0	국(농림수산식품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15	운양동	1440	-	71	도	6.0	6.0	6.0	김포시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16	운양동	1440	-	85	답	51.0	51.0	51.0	국(국토교통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17	운양동	1440	-	87	도	102.0	102.0	102.0	김포시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18	운양동	1440	-	91	답	12.0	12.0	12.0	국(국토교통부)					장기동에서운양동으로변경		
19	장기동	106	-	5	구	321.0	321.0	321.0	국(농림수산식품부)							
20	장기동	106	-	17	도	315.0	315.0	315.0	국(농림수산식품부)							
21	마산동	164	-	13	도	284.0	284.0	284.0	국(국토교통부)							
22	마산동	439	-	4	도	58.0	58.0	58.0	국(국토교통부)							
23	마산동	439	-	6	도	66.0	66.0	66.0	국(국토교통부)							
24	마산동	439	-	8	도	746.0	746.0	746.0	국(국토교통부)							
25	마산동	442	-	0	도	416.0	416.0	416.0	국(국토교통부)							
26	구래동	5018	-	0	도	231.0	231.0	231.0	김포시							
27	구래동	5019	-	0	도	17.0	17.0	17.0	김포시							
28	구래동	5020	-	0	도	250.0	250.0	250.0	김포시							
29	구래동	5021	-	0	도	157.0	157.0	157.0	김포시							
30	구래동	5022	-	0	도	13.0	13.0	13.0	김포시							
31	구래동	5023	-	0	도	167.0	167.0	167.0	김포시							
32	구래동	5024	-	0	도	165.0	165.0	165.0	김포시							
33	구래동	5027	-	0	도	175.0	175.0	175.0	김포시							
34	구래동	5028	-	0	도	22.0	22.0	22.0	김포시							
35	구래동	5029	-	0	도	144.0	144.0	144.0	김포시							
36	구래동	5034	-	0	도	83.0	83.0	83.0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지분42/83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37	구래동	5035	-	0	도	99.0	99.0	99.0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시지분69/99 그외지분한국토지주택공사		
38	구래동	5038	-	0	도	123.0	123.0	123.0	김포시							
39	구래동	5039	-	0	도	29.0	29.0	29.0	김포시							
40	구래동	5040	-	0	도	15.0	15.0	15.0	김포시							
41	구래동	5041	-	0	도	202.0	202.0	202.0	김포시							
42	구래동	5043	-	0	도	4.0	4.0	4.0	김포시							
43	구래동	5044	-	0	도	14.0	14.0	14.0	김포시							
44	구래동	5045	-	0	도	19.0	19.0	19.0	김포시							
45	구래동	5046	-	0	도	19.0	19.0	19.0	김포시							
46	구래동	5111	-	0	도	99.0	99.0	99.0	김포시							
47	구래동	5115	-	0	도	539.0	539.0	539.0	김포시							
48	구래동	5122	-	0	도	79.0	79.0	79.0	김포시							
49	구래동	5123	-	0	도	318.0	318.0	318.0	김포시							
50	구래동	5126	-	0	도	132.0	132.0	132.0	김포시							
51	구래동	5127	-	0	도	43.0	43.0	43.0	김포시							
52	구래동	5128	-	0	전	191.0	191.0	191.0	김포시							
53	구래동	5129	-	0	도	25.0	25.0	25.0	김포시							
54	구래동	5140	-	1	도	241.0	241.0	241.0	김포시							
55	구래동	5141	-	0	도	112.0	112.0	112.0	김포시							
56	구래동	5142	-	1	도	38.0	38.0	38.0	김포시							
57	구래동	5143	-	0	전	104.0	104.0	104.0	김포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산	본번	부번		기정	변경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내용	
							계	6단계						
58	구래동		5145	- 1	도	4.0	4.0	4.0	김포시					
59	구래동		5148	- 0	도	194.0	194.0	194.0	국(농림수산식품부)					
60	구래동		5151	- 2	구	181.0	181.0	181.0	국(농림수산식품부)					
61	구래동		6330	- 0	도	513.0	87.0	87.0	국(국토교통부)					
62	구래동		6330	- 3	도		411.0	411.0	국(국토교통부)					
63	구래동		6336	- 0	도	2,067.0	2,067.0	2,067.0	국(국토교통부)					
64	구래동		6337	- 0	도	349.0	349.0	349.0	국(국토교통부)					
65	구래동		6338	- 0	도	145.0	145.0	145.0	국(국토교통부)					
66	구래동		6350	- 0	도	664.0	664.0	664.0	국(국토교통부)					
67	구래동		6353	- 1	도	135.0	135.0	135.0	국(국토교통부)					
68	구래동		6353	- 2	도	223.0	223.0	223.0	국(국토교통부)					
69	구래동		6361	- 1	구	896.0	896.0	896.0	국(농림수산식품부)					
70	구래동		6362	- 1	도	745.0	745.0	745.0	국(농림수산식품부)					
71	구래동		6381	- 1	구	55.0	55.0	55.0	국(농림수산식품부)					
72	구래동		6604	- 0	천	28.0	28.0	28.0	국(국토교통부)					
73	구래동		6607	- 0	도	298.0	298.0	298.0	국(국토교통부)					
74	구래동		6609	- 1	답	42.0	42.0	42.0	김포시					
75	구래동		6610	- 0	도	1,063.0	1,063.0	1,063.0	국(국토교통부)					
76	구래동		6611	- 0	도	77.0	77.0	77.0	국(국토교통부)					
77	구래동		6620	- 1	도	387.0	387.0	387.0	국(국토교통부)					
78	구래동		6624	- 0	답	124.0	124.0	124.0	김포시					
79	구래동		6626	- 0	답	144.0	144.0	144.0	김포시					
80	구래동		6627	- 1	구	136.0	136.0	136.0	국(농림수산식품부)					
81	구래동		6628	- 1	구	381.0	381.0	381.0	국(농림수산식품부)					
82	구래동		6632	- 0	천	6,418.0	6,418.0	6,418.0	국(국토교통부)					
83	구래동		6643	- 1	답	9.0	9.0	9.0	김포시					
84	구래동		6646	- 0	답	18.0	18.0	18.0	김포시					
85	구래동		6648	- 0	답	103.0	103.0	103.0	김포시					
86	구래동		6650	- 0	답	260.0	260.0	260.0	김포시					
87	구래동		6651	- 0	도	1,539.0	1,539.0	1,539.0	국(농림수산식품부)					
88	구래동		6652	- 0	구	2,104.0	2,104.0	2,104.0	국(농림수산식품부)					
89	구래동		6657	- 0	답	3.0	3.0	3.0	김포시					
90	구래동		6659	- 0	답	46.0	46.0	46.0	김포시					
91	구래동		6661	- 0	답	80.0	80.0	80.0	김포시					
92	구래동		6663	- 0	답	44.0	44.0	44.0	김포시					
93	구래동		6665	- 0	답	27.0	27.0	27.0	김포시					
94	구래동		6667	- 0	답	21.0	21.0	21.0	김포시					
95	구래동		6669	- 0	도	1,155.0	1,155.0	1,155.0	국(농림수산식품부)					
96	구래동		6670	- 0	도	1,151.0	1,151.0	1,151.0	국(농림수산식품부)					
97	구래동		6671	- 0	구	678.0	678.0	678.0	국(농림수산식품부)					
98	구래동		6695	- 0	구	29.0	29.0	29.0	국(농림수산식품부)					
99	구래동		6696	- 0	도	26.0	26.0	26.0	국(농림수산식품부)					
100	구래동		6698	- 0	구	47.0	47.0	47.0	국(농림수산식품부)					
101	구래동		6718	- 0	구	445.0	445.0	445.0	국(농림수산식품부)					
102	구래동		6789	- 1	구	1,282.0	1,282.0	1,282.0	국(농림수산식품부)					
103	구래동		6790	- 0	도	498.0	485.0	485.0	국(농림수산식품부)					
104	구래동		6791	- 1	구	288.0	288.0	288.0	국(농림수산식품부)					
105	구래동		6797	- 0	구	615.0	615.0	615.0	국(농림수산식품부)					
106	구래동		6870	- 0	도	333.0	333.0	333.0	국(국토교통부)					
107	구래동		6871	- 0	도	123.0	26.0	26.0	국(국토교통부)					
108	구래동		6871	- 2	도		73.0	73.0	국(국토교통부)					
109	구래동	산	720	- 0	도	145.0	145.0	145.0	김포시					
110	구래동	산	723	- 0	도	172.0	172.0	172.0	김포시					
111	구래동	산	724	- 0	도	66.0	66.0	66.0	김포시					
112	구래동	산	725	- 0	도	43.0	43.0	43.0	김포시					
113	구래동	산	727	- 0	도	431.0	431.0	431.0	김포시					
114	구래동	산	728	- 0	임	1,388.0	1,388.0	1,388.0	김포시					
115	구래동	산	729	- 0	도	13.0	13.0	13.0	김포시					
116	구래동	산	730	- 0	도	298.0	298.0	298.0	국(국토교통부)					
117	구래동	산	731	- 0	도	422.0	422.0	422.0	국(국토교통부)					
118	구래동	산	732	- 0	도	397.0	397.0	397.0	국(국토교통부)					
119	구래동	산	736	- 0	도	62.0	62.0	62.0	국(국토교통부)					

붙임2.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구역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김포한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865,251.0	감 691.3	10,864,559.7	-

■ 도시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①	김포한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864,559.7	6단계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지구외 현황을 반영한 구역경계 조정에 따 라 도시계획구역 변경 결정함.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중남부생활권 (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0,714,586.1	감 691.3	70,713,894.8	100.0	
주거지역	13,673,260.7	감 1,577.0	13,671,683.7	19.3	
제1종전용주거지역	498,866.7	-	498,866.7	0.7	
제2종전용주거지역	186,939.6	-	186,939.6	0.3	
제1종일반주거지역	4,458,304.6	-	4,458,304.6	6.3	
제2종일반주거지역	1,759,845.3	-	1,759,845.3	2.5	
제3종일반주거지역	5,407,219.9	감 1,951.3	5,405,268.6	7.6	
준주거지역	1,362,084.6	증 374.3	1,362,458.9	1.9	
상업지역	867,819.1	-	867,819.1	1.2	
일반상업지역	774,651.9	-	774,651.9	1.1	
근린상업지역	93,167.2	-	93,167.2	0.1	
공업지역	302,028.0	-	302,028.0	0.4	
일반공업지역	55,628.0	-	55,628.0	0.1	
준공업지역	246,400.0	-	246,400.0	0.3	
녹지지역	54,091,330.2	증 885.7	54,092,215.9	76.5	
자연녹지지역	37,954,346.2	증 885.7	37,955,231.9	53.7	
생산녹지지역	2,609,377.0	-	2,609,377.0	3.7	
보전녹지지역	13,527,607.0	-	13,527,607.0	19.1	
미지정	1,780,148.1	-	1,780,148.1	2.5	

■ 김포한강지구 (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10,865,251.0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52.2	513,953.0	감 691.3	-	-	-	-	-	-	감 691.3	10,864,559.7	3,582,737.7	1,958,959.7	3,854,743.3	313,742.1	641,152.2	513,953.0	100.0
주거지역	소계	7,367,143.7	3,450,588.1	1,561,968.4	1,300,307.5	236,723.7	391,708.1	375,847.9	감 1,577.0	-	-	-	-	-	감 1,577.0	7,365,566.7	3,450,588.1	1,561,968.4	1,300,307.5	236,723.7	391,708.1	374,270.9	67.8
	제1종 전용주거	413,033.7	-	281,748.1	67,071.0	63,107.0	1,137.6	-	-	-	-	-	-	-	-	413,033.7	-	281,748.1	67,071.0	63,107.0	1,137.6	-	3.8
	제2종 전용주거	161,306.6	-	2,184.2	15,264.0	62,145.3	81,787.1	-	-	-	-	-	-	-	-	161,306.6	-	2,184.2	15,264.0	62,145.3	81,787.1	-	1.5
	제1종 일반주거	1,123,278.6	675,638.1	328,732.8	99,232.3	4,773.5	14,801.9	-	-	-	-	-	-	-	-	1,123,278.6	675,638.1	328,732.8	99,232.3	4,773.5	14,801.9	-	10.3
	제2종 일반주거	246,189.3	52,421.8	45,537.6	57,846.4	4,738.6	85,534.9	-	-	-	-	-	-	-	-	246,189.3	52,421.8	45,537.6	57,846.4	4,738.6	85,534.9	-	2.3
	제3종 일반주거	4,170,029.9	2,232,036.0	776,156.9	848,318.8	91,899.3	183,844.2	17,777.7	감 1,951.3	-	-	-	-	-	감 1,951.3	4,168,081.6	2,232,036.0	776,156.9	848,318.8	91,899.3	183,844.2	15,826.4	38.4
	준 주거지역	1,253,198.6	470,472.2	127,538.8	272,515.0	-	24,024.4	358,070.2	증 374.3	-	-	-	-	-	증 374.3	1,253,572.9	470,472.2	127,538.8	272,515.0	-	24,024.4	358,444.5	11.5
상업지역	소계	608,742.1	21,774.2	299,198.8	200,020.5	27,748.6	-	-	-	-	-	-	-	-	608,742.1	21,774.2	299,198.8	200,020.5	27,748.6	-	-	-	5.6
	일반 상업지역	515,574.9	18,031.7	242,947.1	236,847.5	27,748.6	-	-	-	-	-	-	-	-	515,574.9	18,031.7	242,947.1	236,847.5	27,748.6	-	-	-	4.7
	근린 상업지역	93,167.2	3,742.5	56,251.7	33,173.0	-	-	-	-	-	-	-	-	-	93,167.2	3,742.5	56,251.7	33,173.0	-	-	-	-	0.9
녹지지역	소계	2,889,352.2	110,375.4	97,732.5	2,234,415.3	59,298.8	249,407.1	138,105.1	증 885.7	-	-	-	-	-	증 885.7	2,890,237.9	110,375.4	97,732.5	2,234,415.3	59,298.8	249,407.1	138,990.8	26.6
	자연 녹지지역	2,889,352.2	110,375.4	97,732.5	2,234,415.3	59,298.8	249,407.1	138,105.1	증 885.7	-	-	-	-	-	증 885.7	2,890,237.9	110,375.4	97,732.5	2,234,415.3	59,298.8	249,407.1	138,990.8	26.6
미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m ²)	결정(변경)사유
-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제1종전용주거지역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제3종일반주거지역	증) 1,951.3	확정측량결과 반영
		준주거지역	증) 374.3	확정측량결과 반영
		일반상업지역	-	-
		자연녹지지역	감) 885.7	확정측량결과 반영

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김포한강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865,251.0	감 691.3	10,864,559.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변경사유
①	김포한강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864,559.7	6단계 확정측량결과 반영 및 지구외 현황을 반영한 구역경계 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 결 정함.

2. 도시관리계획총괄도(S=1:25,000) : 게재생략
3.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 총괄조서 (변경)

구분	구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총계	계	기정	636	125,997	39,565	36,100	35,997	3,502	6,093	4,740	2,048,235.6	643,50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826.0		
		변경	639	125,989	39,565	36,100	35,997	3,502	6,093	4,732	2,048,399.1	643,500.1	521,897.0	673,272.9	38,481.6	102,168.0	68,989.5		
일 반 도 로	광로	계	기정	303	92,754	26,431	27,236	27,529	2,552	5,023	3,963	1,661,498.2	485,934.0	428,239.0	568,693.0	29,328.0	91,853.2	57,451.0	
			변경	304	92,764	26,431	27,236	27,529	2,552	5,023	3,973	1,661,578.2	485,934.0	428,239.0	568,693.0	29,328.0	91,853.2	57,531.0	
			소계	4	3,417	1,648	1	379	-	1,389	-	121,224.2	67,992.0	40.0	15,818.0	-	37,374.2	-	
		3	42	기정	1	1,365	1,036	-	329	-	-	-	57,300.0	43,512.0	-	13,818.0	-	-	
			40	기정	3	2,052	612	1	50	-	1,389	-	63,894.2	24,480.0	40.0	2,000.0	-	37,374.2	
			소계	15	13,801	2,120	2,939	8,194	-	548	-	376,045.0	66,909.0	59,609.0	232,883.0	-	16,644.0	-	
	2	34	기정	6	4,816	1,080	684	3,001	-	51	-	163,744.0	36,720.0	23,256.0	102,034.0	-	1,734.0	-	
			30	기정	2	5,530	703	1,452	2,878	-	497	-	120,990.0	21,090.0	15,360.0	69,630.0	-	14,910.0	-
			소계	8	10,346	1,783	4,452	5,879	-	100	-	284,734.0	57,810.0	38,616.0	171,664.0	-	16,644.0	-	
		3	29.5	기정	1	294	-	-	294	-	-	-	8,673.0	-	-	8,673.0	-	-	
			27	기정	3	452	337	115	-	-	-	-	12,204.0	9,099.0	3,105.0	-	-	-	
			26	기정	3	2,709	-	688	2,021	-	-	-	70,434.0	-	17,888.0	52,546.0	-	-	
1	소계	기정	104	45,479	12,885	14,151	14,435	727	1,224	2,057	881,413.0	254,751.0	271,954.0	279,884.0	12,840.0	22,291.0	39,663.0		
		24	기정	4	4,116	385	2,479	1,169	-	73	-	98,784.0	9,480.0	59,496.0	28,056.0	-	1,752.0	-	
		23.5	기정	2	1,142	490	-	662	-	-	-	26,857.0	11,280.0	-	15,567.0	-	-	-	
		23	기정	19	18,168	6,261	4,602	5,863	184	74	1,184	417,864.0	144,003.0	105,846.0	134,849.0	4,232.0	1,702.0	27,232.0	
20	기정	8	2,070	1,135	541	20	-	302	72	41,399.0	22,700.0	10,820.0	400.0	-	6,040.0	1,439.0			

구분	류별	폭원(m)	구분	노선수	연장(m)						면적(m ²)						비고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소로	2	19	기정	1	160	-	-	-	-	160	-	-	-	-	3,040.0	-	-	-	-	-		
		18	기정	2	294	294	-	-	-	-	-	-	-	-	5,292.0	5,292.0	-	-	-	-	-	
		17	기정	1	282	-	-	-	-	-	-	-	282	-	4,794.0	-	-	-	-	-	4,794.0	
		16	기정	33	12,032	2,176	4,039	4,782	523	532	-	-	-	-	192,832.0	34,816.0	64,624.0	76,512.0	8,368.0	8,512.0	-	
		15	기정	5	512	416	13	-	-	-	83	-	-	-	7,680.0	6,240.0	195.0	-	-	-	1,245.0	-
		14	기정	7	413	102	195	116	-	-	-	-	-	-	5,782.0	1,428.0	2,700.0	1,624.0	-	-	-	-
	3	13	기정	10	1,899	-	859	1,010	-	-	-	-	-	-	24,297.0	-	11,167.0	13,130.0	-	-	-	-
		12	기정	12	4,401	1,626	1,423	813	20	-	-	-	-	-	52,812.0	19,512.0	17,076.0	9,756.0	240.0	-	-	6,228.0
		소계		기정	180	30,057	9,778	10,165	4,521	1,825	1,862	1,906	282,816.0	96,282.0	96,636.0	40,108.0	16,488.0	15,544.0	17,758.0	-	-	
		변경		181	30,067	9,778	10,165	4,521	1,825	1,862	1,916	282,896.0	96,282.0	96,636.0	40,108.0	16,488.0	15,544.0	17,838.0	-	-		
		1	10	기정	140	24,228	9,293	8,177	3,059	1,287	1,092	1,320	242,280.0	92,930.0	81,770.0	30,590.0	12,870.0	10,920.0	13,200.0	-	-	
		2		9	기정	3	68	68	-	-	-	-	612.0	612.0	-	-	-	-	-	-	-	
변경		2	68	68	-	-	-	-	-	-	612.0	612.0	-	-	-	-	-	-	-	요기정점		
8		기정	17	2,956	119	1,469	427	195	225	521	23,648.0	952.0	11,752.0	3,416.0	1,560.0	1,800.0	4,168.0	-	-			
변경		19	2,936	119	1,469	427	195	225	531	23,728.0	952.0	11,752.0	3,416.0	1,560.0	1,800.0	4,248.0	-	-				
3		6	기정	17	2,528	298	519	981	343	322	15,168.0	1,788.0	3,114.0	5,886.0	2,058.0	1,932.0	390.0	-	-			
4		기정	3	277	-	-	54	-	223	-	1,108.0	-	-	216.0	-	892.0	-	-				
보행자 전용도로	계	기정	263	22,075	9,236	5,499	5,194	686	714	746	167,495.0	80,600.0	36,883.0	36,635.0	4,245.0	4,280.0	4,852.0	-	-			
		변경	264	22,065	9,236	5,499	5,194	686	714	736	167,445.0	80,600.0	36,883.0	36,635.0	4,245.0	4,280.0	4,802.0	-	-			
	대로	소계		기정	3	527	449	78	-	-	-	15,679.0	13,105.0	2,574.0	-	-	-	-	-			
		2	33	기정	2	313	235	78	-	-	-	10,329.0	7,755.0	2,574.0	-	-	-	-	-			
		3	25	기정	1	214	214	-	-	-	-	5,350.0	5,350.0	-	-	-	-	-				
	중로	소계		기정	10	952	505	75	372	-	-	15,879.0	8,604.0	1,200.0	6,075.0	-	-	-	-			
		1	20	기정	3	429	318	-	111	-	-	8,580.0	6,360.0	-	2,220.0	-	-	-				
		2	16	기정	3	229	-	75	154	-	-	3,664.0	-	1,200.0	2,464.0	-	-	-				
	3	13	기정	3	107	-	-	107	-	-	-	1,391.0	-	-	1,391.0	-	-	-				
		12		기정	1	187	187	-	-	-	-	2,244.0	2,244.0	-	-	-	-	-				
		소계		기정	250	20,586	8,282	5,346	4,822	686	714	746	135,937.0	58,891.0	33,109.0	30,560.0	4,245.0	4,280.0	4,852.0			
	변경		251	20,586	8,282	5,346	4,822	686	714	736	135,887.0	58,891.0	33,109.0	30,560.0	4,245.0	4,280.0	4,802.0	-				
1	10	기정	82	5,481	3,244	1,093	824	178	142	-	54,810.0	32,440.0	10,930.0	8,240.0	1,780.0	1,420.0	-					
	2		8	기정	17	618	60	176	179	-	203	4,944.0	480.0	1,408.0	1,432.0	-	-	1,624.0				
3	7	기정	7	349	123	-	226	-	-	-	2,443.0	861.0	-	1,582.0	-	-	-					
	6	기정	55	3,299	890	406	1,341	149	-	513	19,794.0	5,340.0	2,436.0	8,046.0	894.0	-	3,078.0					
	5.5	기정	2	191	191	-	-	-	-	-	1,050.0	1,050.0	-	-	-	-	-					
5	기정	77	10,264	3,624	3,651	2,252	135	572	30	51,320.0	18,120.0	18,255.0	11,260.0	675.0	2,860.0	150.0						
	변경	78	10,254	3,624	3,651	2,252	135	572	20	51,270.0	18,120.0	18,255.0	11,260.0	675.0	2,860.0	100.0						
4		기정	10	394	150	20	-	224	-	-	1,576.0	600.0	80.0	-	896.0	-	-					
차전거 전용도로	계	기정	70	11,168	3,898	3,345	3,274	264	356	31	55,599.0	19,490.0	16,484.0	16,370.0	1,320.0	1,780.0	155.0					
		변경	71	11,160	3,898	3,345	3,274	264	356	23	55,599.0	19,490.0	16,484.0	16,370.0	1,320.0	1,780.0	115.0					
	소로	소계		기정	70	11,168	3,898	3,345	3,274	264	356	31	55,599.0	19,490.0	16,484.0	16,370.0	1,320.0	1,780.0	155.0			
		변경		71	11,160	3,898	3,345	3,274	264	356	23	55,599.0	19,490.0	16,484.0	16,370.0	1,320.0	1,780.0	115.0				
	3	5	기정	68	10,927	3,898	3,104	3,274	264	356	31	54,635.0	19,490.0	15,320.0	16,370.0	1,320.0	1,780.0	155.0				
		변경	69	10,919	3,898	3,104	3,274	264	356	23	54,595.0	19,490.0	15,320.0	16,370.0	1,320.0	1,780.0	115.0					
	4		기정	2	241	-	241	-	-	-	-	964.0	-	964.0	-	-	-					
	기타	기정	-	-	-	-	-	-	-	-	-	163,643.4	57,566.1	40,291.0	51,574.9	3,588.6	4,254.8	6,368.0				
		변경	-	-	-	-	-	-	-	-	-	163,816.9	57,566.1	40,291.0	51,574.9	3,588.6	4,254.8	6,541.5				

주) 중복결정미포함 면적은 도로 상부의 공원 및 도로면적(도로 하부에 하천면적)을 제외한 면적임
 주) 기타 면적은 추가도로 및 도로 모퉁이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기정	-	125,997	39,565	36,100	35,997	3,502	6,093	4,740	-	-	-	-	-
					변경	-	125,989	39,565	36,100	35,997	3,502	6,093	4,732	-	-	-	-	-
기정	광로	한강	3	6	42	주간선도로	1,365	1,036	-	329	-	-	-	1호교통광장	윤양동북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광로3(42m)				기정	-	1,365	1,036	-	329	-	-	-	-	-	-	-	-
	변경				-	1,365	1,036	-	329	-	-	-	-	-	-	-	-	-
기정	광로	한강	3	2	40	주간선도로	410	409	1	-	-	-	-	장기동남측지구	장기지구남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광로	한강	3	4	40	주간선도로	253	203	-	50	-	-	-	장기지구서측지구	대한강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광로	한강	3	8	40	주간선도로	1,389	-	-	-	-	1,389	-	석포리서측지구	구래리북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광로3(40m)				기정	-	2,052	612	1	50	-	1,389	-	-	-	-	-	-
	변경				-	2,052	612	1	50	-	1,389	-	-	-	-	-	-	-
광로(일반도로) 계					기정	-	3,417	1,648	1	379	-	1,389	-	-	-	-	-	-
변경					-	3,417	1,648	1	379	-	1,389	-	-	-	-	-	-	-
기정	대로	한강	2	1	34	주간선도로	1,141	-	-	1,090	-	51	-	구래리남측지구	구래리북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3	34	주간선도로	581	194	-	387	-	-	-	장기동남측지구	1호교통광장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4	34	주간선도로	490	248	-	242	-	-	-	대한강2-3	장기지구동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6	34	주간선도로	640	505	-	135	-	-	-	장기지구북측지구	석포리동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8	34	주간선도로	1,831	-	684	1,147	-	-	-	석포리서측지구	대한강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대로	한강	2	11	34	주간선도로	133	133	-	-	-	-	중한강1-2	장기지구복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계	대로2(34m)					기정	-	4,816	1,080	684	3,001	-	51	-	-	-	-	-	-
						변경	-	4,816	1,080	684	3,001	-	51	-	-	-	-	-	-
기정	대로	한강	2	2	30	주간선도로	2,992	703	452	1,562	-	275	-	광한강3-4	구래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10	30	주간선도로	2,538	-	1,000	1,316	-	222	-	운양동동측지구계	운양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대로2(30m)					기정	-	5,530	703	1,452	2,878	-	497	-	-	-	-	-	-
						변경	-	5,530	703	1,452	2,878	-	497	-	-	-	-	-	-
기정	대로	한강	3	6	29.5	주간선도로	294	-	-	294	-	-	-	대한강2-2	대한강2-8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계	대로3(29.5m)					기정	-	294	-	-	294	-	-	-	-	-	-	-	-
						변경	-	294	-	-	294	-	-	-	-	-	-	-	-
기정	대로	한강	3	1	27	보조간선도로	56	-	56	-	-	-	-	대한강2-8	증한강1-3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3	4	27	주간선도로	337	337	-	-	-	-	-	운양동동측지구계	1호교통광장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3	5	27	보조간선도로	59	-	59	-	-	-	-	증한강1-30	증한강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대로3(27m)					기정	-	452	337	115	-	-	-	-	-	-	-	-	-
						변경	-	452	337	115	-	-	-	-	-	-	-	-	-
기정	대로	한강	3	2	26	보조간선도로	2,221	-	688	1,533	-	-	-	대한강2-2	대한강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3	3	26	보조간선도로	300	-	-	300	-	-	-	대한강2-8	대한강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대로	한강	3	7	26	보조간선도로	188	-	-	188	-	-	-	대한강2-2	구래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3-823 (13.10.24)	
계	대로3(26m)					기정	-	2,709	-	688	2,021	-	-	-	-	-	-	-	-
						변경	-	2,709	-	688	2,021	-	-	-	-	-	-	-	-
대로(일반도로) 계						기정	-	13,801	2,120	2,939	8,194	-	548	-	-	-	-	-	-
						변경	-	13,801	2,120	2,939	8,194	-	548	-	-	-	-	-	-
기정	중로	한강	1	2	24	주간선도로	468	395	-	-	-	73	-	광한강3-6	대한강2-1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4	24	주간선도로	2,479	-	2,479	-	-	-	-	광한강3-6	운양동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5	24	주간선도로	731	-	-	731	-	-	-	광한강3-4	대한강2-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7	24	주간선도로	438	-	-	438	-	-	-	대한강2-6	장기동복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중로1(24m)					기정	-	4,116	395	2,479	1,169	-	73	-	-	-	-	-	-
						변경	-	4,116	395	2,479	1,169	-	73	-	-	-	-	-	-
기정	중로	한강	1	1	23.5	주간선도로	662	-	-	662	-	-	-	대한강2-2	대한강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3	23.5	주간선도로	480	480	-	-	-	-	-	광한강3-8	대한강2-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중로1(23.5m)					기정	-	1,142	480	-	662	-	-	-	-	-	-	-	-
						변경	-	1,142	480	-	662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1	6	23	집산도로	1,468	1,468	-	-	-	-	-	대한강2-3	증한강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8	23	집산도로	76	76	-	-	-	-	-	대한강2-3	증한강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9	23	집산도로	406	406	-	-	-	-	-	대한강2-3	증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0	23	집산도로	749	749	-	-	-	-	-	증한강1-2	증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2	23	집산도로	573	383	-	190	-	-	-	광한강3-6	대한강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3	23	집산도로	175	-	175	-	-	-	-	광한강3-6	증한강1-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4	23	집산도로	28	-	28	-	-	-	-	증한강1-15	월드아파트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5	23	집산도로	2,631	-	753	1,694	184	-	-	증한강1-4	증한강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6	23	집산도로	3,065	418	2,647	-	-	-	-	증한강1-4	증한강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7	23	집산도로	814	-	-	814	-	-	-	증한강1-4	증한강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8	23	집산도로	222	-	222	-	-	-	-	증한강1-4	증한강1-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0	23	집산도로	1,132	1,058	-	-	-	74	-	대한강2-6	청송마을복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보09-248 (09.05.15)	
기정	중로	한강	1	21	23	집산도로	2,049	-	127	1,922	-	-	-	대한강2-2	대한강3-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3	23	집산도로	678	-	-	678	-	-	-	대한강2-2	대한강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4	23	집산도로	993	686	44	263	-	-	-	증한강1-1	대한강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5	23	집산도로	444	444	-	-	-	-	-	대한강3-2	증한강1-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6	23	집산도로	908	-	606	302	-	-	-	대한강2-8	대한강2-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7	23	집산도로	1,001	-	-	-	-	1,001	-	대한강2-1	대한강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8	23	집산도로	756	573	-	-	-	-	-	대한강2-8	대한강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계	중로1(23m)					기정	-	18,168	6,261	4,602	5,863	184	74	1,184	-	-	-	-	-
						변경	-	18,168	6,261	4,602	5,863	184	74	1,184	-	-	-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중로	한강	1	11	20	집산도로	561	561					대한강2-4	장기지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19	20	집산도로	574	574					대한강2-6	장기지구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9	20	국지도도로	81				81		중한강2-19	윤양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2-621 (12.09.19)		
기정	중로	한강	1	30	20	보조간선도로	191		191				대한강3-5	대한강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31	20	집산도로	350		350				대한강3-2	대한강3-1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1	32	20	보조간선도로	221				221		청송마을북측지구계	청송마을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한강	1	33	20	국지도도로	20			20			B2-1업무시설	중한강1-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한강	1	34	20	국지도도로	72					72	김포한강지구 서측지구계	중한강1-27	일반도로	-	-		
계	중로1(20m)					기정	-	2,070	1,135	541	20	-	302	72	-	-	-	-	-
						변경	-	2,070	1,135	541	20	-	302	72	-	-	-	-	-
기정	중로	한강	2	49	19	국지도도로	160					160		중한강2-23	1호문화시설	일반도로	-	-	
계	중로2(19m)					기정	-	160	-	-	-	-	160	-	-	-	-	-	-
						변경	-	160	-	-	-	-	-	160	-	-	-	-	-
기정	중로	한강	2	39	18	국지도도로	215	215					중한강2-10	중한강2-38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중로	한강	2	47	18	국지도도로	79	79					1호교통광장	중한강1-6	일반도로	-	국고12-621 (12.09.19)		
계	중로2(18m)					기정	-	294	294	-	-	-	-	-	-	-	-	-	-
						변경	-	294	294	-	-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2	48	17	국지도도로	282						282	광한강3-8	소한강1-247	일반도로	-	-	
계	중로2(17m)					기정	-	282	-	-	-	-	-	282	-	-	-	-	-
						변경	-	282	-	-	-	-	-	-	-	-	-	282	-
기정	중로	한강	2	1	16	국지도도로	155	155					중한강1-6	중한강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	16	국지도도로	155	155					중한강1-6	중한강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3	16	국지도도로	159			159			중한강2-1	중한강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4	16	국지도도로	339			339			대한강2-3	대한강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5	16	국지도도로	339	339					대한강2-4	중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6	16	국지도도로	220	220					중한강1-12	중한강1-1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7	16	국지도도로	327	327					광한강3-2	중한강1-1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8	16	국지도도로	114	114					1호교통광장	중한강1-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9	16	국지도도로	631	322				309	중한강1-2	대한강2-1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0	16	국지도도로	74	74					대한강2-11	중한강2-3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3	16	국지도도로	63			63			중한강1-4	중한강2-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4	16	국지도도로	457			457			중한강1-17	중한강1-1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5	16	국지도도로	222	87	135				중한강1-4	중한강1-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6	16	국지도도로	282		282				중한강1-16	중한강2-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7	16	국지도도로	282		282				중한강1-16	중한강2-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8	16	국지도도로	262		262				중한강1-16	중한강2-1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9	16	국지도도로	894	383	511				중한강1-16	중한강2-2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0	16	국지도도로	1,180		53	904		223	중한강1-16	윤양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1	16	국지도도로	329				329		광한강3-6	윤양동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2	16	국지도도로	145			145			광한강3-4	중한강2-2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3	16	국지도도로	218			218			장기지구서측지구계	중한강2-4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4	16	국지도도로	1,022		313	709			중한강1-21	중한강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5	16	국지도도로	184		184				중한강1-21	중한강2-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6	16	국지도도로	143		143				중한강1-21	중한강2-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7	16	국지도도로	632		632				중한강1-23	중한강1-2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8	16	국지도도로	453			453			대한강2-1	중한강1-2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29	16	국지도도로	267			267			대한강2-8	7호주계공원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38	16	국지도도로	122			122			중한강2-39	중한강1-10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중로	한강	2	40	16	국지도도로	42		42				대한강2-8	중한강2-41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2	41	16	국지도도로	1,005		1,005				대한강3-1	대한강3-5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2	42	16	국지도도로	46		46				대한강3-2	중한강2-41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2	43	16	국지도도로	149		149				중한강1-31	대한강3-5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2	45	16	국지도도로	1,140			946	194		중한강1-15	중한강1-17	일반도로	-	국고12-621 (12.09.1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중로2(16m)					기정	-	12,052	2,176	4,039	4,782	523	532	-	-	-	-	-	-
						변경	-	12,052	2,176	4,039	4,782	523	532	-	-	-	-	-	-
기정	중로	한강	2	11	15	국지도로	150	150						중한강2-9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12	15	국지도로	114	114						중한강2-39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44	15	국지도로	152	152						중한강1-20	Ac-09(공동주력)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46	15	국지도로	13		13					소한강2-9	김포한강지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50	15	국지도로	83					83		중한강1-17	대1	일반도로	-	-	
계	중로2(15m)					기정	-	512	416	13	-	-	83	-	-	-	-	-	-
						변경	-	512	416	13	-	-	83	-	-	-	-	-	-
기정	중로	한강	3	11	14	국지도로	116			116				중한강1-20	1호전기공급설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9	14	국지도로	28	28						중한강1-21	소한강1-2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5	14	국지도로	28	28						대한강3-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6	14	국지도로	28	28						대한강3-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8	14	국지도로	18	18						중한강1-10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9	14	국지도로	28		28					중한강1-15	소한강1-14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30	14	국지도로	167		167					중한강1-16	김포한강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계	중로3(14m)					기정	-	413	102	195	116	-	-	-	-	-	-	-	-
						변경	-	413	102	195	116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3	1	13	국지도로	225			225				대한강2-3	중한강1-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	13	국지도로	140			140				중한강1-9	중한강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3	13	국지도로	184			184				중한강1-9	중한강1-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9	13	국지도로	183		183					청송마을남측지구계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20	13	국지도로	147		147					중한강2-41	중한강3-21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3	21	13	국지도로	181		181					중한강2-41	중한강2-41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3	22	13	국지도로	186		186					중한강2-41	중한강1-30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3	23	13	국지도로	162		162					중한강1-31	중한강2-43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3	24	13	국지도로	306			306				대한강2-8	대한강3-2	일반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중로	한강	3	31	13	국지도로	155			155				대한강2-3	대한강2-3	일반도로	-	국고12-621 (12.09.19)	
계	중로3(13m)					기정	-	1,869	-	859	1,010	-	-	-	-	-	-	-	-
						변경	-	1,869	-	859	1,010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3	4	12	국지도로	431	431						평한강3-2	장기지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5	12	국지도로	324	324						중한강1-11	중한강1-1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6	12	국지도로	255	255						중한강1-15	월드아파트동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7	12	국지도로	124		124					중한강1-16	중한강3-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8	12	국지도로	1,028		1,028					중한강1-16	중한강1-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2	12	국지도로	613	83	271	259				중한강1-21	마산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3	12	국지도로	554			554				중한강1-21	중한강3-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4	12	국지도로	197	197						중한강1-26	중한강1-2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5	12	국지도로	336	336						중한강1-28	중한강1-2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6	12	국지도로	278					278		중한강1-27	중한강1-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17	12	국지도로	241					241		중한강1-27	중한강1-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32	12	국지도로	20				20			중한강1-21	De-05-1	일반도로	-	국고13-623 (13.10.24)	
계	중로3(12m)					기정	-	4,401	1,626	1,423	813	20	-	519	-	-	-	-	-
						변경	-	4,401	1,626	1,423	813	20	-	519	-	-	-	-	-
중로(일반도로) 계						기정	-	45,479	12,885	14,151	14,435	727	1,224	2,057	-	-	-	-	-
						변경	-	45,479	12,885	14,151	14,435	727	1,224	2,057	-	-	-	-	-
기정	소로	한강	1	1	10	국지도로	248	248						중한강3-15	중한강3-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	10	국지도로	142	142						중한강3-15	소한강1-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	10	국지도로	153	153						중한강3-15	중한강3-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	10	국지도로	149		149					중한강1-23	중한강2-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5	10	국지도로	240		240					중한강2-27	소한강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6	10	국지도로	52		52					중한강2-27	8호공공공지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7	10	국지도로	75		75					소한강1-5	소한강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1	8	10	국지도로	122		122					중한강2-27	소한강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9	10	국지도로	75		75					소한강1-10	소한강1-4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	10	국지도로	84		84					중한강2-27	소한강1-3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	10	국지도로	840	840						중한강1-24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	10	국지도로	82	82						소한강1-1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	10	국지도로	82	82						소한강1-1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5	10	국지도로	114	114						소한강1-12	소한강1-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6	10	국지도로	105	105						소한강1-17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7	10	국지도로	82	82						소한강1-1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8	10	국지도로	227	227						소한강1-1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	10	국지도로	28	28						대한강3-2	소한강1-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	10	국지도로	447			41		406		대한강3-2	소한강1-25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	10	국지도로	553			553				중한강1-21	중한강3-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	10	국지도로	403	403						소한강1-22	소한강1-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4	10	국지도로	109	109						소한강1-22	소한강1-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6	10	국지도로	119	119						소한강1-23	소한강1-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7	10	국지도로	194	194						소한강1-28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8	10	국지도로	174	174						중한강1-21	소한강1-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9	10	국지도로	213	213						소한강1-31	소한강1-2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0	10	국지도로	156	156						소한강1-29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1	10	국지도로	270			270				중한강3-13	중한강3-1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2	10	국지도로	152			152				중한강3-13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3	10	국지도로	60			60				소한강1-31	소한강1-3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4	10	국지도로	80			80				소한강1-35	소한강1-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5	10	국지도로	140			140				소한강1-32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6	10	국지도로	223			219	4			중한강3-13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7	10	국지도로	213			213				소한강1-40	소한강1-3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8	10	국지도로	60			60				소한강1-37	소한강1-3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9	10	국지도로	36			36				소한강1-37	소한강1-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0	10	국지도로	181			181				소한강1-36	소한강1-3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1	10	국지도로	199				199			소한강1-42	중한강3-1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2	10	국지도로	235				235			중한강3-12	소한강1-4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3	10	국지도로	46			46				소한강1-4	소한강1-7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44	10	국지도로	78			78				소한강1-43	소한강1-4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45	10	국지도로	140			140				소한강1-10	중한강2-27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01	10	국지도로	22	22						소한강1-102	소한강1-10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2	10	국지도로	609	540			69			대한강2-6	소한강1-10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3	10	국지도로	52	52						소한강1-104	김포한강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4	10	국지도로	202	202						대한강2-6	소한강1-10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5	10	국지도로	10	10						소한강1-104	소한강3-1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6	10	국지도로	69	69						중한강1-20	청송마을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7	10	국지도로	18	18						중한강2-9	소한강1-10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8	10	국지도로	145	145						소한강1-109	소한강1-10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9	10	국지도로	609	609						중한강2-9	소한강1-10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2	10	국지도로	170	170						중한강2-11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4	10	국지도로	325	325						소한강1-249	소한강1-24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6	10	국지도로	103	103						소한강1-151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7	10	국지도로	138	138						중한강2-12	소한강1-1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8	10	국지도로	55	55						중한강2-39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1	10	국지도로	475	475						소한강1-127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5	10	국지도로	18	18						중한강1-10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6	10	국지도로	121	121						소한강1-127	소한강1-1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7	10	국지도로	457	457						중한강1-10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1	128	10	국지도로	92	92					소한강1-129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9	10	국지도로	78	78					소한강1-121	소한강1-12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0	10	국지도로	121	121					소한강1-121	소한강1-12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1	10	국지도로	215	215					중한강3-5	소한강1-13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3	10	국지도로	70	70					중한강3-5	소한강1-13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4	10	국지도로	290	290					중한강3-5	장기지구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5	10	국지도로	70	70					중한강3-5	소한강1-13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6	10	국지도로	65	65					소한강1-134	소한강1-13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7	10	국지도로	66	66					소한강1-138	소한강1-14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8	10	국지도로	83	83					중한강3-5	소한강1-14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9	10	국지도로	83	83					중한강3-5	소한강1-14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0	10	국지도로	69	69					소한강1-141	소한강1-13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1	10	국지도로	267	267					중한강3-5	중한강3-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2	10	국지도로	241		241				중한강1-15	중한강1-1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3	10	국지도로	78		78				소한강1-142	소한강1-14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5	10	국지도로	8		8				소한강1-147	소한강3-1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6	10	국지도로	70		70				소한강1-147	소한강1-14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7	10	국지도로	479		479				중한강1-15	소한강1-147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8	10	국지도로	501		45	456			소한강1-147	소한강1-14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9	10	국지도로	18	18					중한강2-9	소한강1-109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0	10	국지도로	6	6					소한강1-114	소한강1-139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1	10	국지도로	81	81					중한강2-39	장기지구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2	10	국지도로	76	76					소한강1-151	소한강1-118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3	10	국지도로	76	76					중한강2-12	소한강1-117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4	10	국지도로	6	6					소한강1-116	소한강1-140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55	10	국지도로	6	6					소한강1-130	소한강3-157	일반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1	10	국지도로	207				207		중한강2-19	중한강2-1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2	10	국지도로	761					518	243	중한강1-17	중한강2-4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3	10	국지도로	687							소한강1-202	소한강1-20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4	10	국지도로	46							소한강1-202	소한강1-203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5	10	국지도로	418							중한강2-45	소한강1-20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6	10	국지도로	67							67	중한강2-45	소한강1-20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7	10	국지도로	252								252	중한강2-45	중한강2-4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8	10	국지도로	119									119	중한강2-45	소한강1-20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0	10	국지도로	290										290	중한강2-45	중한강2-4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4	10	국지도로	312			312								중한강3-8	중한강3-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5	10	국지도로	198			198				소한강1-214	소한강1-21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6	10	국지도로	234			234				중한강3-30	중한강3-3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7	10	국지도로	85			85				소한강1-216	소한강1-2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8	10	국지도로	319			319				중한강3-7	소한강1-225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9	10	국지도로	126			126				소한강1-225	중한강3-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0	10	국지도로	511			511				중한강3-8	소한강1-224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1	10	국지도로	64			64				중한강3-8	소한강1-219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2	10	국지도로	74			74				소한강1-223	소한강1-22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3	10	국지도로	72			72				중한강3-8	소한강1-22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4	10	국지도로	72			72				중한강3-8	소한강1-220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5	10	국지도로	112			112				중한강3-8	중한강1-16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6	10	국지도로	177			177				소한강1-218	소한강1-2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7	10	국지도로	110			110				소한강1-218	소한강1-21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8	10	국지도로	22			22				소한강1-218	소한강1-222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9	10	국지도로	173			173				중한강3-7	소한강1-2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0	10	국지도로	179			179				소한강1-229	소한강1-231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1	10	국지도로	520			520				소한강1-229	중한강3-8	일반도로	-	건고07-452 (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1	232	10	국지도로	544			544			중한강2-45	중한강2-45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3	10	국지도로	192			192			소한강1-232	소한강1-23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4	10	국지도로	79			79			소한강1-233	소한강1-23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6	10	국지도로	209			209			중한강1-15	대한강3-4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7	10	국지도로	234			234			소한강1-203	소한강1-203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38	10	국지도로	6		6				소한강1-214	소한강1-206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39	10	국지도로	7		7				소한강1-215	소한강1-207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40	10	국지도로	6		6				소한강1-220	소한강1-211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41	10	국지도로	78		78				소한강1-231	소한강1-231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42	10	국지도로	107		107				소한강1-230	소한강1-231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43	10	국지도로	81		81				소한강1-242	소한강1-230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44	10	국지도로	39	39					중한강1-7	소한강1-102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1	245	10	국지도로	26			26			소한강1-203	중한강2-45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1	246	10	국지도로	586		586				중한강1-16	중한강1-16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1	247	10	국지도로	293					293	대한강2-8	중한강2-48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1	248	10	국지도로	94			94			중한강1-20	김포한강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1	249	10	국지도로	416	416					중한강2-39	중한강2-39	일반도로	-	국고(11-966)(12.01.04)		
기정	소로	한강	1	250	10	국지도로	24			24			중한강1-10	16호공공공지	일반도로	-	국고12-621(12.09.19)		
기정	소로	한강	1	251	10	국지도로	10					10	중한강1-17	중한강1-17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1	252	10	국지도로	36			36			소한강1-202	소한강1-203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1	253	10	국지도로	193					193	소한강1-202	소한강1-202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1	254	10	국지도로	36			36			소한강1-202	소한강1-203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1	255	10	국지도로	30			30			중한강1-17	소한강1-237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1	256	10	국지도로	442					442	대한강3-2	소한강1-256	일반도로	-	국고13-859(13.12.30)		
기정	소로	한강	1	257	10	국지도로	27					27	소한강1-256	소한강1-256	일반도로	-	국고13-859(13.12.30)		
기정	소로	한강	1	258	10	국지도로	17			17			B-3업무시설	중한강1-1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한강	1	259	10	국지도로	15			15			B-4업무시설	중한강1-17	일반도로	-	-		
계	소로1(10m)				기정	-	24,228	9,293	8,177	3,059	1,287	1,092	1,320	-	-	-	-	-	-
					변경	-	24,228	9,293	8,177	3,059	1,287	1,092	1,320	-	-	-	-	-	-
기정	소로	한강	2	1	9	국지도로	49	49					중한강2-11	소한강1-11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3	9	국지도로	19	19					경기지구남측지구계	김포한강지구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계	소로2(9m)				기정	-	68	68	-	-	-	-	-	-	-	-	-	-	-
					변경	-	68	68	-	-	-	-	-	-	-	-	-	-	-
기정	소로	한강	2	4	8	국지도로	81					81	중한강1-27	김포한강지구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5	8	국지도로	57	57					소한강1-1	소한강1-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6	8	국지도로	51	51					소한강1-1	소한강1-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9	8	국지도로	638		638				중한강1-21	김포한강지구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14	8	국지도로	91		91				소한강1-146	소한강1-147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17	8	국지도로	20			20			소한강1-233	소한강3-7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19	8	국지도로	16			16			소한강1-232	소한강3-6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20	8	국지도로	46		46				소한강2-22	소한강1-246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2	21	8	국지도로	92		92				소한강2-22	소한강1-246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2	22	8	국지도로	504		504				소한강1-246	소한강1-246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2	23	8	국지도로	98		98				소한강2-22	소한강2-21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2	24	8	국지도로	76					76	중한강1-27	김포한강지구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2	25	8	국지도로	320				225	95	광한강3-8	중한강1-28	일반도로	-	국고(11-966)(12.01.04)		
기정	소로	한강	2	26	8	국지도로	11	11					중한강1-5	김포한강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국고12-621(12.09.19)		
기정	소로	한강	2	28	8	국지도로	159			159			중한강2-21	김포한강지구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한강	2	29	8	국지도로	301			301			대한강3-7	대한강2-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한강	2	30	8	국지도로	126			126			대한강2-2	대한강2-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한강	2	31	8	국지도로	269					269	대한강2-1	김포한강지구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한강	2	32	8	국지도로	10					10	소한강1-210	CA-15-1(문화예술용지)	일반도로	-	-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소로2(8m)					기정	-	2,956	119	1,469	427	195	225	521	-	-	-	-	-	-
	소로2(8m)					변경	-	2,966	119	1,469	427	195	225	531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2	6	국지도로	65						65	중한강1-27	김포한강지구서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	6	국지도로	182	182						중한강1-5	김포한강지구북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4	6	국지도로	96	96						중한강3-4	김포한강지구남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	6	국지도로	474		474					중한강2-4	Ac-14(공동주택)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	6	국지도로	62			62				소한강2-19	소한강3-6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	6	국지도로	107				107			소한강2-17	소한강2-17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	6	국지도로	49				49			소한강1-232	소한강1-23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	6	국지도로	63				63			소한강1-233	소한강1-233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	6	국지도로	62				62			소한강1-232	소한강1-232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	6	국지도로	347			347				중한강2-23	김포한강지구남측지구	일반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7	6	국지도로	69			69				중한강1-21	김포한강지구남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8	6	국지도로	443		299			144		중한강2-21	소한강1-201	일반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3	19	6	국지도로	220		220					중한강1-16	김포한강지구동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11-966)(12.01.04)		
기정	소로	한강	3	20	6	국지도로	20	20						광한강3-6	청송마을동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12-621(12.09.19)		
기정	소로	한강	3	23	6	국지도로	39					39		중한강2-20	윤양동북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25	6	국지도로	91			91				중한강3-30	공공공지6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한강	3	27	6	국지도로	139					139		중한강2-9	청송마을동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12-621(12.09.19)		
계	소로3(6m)					기정	-	2,528	298	519	981	343	322	65	-	-	-	-	-	-
	소로3(6m)					변경	-	2,528	298	519	981	343	322	65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22	4	국지도로	34			34				소한강3-11	김포한강지구남측지구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24	4	국지도로	20			20				소한강1-203	단독주택Dd-14	일반도로	-	국고13-623(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26	4	국지도로	223					223		중한강2-20	소한강3-23	일반도로	-			
계	소로3(4m)					기정	-	277	-	-	54	-	223	-	-	-	-	-	-	-
	소로3(4m)					변경	-	277	-	-	54	-	223	-	-	-	-	-	-	-
소로(일반도로) 계						기정	-	30,057	9,778	10,165	4,521	1,825	1,862	1,906	-	-	-	-	-	
소로(일반도로) 계						변경	-	30,067	9,778	10,165	4,521	1,825	1,862	1,916	-	-	-	-	-	
기정	대로	한강	2	1	33	특수도로	235	235						광한강3-6	중한강1-10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대로	한강	2	2	33	특수도로	78		78					광한강3-6	중한강1-15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30)		
계	대로2(33m)					기정	-	313	235	78	-	-	-	-	-	-	-	-	-	-
	대로2(33m)					변경	-	313	235	78	-	-	-	-	-	-	-	-	-	-
기정	대로	한강	3	1	25	특수도로	214	214						대한강2-2	중한강2-24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계	대로3(25m)					기정	-	214	214	-	-	-	-	-	-	-	-	-	-	-
	대로3(25m)					변경	-	214	214	-	-	-	-	-	-	-	-	-	-	-
대로(보행자 전용도로) 계						기정	-	527	449	78	-	-	-	-	-	-	-	-	-	
대로(보행자 전용도로) 계						변경	-	527	449	78	-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1	1	20	특수도로	100	100						중한강1-2	Ac-14(공동주택)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2	20	특수도로	218	218						중한강1-11	중한강2-4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중로	한강	1	3	20	특수도로	111		111					중한강3-3	중한강1-15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계	중로1(20m)					기정	-	429	318	-	111	-	-	-	-	-	-	-	-	-
	중로1(20m)					변경	-	429	318	-	111	-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2	4	16	특수도로	75		75					중한강1-4	중한강2-16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5	16	특수도로	113			113				중한강1-4	중한강2-14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중로	한강	2	6	16	특수도로	41			41				중한강2-14	23호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계	중로2(16m)					기정	-	229	-	75	154	-	-	-	-	-	-	-	-	
	중로2(16m)					변경	-	229	-	75	154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3	3	13	특수도로	50			50				대한강3-4	중한강1-3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중로	한강	3	4	13	특수도로	33			33				중한강3-1	19호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2-621(12.09.19)		
기정	중로	한강	3	5	13	특수도로	24			24				중한강3-31	19호공공공지	보행자 전용도로	-	국고12-621(12.09.19)		
계	중로3(13m)					기정	-	107	-	-	107	-	-	-	-	-	-	-	-	
	중로3(13m)					변경	-	107	-	-	107	-	-	-	-	-	-	-	-	
기정	중로	한강	3	2	12	특수도로	187	187						대한강2-2	중한강1-24	보행자 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중로3(12m)					기정	-	187	187	-	-	-	-	-	-	-	-	-	-	
						변경	-	187	187	-	-	-	-	-	-	-	-	-	-	-
중로(보행자도로) 계							기정	-	952	505	75	372	-	-	-	-	-	-	-	-
							변경	-	952	505	75	372	-	-	-	-	-	-	-	-
기정	소로	한강	1	1	10	특수도로	48		48					1호어린이공원	중한강1-26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	10	특수도로	244		244					1호어린이공원	5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	10	특수도로	234	234						중한강1-3	중한강1-26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4	10	특수도로	230	230						중한강1-3	중한강1-28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5	10	특수도로	34	34						중한강1-28	소한강1-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6	10	특수도로	59	59						소한강1-1	소한강1-2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7	10	특수도로	10		10					중한강2-27	소한강1-43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9	10	특수도로	82		82					13호광장	중한강2-27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	10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8	8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	10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10	8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	10	특수도로	278	278						중한강1-25	17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	10	특수도로	30	30						20호소공원	소한강1-12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4	10	특수도로	242	242						대한강2-2	중한강2-24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5	10	특수도로	310			310				중한강2-24	중한강1-2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6	10	특수도로	143			143				2호주세공원	1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8	10	특수도로	59	59						소한강1-22	12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9	10	특수도로	149	149						소한강1-22	소한강1-2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0	10	특수도로	26	26						중한강1-21	소한강1-23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1	10	특수도로	56	56						소한강1-23	소한강1-22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2	10	특수도로	121	121						소한강1-21	소한강1-26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3	10	특수도로	53	53						소한강1-26	소한강1-23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6	10	특수도로	72	72						3호소공원	소한강1-27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7	10	특수도로	100	100						소한강1-30	소한강1-29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8	10	특수도로	82		82					소한강1-31	7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29	10	특수도로	18		18					7호어린이공원	소한강1-40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0	10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40	중한강3-13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2	10	특수도로	72			72				4호어린이공원	소한강1-2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3	10	특수도로	8		8					소한강1-10	2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34	10	특수도로	36	36						소한강1-12	소한강1-1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35	10	특수도로	36	36						소한강1-12	소한강1-1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36	10	특수도로	18	18						중한강3-13	소한강1-2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02	10	특수도로	327	327						중한강1-19	4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3	10	특수도로	326	326						중한강1-20	중한강2-44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09	10	특수도로	36	36						18호소공원	소한강1-134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0	10	특수도로	84	84						소한강1-141	중한강3-5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3	10	특수도로	88	88						56호광장	소한강1-12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4	10	특수도로	29	29						평한강3-6	소한강1-127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5	10	특수도로	78	78						소한강1-127	소한강1-121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16	10	특수도로	42	42						소한강1-121	중한강1-10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2	10	특수도로	90		90					10호어린이공원	중한강1-16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3	10	특수도로	43			43				소한강3-2	소한강1-148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8	10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143	중한강1-15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29	10	특수도로	29		29					평한강3-6	소한강1-142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1	130	10	특수도로	108	108						중한강1-1	소한강3-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1	10	특수도로	126	126						대한강2-3	중한강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2	10	특수도로	18	18						53호광장	소한강1-10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3	10	특수도로	18	18						중한강2-9	소한강1-10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4	10	특수도로	32	32						소한강1-109	소한강1-10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5	10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109	5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1	136	10	특수도로	18	18					51호광장	소한강1-10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7	10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114	5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8	10	특수도로	29	29					소한강1-249	소한강1-11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39	10	특수도로	8	8					소한강1-150	5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140	10	특수도로	8	8					소한강1-154	8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1	10	특수도로	36		36				소한강1-202	소한강1-20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2	10	특수도로	40		40				소한강1-203	소한강1-23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3	10	특수도로	40		40				소한강1-202	소한강1-20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6	10	특수도로	22		22				소한강1-238	증한강1-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7	10	특수도로	11		11				증한강3-8	소한강1-23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8	10	특수도로	29		29				소한강1-214	증한강1-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09	10	특수도로	42		42				소한강1-215	소한강1-21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0	10	특수도로	105		105				소한강3-263	22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1	10	특수도로	11		11				9호근린공원	소한강1-24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2	10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26	소한강1-22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3	10	특수도로	8		8				소한강1-226	76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4	10	특수도로	102		102				소한강1-226	소한강1-22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5	10	특수도로	32		32				증한강1-16	소한강1-21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6	10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32	소한강3-11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7	10	특수도로	29			29			소한강3-209	소한강1-23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8	10	특수도로	25			25			17호소공원	소한강1-23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19	10	특수도로	70			70			증한강2-45	소한강1-23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0	10	특수도로	33		33				증한강1-15	소한강1-23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2	10	특수도로	24		24				증한강1-16	소한강1-22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3	10	특수도로	37			37			대한강2-3	증한강3-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4	10	특수도로	30			30			58호일변광장	증한강2-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5	10	특수도로	22			22			증한강3-1	공공공지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6	10	특수도로	36			36			소한강1-202	소한강1-20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7	10	특수도로	18			18			5호주세공원	소한강1-20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8	10	특수도로	37			37			대한강3-2	소한강1-25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29	10	특수도로	32			32			소한강3-227	소한강1-25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30	10	특수도로	27			27			33호광장	소한강1-25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1	231	10	특수도로	46			46			소한강1-256	12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계	소로1(10m)					기정	-	5,481	3,244	1,093	824	178	142	-	-	-	-	-	-
						변경	-	5,481	3,244	1,093	824	178	142	-	-	-	-	-	-
기정	소로	한강	2	2	8	특수도로	44					44	증한강1-27	증한강3-1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3	8	특수도로	59					59	대한강2-1	증한강3-1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4	8	특수도로	44					44	증한강1-27	증한강3-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5	8	특수도로	56					56	대한강2-1	증한강3-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6	8	특수도로	24	24					증한강1-21	소한강1-2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7	8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3	소한강1-1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8	8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4	소한강1-1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9	8	특수도로	18		18				증한강3-13	소한강1-3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0	8	특수도로	30		30				소한강1-41	소한강1-4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1	8	특수도로	28		28				증한강3-12	소한강1-4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2	8	특수도로	84		84				소한강1-220	소한강1-22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3	8	특수도로	18		18				증한강3-8	소한강1-22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4	8	특수도로	28		28				16호공공공지	증한강2-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5	8	특수도로	22		22				증한강3-31	16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6	8	특수도로	36		36				대한강2-3	증한강3-3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7	8	특수도로	35		35				증한강1-9	6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2	18	8	특수도로	56		56				대한강2-6	증한강3-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변경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소로2(8m)						기정	-	618	60	176	179	-	-	203	-	-	-	-	-	-	-
							변경	-	618	60	176	179	-	-	203	-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1	7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148	5호주세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	7	특수도로	155			155					소한강1-148	소한강1-14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23	7	특수도로	95	95							중한강1-19	4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61	7	특수도로	28	28							대한강3-2	소한강1-1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62	7	특수도로	17			17					소한강1-208	중한강2-4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63	7	특수도로	18			18					5호주세공원	소한강1-20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75	7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148	5호주세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859)	(13.12.30)		
계	소로3(7m)						기정	-	349	123	-	226	-	-	-	-	-	-	-	-	-	-
							변경	-	349	123	-	226	-	-	-	-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3	6	특수도로	22		22						17호광장	소한강1-4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4	6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12	28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	6	특수도로	20	20							29호광장	소한강1-1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	6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23	37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	6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27	36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	6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29	3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	6	특수도로	28		28						중한강3-12	소한강1-3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	6	특수도로	39		39						소한강1-36	소한강1-3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	6	특수도로	113	113							소한강1-244	98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2	6	특수도로	60	60							49호광장	소한강1-24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3	6	특수도로	137	137							46호광장	49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4	6	특수도로	181		181						48호광장	5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5	6	특수도로	161		161						50호광장	16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6	6	특수도로	110	110							15호공공공지	4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7	6	특수도로	515		515						44호광장	47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8	6	특수도로	172		172						41호광장	4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	6	특수도로	78					78			소한강1-206	소한강1-20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	6	특수도로	139					139			소한강1-205	소한강1-20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	6	특수도로	110			110					소한강1-202	소한강1-20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	6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02	5호주세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7	6	특수도로	105		105						소한강1-204	소한강1-20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8	6	특수도로	67					67			소한강1-207	7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9	6	특수도로	66					66			소한강1-207	7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0	6	특수도로	60					60			10호소공원	소한강1-21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1	6	특수도로	83					83			소한강1-210	10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2	6	특수도로	20					20			10호소공원	소한강1-21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3	6	특수도로	28		28						중한강1-16	소한강1-24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5	6	특수도로	18		18						24호공공공지	소한강1-22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6	6	특수도로	65					65			소한강1-233	소한강1-23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7	6	특수도로	68					68			소한강1-233	17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8	6	특수도로	20		20						소한강1-217	중한강3-3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39	6	특수도로	44		44						소한강1-216	소한강1-21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40	6	특수도로	28		28						중한강1-16	소한강1-21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41	6	특수도로	18		18						소한강1-214	소한강1-21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0	6	특수도로	16				16				소한강3-10	소한강3-11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21	6	특수도로	30		30						소한강2-14	소한강1-14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24	6	특수도로	23	23							7호공공공지	소한강1-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25	6	특수도로	48		48						중한강2-29	7호주세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26	6	특수도로	36	36	-	-	-	-	-		소한강1-12	소한강1-13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27	6	특수도로	36	36	-	-	-	-	-		소한강1-13	소한강1-1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28	6	특수도로	18	18	-	-	-	-	-		49호광장	소한강1-10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29	6	특수도로	17	17	-	-	-	-	-		소한강1-117	장기지구복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인(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3	130	6	특수도로	46	46	-	-	-	-	소한강1-138	소한강1-14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1	6	특수도로	18	18	-	-	-	-	소한강1-110	소한강1-13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2	6	특수도로	18	18	-	-	-	-	소한강1-139	소한강1-11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3	6	특수도로	48	48	-	-	-	-	소한강1-141	소한강1-13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4	6	특수도로	36	36	-	-	-	-	소한강1-127	소한강1-12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5	6	특수도로	42	-	42	-	-	-	소한강1-147	85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6	6	특수도로	17	-	-	17	-	-	소한강3-2	소한강1-148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7	6	특수도로	14	-	-	14	-	-	소한강1-148	소한강3-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38	6	특수도로	18	-	18	-	-	-	9호근린공원	소한강1-21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59	6	특수도로	28	28	-	-	-	-	중한강1-21	소한강1-29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60	6	특수도로	46	46	-	-	-	-	소한강1-29	3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64	6	특수도로	28	-	28	-	-	-	중한강1-15	소한강1-147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278	6	특수도로	43	-	43	-	-	-	소한강2-18	청송마을남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2-621(12.09.19)		
계	소로3(6m)				기정	-	3,299	890	406	1,341	149	-	513	-	-	-	-	-	
					변경	-	3,299	890	406	1,341	149	-	513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139	5.5	특수도로	108	108	-	-	-	-	소한강1-133	소한강1-13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40	5.5	특수도로	83	83	-	-	-	-	소한강1-134	소한강1-13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계	소로3(5.5m)				기정	-	191	191	-	-	-	-	-	-	-	-	-	-	
					변경	-	191	191	-	-	-	-	-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51	5	특수도로	154	154	-	-	-	-	1호광장	광한강3-8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2	5	특수도로	134	134	-	-	-	-	소한강1-4	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3	5	특수도로	201	201	-	-	-	-	2호광장	광한강3-8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4	5	특수도로	88	88	-	-	-	-	소한강1-3	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5	5	특수도로	133	133	-	-	-	-	3호광장	소한강1-4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6	5	특수도로	133	133	-	-	-	-	4호광장	소한강1-3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7	5	특수도로	221	-	221	-	-	-	7호광장	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8	5	특수도로	221	-	-	221	-	-	8호광장	6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59	5	특수도로	287	-	287	-	-	-	11호광장	9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0	5	특수도로	358	358	-	-	-	-	12호광장	1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1	5	특수도로	91	-	91	-	-	-	13호광장	1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2	5	특수도로	105	105	-	-	-	-	14호광장	1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3	5	특수도로	160	-	160	-	-	-	22호광장	1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4	5	특수도로	121	121	-	-	-	-	23호광장	1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5	5	특수도로	260	-	-	260	-	-	16호광장	1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6	5	특수도로	167	-	-	167	-	-	18호광장	1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7	5	특수도로	98	-	-	98	-	-	19호광장	2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8	5	특수도로	83	-	83	-	-	-	17호광장	20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69	5	특수도로	110	-	-	110	-	-	21호광장	4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0	5	특수도로	401	401	-	-	-	-	대한강3-1	4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1	5	특수도로	231	231	-	-	-	-	23호광장	2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2	5	특수도로	109	109	-	-	-	-	24호광장	중한강3-2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3	5	특수도로	127	127	-	-	-	-	대한강3-1	2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4	5	특수도로	311	311	-	-	-	-	중한강3-2	5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5	5	특수도로	130	-	130	-	-	-	소한강1-14	27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6	5	특수도로	88	-	-	88	-	-	29호광장	5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7	5	특수도로	116	-	-	116	-	-	30호광장	소한강1-229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8	5	특수도로	75	-	-	75	-	-	33호광장	12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79	5	특수도로	241	-	-	-	-	241	39호광장	3호주세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0	5	특수도로	112	-	-	112	-	-	42호광장	39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3	5	특수도로	79	79	-	-	-	-	51호광장	5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4	5	특수도로	92	92	-	-	-	-	53호광장	16호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5	5	특수도로	115	115	-	-	-	-	52호광장	5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6	5	특수도로	120	120	-	-	-	-	83호광장	8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인(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3	88	5	특수도로	118	118	-	-	-	-	84호광장	8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89	5	특수도로	135	-	135	-	-	-	85호광장	87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0	5	특수도로	135	-	135	-	-	-	86호광장	88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1	5	특수도로	44	-	-	-	-	44	5호주계공원	6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2	5	특수도로	70	-	-	-	-	70	65호광장	89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3	5	특수도로	418	-	418	-	-	-	64호광장	9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4	5	특수도로	196	-	-	196	-	-	90호광장	9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5	5	특수도로	81	-	81	-	-	-	66호광장	91호일반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6	5	특수도로	79	-	-	79	-	-	68호광장	92호일반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7	5	특수도로	63	-	63	-	-	-	67호광장	중한강2-4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8	5	특수도로	63	-	-	63	-	-	69호광장	중한강2-5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99	5	특수도로	247	-	247	-	-	-	93호광장	중한강2-4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0	5	특수도로	70	-	-	70	-	-	업무용지	중한강2-5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1	5	특수도로	111	-	-	111	-	-	94호광장	업무용지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2	5	특수도로	224	-	224	-	-	-	71호광장	9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3	5	특수도로	168	-	-	168	-	-	72호광장	9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4	5	특수도로	38	-	38	-	-	-	96호광장	71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5	5	특수도로	206	-	206	-	-	-	소한강1-210	97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6	5	특수도로	146	-	-	146	-	-	16호어린이공원	15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7	5	특수도로	191	-	191	-	-	-	74호광장	소한강1-210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08	5	특수도로	30	-	-	-	-	30	10호근린공원	7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변경	소로	한강	3	108	5	특수도로	10	-	-	-	-	10	소한강2-32	75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0	5	특수도로	385	-	385	-	-	-	중한강1-16	74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1	5	특수도로	135	-	-	-	135	-	소한강1-217	10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2	5	특수도로	124	-	-	-	-	124	중한강1-15	소한강1-217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3	5	특수도로	308	308	-	-	-	-	1호교통광장	중한강1-9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22	5	특수도로	25	-	25	-	-	-	중한강1-15	소한강1-147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41	5	특수도로	158	158	-	-	-	-	25호광장	소한강1-1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1)		
기정	소로	한강	3	143	5	특수도로	94	-	-	94	-	-	75호광장	16호어린이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2)		
기정	소로	한강	3	144	5	특수도로	18	-	18	-	-	-	소한강1-231	소한강3-14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3)		
기정	소로	한강	3	145	5	특수도로	86	-	86	-	-	-	중한강3-8	소한강1-23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4)		
기정	소로	한강	3	146	5	특수도로	47	-	47	-	-	-	소한강1-230	15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5)		
기정	소로	한강	3	147	5	특수도로	48	-	48	-	-	-	15호소공원	소한강1-242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6)		
기정	소로	한강	3	148	5	특수도로	71	-	71	-	-	-	16호소공원	소한강1-23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7)		
기정	소로	한강	3	149	5	특수도로	18	-	18	-	-	-	소한강1-229	16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8)		
기정	소로	한강	3	150	5	특수도로	89	-	89	-	-	-	소한강1-231	소한강1-23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19)		
기정	소로	한강	3	151	5	특수도로	18	-	18	-	-	-	소한강3-150	소한강1-229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0)		
기정	소로	한강	3	152	5	특수도로	18	-	18	-	-	-	소한강1-241	소한강3-15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1)		
기정	소로	한강	3	153	5	특수도로	34	-	34	-	-	-	소한강1-231	소한강1-24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58	5	특수도로	28	28	-	-	-	-	광한강3-6	소한강1-12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0-559 (10.08.19)		
기정	소로	한강	3	172	5	특수도로	84	-	84	-	-	-	22호공공공지	중한강1-1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623 (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173	5	특수도로	45	-	-	45	-	-	소한강1-229	33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859 (13.12.30)		
기정	소로	한강	3	174	5	특수도로	33	-	-	33	-	-	15호어린이공원	72호광장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859 (13.12.30)		
기정	소로	한강	3	176	5	특수도로	93	-	-	-	-	93	중한강2-47	주계공원5	보행자전용도로	-			
신설	소로	한강	3	279	5	특수도로	10	-	-	-	-	10	소한강2-32	10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계	소로3(5m)					기정	-	10,264	3,624	3,651	2,252	135	572	30	-	-	-	-	-
						변경	-	10,254	3,624	3,651	2,252	135	572	20	-	-	-	-	-
기정	소로	한강	3	115	4	특수도로	10	10	-	-	-	-	소한강1-105	소한강3-16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6	4	특수도로	18	18	-	-	-	-	15호공공공지	소한강1-102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18	4	특수도로	20	-	20	-	-	-	소한강1-145	중한강1-15	보행자전용도로	-	건코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154	4	특수도로	63	63	-	-	-	-	소한강1-102	소한강1-101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55	4	특수도로	31	31	-	-	-	-	소한강1-121	소한강1-130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56	4	특수도로	18	18	-	-	-	-	소한강1-130	19호소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인 (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3	157	4	특수도로	10	10	-	-	-	-	소한강1-127	소한강1-155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08-762) (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165	4	특수도로	75	-	-	-	75	-	소한강1-252	소한강1-226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623 (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166	4	특수도로	59	-	-	-	59	-	소한강1-226	소한강1-25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623 (13.10.24)				
기정	소로	한강	3	167	4	특수도로	90	-	-	-	90	-	소한강1-254	소한강1-204	보행자전용도로	-	국고13-623 (13.10.24)				
계	소로3(4m)					기정	-	394	150	20	-	224	-	-	-	-	-	-	-		
						변경	-	394	150	20	-	224	-	-	-	-	-	-	-	-	-
소로(보행자전용도로) 계						기정	-	20,596	8,282	5,346	4,822	686	714	746	-	-	-	-	-	-	-
						변경	-	20,586	8,282	5,346	4,822	686	714	736	-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201	5	특수도로	154	154	-	-	-	-	1호광장	광한강3-8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2	5	특수도로	201	201	-	-	-	-	2호광장	광한강3-8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3	5	특수도로	134	134	-	-	-	-	소한강1-4	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4	5	특수도로	88	88	-	-	-	-	소한강1-3	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5	5	특수도로	133	133	-	-	-	-	3호광장	소한강1-4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6	5	특수도로	133	133	-	-	-	-	4호광장	소한강1-3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7	5	특수도로	221	-	221	-	-	-	7호광장	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8	5	특수도로	221	-	-	221	-	-	8호광장	6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09	5	특수도로	287	-	287	-	-	-	11호광장	9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0	5	특수도로	238	238	-	-	-	-	12호광장	10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1	5	특수도로	91	-	91	-	-	-	13호광장	1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2	5	특수도로	105	105	-	-	-	-	14호광장	1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3	5	특수도로	160	-	160	-	-	-	22호광장	13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4	5	특수도로	121	121	-	-	-	-	23호광장	1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5	5	특수도로	167	-	-	167	-	-	18호광장	1호공공공지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6	5	특수도로	254	-	-	254	-	-	16호광장	1호공공공지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7	5	특수도로	83	-	83	-	-	-	17호광장	20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8	5	특수도로	98	-	-	98	-	-	19호광장	2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19	5	특수도로	110	-	-	110	-	-	21호광장	4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0	5	특수도로	231	231	-	-	-	-	23호광장	24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1	5	특수도로	401	401	-	-	-	-	대한강3-1	4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2	5	특수도로	109	109	-	-	-	-	24호광장	중한강3-2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3	5	특수도로	127	127	-	-	-	-	대한강3-1	2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4	5	특수도로	312	312	-	-	-	-	중한강3-2	5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5	5	특수도로	130	-	130	-	-	-	소한강1-14	27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6	5	특수도로	88	-	-	88	-	-	29호광장	5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7	5	특수도로	171	-	-	171	-	-	30호광장	33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8	5	특수도로	75	-	-	75	-	-	33호광장	12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29	5	특수도로	242	-	-	-	-	242	39호광장	3호주재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0	5	특수도로	112	-	-	112	-	-	42호광장	39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1	5	특수도로	115	115	-	-	-	-	소한강1-244	98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2	5	특수도로	162	-	-	162	-	-	50호광장	16호공공공지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09-248 (09.05.15)				
기정	소로	한강	3	233	5	특수도로	60	60	-	-	-	-	49호광장	소한강1-244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4	5	특수도로	137	137	-	-	-	-	46호광장	49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5	5	특수도로	181	-	-	181	-	-	48호광장	50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6	5	특수도로	110	110	-	-	-	-	15호공공공지	4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7	5	특수도로	500	-	-	500	-	-	44호광장	47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38	5	특수도로	172	-	-	172	-	-	41호광장	44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1	5	특수도로	79	79	-	-	-	-	51호광장	53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2	5	특수도로	116	116	-	-	-	-	52호광장	54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3	5	특수도로	91	91	-	-	-	-	53호광장	16호공공공지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5	5	특수도로	120	120	-	-	-	-	83호광장	8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6	5	특수도로	118	118	-	-	-	-	84호광장	8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7	5	특수도로	135	-	135	-	-	-	86호광장	88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48	5	특수도로	135	-	135	-	-	-	85호광장	87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 (07.10.29)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합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로	한강	3	249	5	특수도로	44	-	-	-	-	44	-	5호주계공원	6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0	5	특수도로	417	-	417	-	-	-	-	64호광장	9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1	5	특수도로	70	-	-	-	-	70	-	65호광장	89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2	5	특수도로	198	-	-	198	-	-	-	90호광장	9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3	5	특수도로	81	-	81	-	-	-	-	66호광장	9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4	5	특수도로	79	-	-	79	-	-	-	68호광장	9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5	5	특수도로	63	-	63	-	-	-	-	67호광장	중한강2-4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6	5	특수도로	63	-	-	63	-	-	-	69호광장	중한강2-5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7	5	특수도로	70	-	-	70	-	-	-	업무용지	중한강2-5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8	5	특수도로	244	-	244	-	-	-	-	93호광장	중한강2-4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59	5	특수도로	111	-	-	111	-	-	-	94호광장	업무용지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0	5	특수도로	224	-	224	-	-	-	-	71호광장	93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1	5	특수도로	168	-	-	168	-	-	-	15호어린이공원	9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2	5	특수도로	38	-	38	-	-	-	-	96호광장	71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3	5	특수도로	408	-	408	-	-	-	-	74호광장	97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4	5	특수도로	146	-	-	146	-	-	-	16호어린이공원	7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6	5	특수도로	31	-	-	-	-	-	31	10호근린공원	7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변경	소로	한강	3	266	5	특수도로	11	-	-	-	-	-	11	소한강2-32	75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8	5	특수도로	387	-	387	-	-	-	-	중한강1-16	74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69	5	특수도로	264	-	-	-	264	-	-	중한강1-15	10호근린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건고07-452(07.10.29)		
기정	소로	한강	3	272	5	특수도로	158	158	-	-	-	-	-	25호광장	소한강1-14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273	5	특수도로	95	-	-	95	-	-	-	75호광장	16호어린이공원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274	5	특수도로	307	307	-	-	-	-	-	1호교통광장	중한강1-9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08-762)(08.12.22)		
기정	소로	한강	3	277	5	특수도로	33	-	-	33	-	-	-	15호어린이공원	72호광장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13-859(13.12.30)		
신설	소로	한강	3	300	5	특수도로	12	-	-	-	-	-	12	10호근린공원	소한강2-32	자전거전용도로	-	-		
계	소로3(5m)				기정	-	10,927	3,898	3,104	3,274	264	356	31	-	-	-	-	-	-	
					변경	-	10,919	3,898	3,104	3,274	264	356	23	-	-	-	-	-	-	-
기정	소로	한강	3	275	4	특수도로	112	-	112	-	-	-	-	15호공공공지	소한강3-19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10-559)(10.08.19)		
기정	소로	한강	3	276	4	특수도로	129	-	129	-	-	-	-	소한강3-19	중한강3-30	자전거전용도로	-	국고(10-559)(10.08.19)		
계	소로3(4m)				기정	-	241	-	241	-	-	-	-	-	-	-	-	-	-	
					변경	-	241	-	241	-	-	-	-	-	-	-	-	-	-	-
소로(자전거전용도로) 계					기정	-	11,168	3,898	3,345	3,274	264	356	31	-	-	-	-	-	-	
					변경	-	11,160	3,898	3,345	3,274	264	356	23	-	-	-	-	-	-	-

■ 도로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한강2-32	소로 한강2-32	일반도로 노선 신설 (6단계 연장 : 10m, 폭원 : 8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 한강3-2	소로 한강3-2	일반도로 선형조정	지구위 도로단절 문제 해소를 위한 선형조정
소로 한강3-108	소로 한강3-108	특수도로 연장 축소 (6단계 30m → 6단계 10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 한강3-279	소로 한강3-279	특수도로 노선 신설 (6단계 연장 : 10m, 폭원 : 5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소로 한강3-266	소로 한강3-266	특수도로 연장 축소 (6단계 31m → 6단계 11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축소
소로 한강3-300	소로 한강3-300	특수도로 노선 신설 (6단계 연장 : 12m, 폭원 : 5m)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노선 신설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계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5 단계	6 단계
합 계		42개소	74,525.5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4.0	감 2.2	-	-	-	-	-	감 2.2	74,523.3	21,927.5	22,835.6	12,458.1	1,800.3	-	15,501.8	-		
기정	주1	1호 주차장 구래동 6917차	1,926.3	1,926.3	-	-	-	-	-	-	-	-	-	-	-	-	1,926.3	1,926.3	-	-	-	-	-	-	건고 07-452 (07. 10. 29)	
변경	주2	2호 주차장 구래동 8읍 일원	12,721.0	-	-	-	-	-	12,721.0	증 1.2	-	-	-	-	-	증 1.2	12,722.2	-	-	-	-	-	-	12,722.2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	3호 주차장 구래동 6878-15차	1,567.9	-	1,567.9	-	-	-	-	-	-	-	-	-	-	-	1,567.9	-	1,567.9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4	4호 주차장 구래동 6891-2차	1,323.7	-	1,323.7	-	-	-	-	-	-	-	-	-	-	-	1,323.7	-	1,323.7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5	5호 주차장 구래동 6880-7차	6,075.8	-	6,075.8	-	-	-	-	-	-	-	-	-	-	-	6,075.8	-	6,075.8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6	6호 주차장 마산동 627-6차	1,353.6	1,353.6	-	-	-	-	-	-	-	-	-	-	-	-	1,353.6	1,353.6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7	7호 주차장 마산동 631-5차	1,061.7	1,061.7	-	-	-	-	-	-	-	-	-	-	-	-	1,061.7	1,061.7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8	8호 주차장 마산동 645-24차	2,007.0	2,007.0	-	-	-	-	-	-	-	-	-	-	-	-	2,007.0	2,007.0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9	9호 주차장 마산동 649-6차	1,578.1	-	1,578.1	-	-	-	-	-	-	-	-	-	-	-	1,578.1	-	1,578.1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0	10호 주차장 마산동 675-7차	1,371.7	1,371.7	-	-	-	-	-	-	-	-	-	-	-	-	1,371.7	1,371.7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1	11호 주차장 마산동 651-1차	1,229.5	1,229.5	-	-	-	-	-	-	-	-	-	-	-	-	1,229.5	1,229.5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2	12호 주차장 마산동 662-14차	1,230.7	-	1,230.7	-	-	-	-	-	-	-	-	-	-	-	1,230.7	-	1,230.7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3	13호 주차장 장기동 1880-1차	1,004.7	1,004.7	-	-	-	-	-	-	-	-	-	-	-	-	1,004.7	1,004.7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4	14호 주차장 장기동 1917-4차	1,172.0	-	1,172.0	-	-	-	-	-	-	-	-	-	-	-	1,172.0	-	1,172.0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5	15호 주차장 장기동 1915-4차	1,297.8	1,297.8	-	-	-	-	-	-	-	-	-	-	-	-	1,297.8	1,297.8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6	16호 주차장 장기동 1835-3차	301.1	301.1	-	-	-	-	-	-	-	-	-	-	-	-	301.1	301.1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7	17호 주차장 장기동 1899-18차	632.6	632.6	-	-	-	-	-	-	-	-	-	-	-	-	632.6	632.6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8	18호 주차장 장기동 1925-3차	873.0	873.0	-	-	-	-	-	-	-	-	-	-	-	-	873.0	873.0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19	19호 주차장 장기동 1933-2차	1,408.5	-	1,408.5	-	-	-	-	-	-	-	-	-	-	-	1,408.5	-	1,408.5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0	20호 주차장 장기동 2003-1차	1,028.7	-	-	1,028.7	-	-	-	-	-	-	-	-	-	-	1,028.7	-	-	1,028.7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1	21호 주차장 장기동 2019-2차	933.7	-	933.7	-	-	-	-	-	-	-	-	-	-	-	933.7	-	933.7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4	24호 주차장 장기동 2025-2차	1,285.3	-	-	1,285.3	-	-	-	-	-	-	-	-	-	-	1,285.3	-	-	1,285.3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5	25호 주차장 장기동 2039-6차	1,263.8	1,263.8	-	-	-	-	-	-	-	-	-	-	-	-	1,263.8	1,263.8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6	26호 주차장 장기동 2080-1차	1,659.1	-	-	1,659.1	-	-	-	-	-	-	-	-	-	-	1,659.1	-	-	1,659.1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7	27호 주차장 장기동 2079-1차	975.5	-	-	975.5	-	-	-	-	-	-	-	-	-	-	975.5	-	-	975.5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8	28호 주차장 장기동 2085-2차	7,604.7	7,604.7	-	-	-	-	-	-	-	-	-	-	-	-	7,604.7	7,604.7	-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29	29호 주차장 운양동 1299-5차	1,495.1	-	1,495.1	-	-	-	-	-	-	-	-	-	-	-	1,495.1	-	1,495.1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0	30호 주차장 운양동 1238-1차	1,487.9	-	1,487.9	-	-	-	-	-	-	-	-	-	-	-	1,487.9	-	1,487.9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1	31호 주차장 운양동 1306-8차	1,739.6	-	-	1,739.6	-	-	-	-	-	-	-	-	-	-	1,739.6	-	-	1,739.6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2	32호 주차장 운양동 1307-2차	1,744.1	-	-	1,744.1	-	-	-	-	-	-	-	-	-	-	1,744.1	-	-	1,744.1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3	33호 주차장 운양동 1326-8차	1,279.2	-	-	1,279.2	-	-	-	-	-	-	-	-	-	-	1,279.2	-	-	1,279.2	-	-	-	-	건고 07-452 (07. 10. 29)	
변경	주34	34호 주차장 운양동 453읍 일원	1,386.0	-	-	-	-	-	1,386.0	감 0.5	-	-	-	-	-	감 0.5	1,385.5	-	-	-	-	-	-	1,385.5	건고 07-452 (07. 10. 29)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변경	주35	35호 주차장	운양동 428-3대 일원	606.0	-	-	-	-	-	606.0	감 1.8	-	-	-	-	-	감 1.8	604.2	-	-	-	-	-	-	604.2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6	36호 주차장	운양동 1291-1차	605.9	-	605.9	-	-	-	-	-	-	-	-	-	-	-	605.9	-	605.9	-	-	-	-	-	건고 07-452 (07. 10. 29)			
변경	주37	37호 주차장	운양동 155-1대 일원	791.0	-	-	-	-	-	791.0	감 1.1	-	-	-	-	-	감 1.1	789.9	-	-	-	-	-	-	789.9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8	38호 주차장	운양동 1263-8차	1,271.2	-	1,271.2	-	-	-	-	-	-	-	-	-	-	-	1,271.2	-	1,271.2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39	39호 주차장	운양동 1275-1차	785.7	-	785.7	-	-	-	-	-	-	-	-	-	-	-	785.7	-	785.7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40	40호 주차장	운양동 1286-2차	381.4	-	381.4	-	-	-	-	-	-	-	-	-	-	-	381.4	-	381.4	-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41	41호 주차장	운양동 1320-13차	1,338.5	-	-	1,338.5	-	-	-	-	-	-	-	-	-	-	1,338.5	-	-	1,338.5	-	-	-	-	건고 07-452 (07. 10. 29)			
기정	주45	45호 주차장	구래동 6878-1차	1,428.0	-	1,428.0	-	-	-	-	-	-	-	-	-	-	-	1,428.0	-	1,428.0	-	-	-	-	-	국고 10-559 (10. 08. 19)			
기정	주46	46호 주차장	운양동 1327-1차	1,408.1	-	-	1,408.1	-	-	-	-	-	-	-	-	-	-	1,408.1	-	-	1,408.1	-	-	-	-	국고 13-623 (13. 10. 24)			
기정	주47	47호 주차장	장기동 산205-1 일원	1,800.3	-	-	-	1,800.3	-	-	-	-	-	-	-	-	-	1,800.3	-	-	-	1,800.3	-	-	-	국고 14-717 (14. 11. 27)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2	2호 주차장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주34	34호 주차장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주35	35호 주차장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주37	37호 주차장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나. 공간시설

- 1) 광장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59개소	2,372,247	33,436	1,612,34	1,964,642	17,250	114,635	8,200	감 362	-	-	-	-	감 362	2,372,178.5	33,436	1,611,794	1,964,642	17,250	114,635	8,172.8					
소계					8개소	1,813,578.5	-	341.8	1,788,51.3	882.6	21,988.8	81,594.0	증 6,038.8	-	-	-	-	증 6,038.8	1,820,187.3	-	341.8	1,788,51.3	882.6	21,988.8	81,172.8					
변경	-	주제공원	1호 주제공원	마산동 617-1공 일원	104,511.0	-	-	102,375.0	-	-	2,136.0	증 49	-	-	-	-	증 49	104,515.9	-	-	102,375.0	-	-	2,140.9	건고 07-452 (07.10.29)	문화공원 (호수공원)				
기정	-	주제공원	2호 주제공원	구래동 673-1공 일원	127,591.6	-	-	127,591.6	-	-	-	-	-	-	-	-	-	127,591.6	-	-	127,591.6	-	-	-	건고 07-452 (07.10.29)	문화공원 (배수시설 포함)				
기정	-	주제공원	3호 주제공원	마산동 642-1공 일원	312,470.9	-	341.8	193,648.2	-	8,409.9	-	-	-	-	-	-	-	312,470.9	-	341.8	193,648.2	-	8,409.9	-	건고 07-452 (07.10.29)	체육공원				
기정	-	주제공원	4호 주제공원	장기동 2001-1공 일원	74,148.4	-	-	74,148.4	-	-	-	-	-	-	-	-	-	74,148.4	-	-	74,148.4	-	-	-	건고 07-452 (07.10.29)	문화공원 (중앙공원 도서관 포함)				
변경	-	주제공원	5호 주제공원	운양동 1325-1공 일원	615,626.6	-	-	536,254.6	-	-	79,428.0	감 27	-	-	-	-	감 27	615,679.9	-	-	536,254.6	-	-	79,425.3	건고 07-452 (07.10.29)	문화공원 (아트밸리 및 배수시설 포함)				
기정	-	주제공원	6호 주제공원	운양동 1246-1공 일원	523,172.6	-	-	565,294.9	419.8	13,457.9	-	-	-	-	-	-	-	523,172.6	-	-	565,294.9	419.8	13,457.9	-	건고 07-452 (07.10.29)	수변공원 (조류생태공원)				
기정	-	주제공원	7호 주제공원	마산동 618-1공 일원	110,001.4	-	-	109,538.6	462.8	-	-	-	-	-	-	-	-	110,001.4	-	-	109,538.6	462.8	-	-	건고 07-452 (07.10.29)	보지공원 (방안시설에 포함)				
신설	-	주제공원	8호 주제공원	장기동 604-2답 일원	-	-	-	-	-	-	증 6,036.6	-	-	-	-	-	증 6,036.6	6,036.6	-	-	-	-	-	6,036.6	-	-				
소계					15개소	455,786.9	325,614	71,161.7	254,074.6	15,304.5	92,691.7	-	-	-	-	-	-	455,786.9	325,614	71,161.7	254,074.6	15,304.5	92,691.7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소5	소공원	5호 소공원	장기동 1888-6공	2367	2367	-	-	-	-	-	-	-	-	2367	2367	-	-	-	-	-	-	2367	2367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6	소공원	6호 소공원	장기동 1940-4공	498	498	-	-	-	-	-	-	-	-	498	498	-	-	-	-	-	-	-	-	498	498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7	소공원	7호 소공원	장기동 2033-1공	1,198	1,198	-	-	-	-	-	-	-	-	1,198	1,198	-	-	-	-	-	-	-	-	1,198	1,198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8	소공원	8호 소공원	운양동 1310-9공	1,099	-	-	1,099	-	-	-	-	-	-	-	1,099	-	-	1,099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9	소공원	9호 소공원	운양동 1292-4공	797	-	797	-	-	-	-	-	-	-	-	797	-	797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0	소공원	10호 소공원	운양동 1317-1공	1,092	-	-	1,092	-	-	-	-	-	-	-	1,092	-	-	1,092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1	소공원	11호 소공원	운양동 1292-6공	746	-	746	-	-	-	-	-	-	-	-	746	-	746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2	소공원	12호 소공원	마산동 644-5공	906	-	906	-	-	-	-	-	-	-	-	906	-	906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3	소공원	13호 소공원	장기동 2039-5공	1,344	1,344	-	-	-	-	-	-	-	-	-	1,344	1,344	-	-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4	소공원	14호 소공원	장기동 1993-1공	796	-	796	-	-	-	-	-	-	-	-	796	-	796	-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5	소공원	15호 소공원	운양동 1285-12공	307	-	307	-	-	-	-	-	-	-	-	307	-	307	-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6	소공원	16호 소공원	운양동 1283-9공	581	-	581	-	-	-	-	-	-	-	-	581	-	581	-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7	소공원	17호 소공원	운양동 119-7답 일원	1,079	-	-	-	1,079	-	-	-	-	-	-	-	1,079	-	-	-	1,079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소18	소공원	18호 소공원	장기동 2047-6공	1,531	1,531	-	-	-	-	-	-	-	-	-	1,531	1,531	-	-	-	-	-	-	-	-	-	-	-	-	-	-	-	-	국고 08-762 (08.12.22)		
기정	소19	소공원	19호 소공원	장기동 1944-6공	352	352	-	-	-	-	-	-	-	-	-	352	352	-	-	-	-	-	-	-	-	-	-	-	-	-	-	-	-	국고 08-762 (08.12.22)		
기정	소20	소공원	20호 소공원	장기동 1979-1공	889	-	889	-	-	-	-	-	-	-	-	889	-	889	-	-	-	-	-	-	-	-	-	-	-	-	-	-	-	국고 08-762 (08.12.22)		
기정	소21	소공원	21호 소공원	운양동 1270-12공	1,513	-	1,513	-	-	-	-	-	-	-	-	1,513	-	1,513	-	-	-	-	-	-	-	-	-	-	-	-	-	-	-	국고 08-762 (08.12.22)		
기정	소22	소공원	22호 소공원	마산동 674-5공	1,423	1,423	-	-	-	-	-	-	-	-	-	1,423	1,423	-	-	-	-	-	-	-	-	-	-	-	-	-	-	-	-	국고 10-539 (10.08.19)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주제공원1	1호 주제공원	면적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주제공원5	5호 주제공원	면적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주제공원8	8호 주제공원	신 설	어린이공원17에서 변경
어린이공원17	17호 어린이공원	폐 지	주제공원8로 변경

3)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 계				10개소	206,484	90,435	23,820	70,096	971	10,362	11,930	감 41.5	-	-	-	-	감 41.5	206,429	90,435	23,820	70,096	971	10,362	11,845										
소 계				5개소	116,007	46,469	23,820	23,896	-	10,362	11,930	감 41.5	-	-	-	-	감 41.5	116,092	46,469	23,820	23,896	-	10,362	11,845										
변경	원1	완충 녹지	1호 완충 녹지	구래동 683-1공 일원	22,860	3,058	-	7,842	-	-	11,930	감 41.5	-	-	-	감 41.5	22,945	3,058	-	7,842	-	-	11,845	22,860	3,058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원2	완충 녹지	2호 완충 녹지	구래동 683-1공 일원	32,447	23,483	3,063	5,931	-	-	-	-	-	-	-	-	32,447	23,483	3,063	5,931	-	-	-	32,447	23,483	3,063	5,931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원3	완충 녹지	3호 완충 녹지	장기동 1865-1공 일원	38,396	13,823	10,988	5,492	-	-	8,253	-	-	-	-	-	38,396	13,823	10,988	5,492	-	-	-	38,396	13,823	10,988	5,492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원4	완충 녹지	4호 완충 녹지	장기동 2004-1공	6,125	6,125	-	-	-	-	-	-	-	-	-	-	6,125	6,125	-	-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원5	완충 녹지	5호 완충 녹지	운양동 1246-11공 일원	16,069	-	9,359	4,401	-	-	2,309	-	-	-	-	-	16,069	-	9,359	4,401	-	-	-	-	-	-	-	-	-	-	-	-	건고 07-452 (07.10.29)	
소 계				5개소	90,427	43,666	-	46,300	971	-	-	-	-	-	-	-	90,427	43,666	-	46,300	971	-	-	-	-	-	-	-	-	-	-	-	-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경1	경관 녹지	1호 경관 녹지	마산동 670-4공 일원	36311.9	-	-	36214.8	971	-	-	-	-	-	-	-	36311.9	-	-	36214.8	971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경2	경관 녹지	2호 경관 녹지	장기동 1885-1공 일원	8886	-	-	8886	-	-	-	-	-	-	-	-	8886	-	-	8886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경3	경관 녹지	3호 경관 녹지	장기동 2088공 일원	31057.7	23361	-	1,461.6	-	-	-	-	-	-	-	-	31057.7	23361	-	1,461.6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경4	경관 녹지	4호 경관 녹지	장기동 1886-10공	12730	12730	-	-	-	-	-	-	-	-	-	-	12730	12730	-	-	-	-	-	-	-	-	-	국고 10-539 (10.08.19)		
기정	경5	경관 녹지	5호 경관 녹지	장기동 2055-1공	1587.5	1587.5	-	-	-	-	-	-	-	-	-	-	1587.5	1587.5	-	-	-	-	-	-	-	-	-	국고 10-539 (10.08.19)		

■ 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완1	1호 완충녹지	면적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4)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82개소		507022	127703	168304	119366	362572	841647	347540	감 7709	-	-	-	-	-	감 7709	588913	127703	168304	119366	362572	841647	33981					
변경	공1	1호 공공공지	구래동 6894-2공 일원	150400	-	-	12362	-	-	13838.8	증 1535	-	-	-	-	-	증 1535	151885	-	-	12362	-	-	-	-	13973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2	2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3-9공 일원	7885	22355	-	-	-	5480	-	-	-	-	-	-	-	7885	22355	-	-	-	-	-	5480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3	3호 공공공지	구래동 6885-3공	23062	102273	54457	73632	-	-	-	-	-	-	-	-	-	23062	102273	54457	73632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4	4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4-10공	169225	119509	49716	-	-	-	-	-	-	-	-	-	-	169225	119509	49716	-	-	-	-	-	-	-	건고 07-452 (07.10.29)		
변경	공5	5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7-1공 일원	16460	-	56466	1494	-	-	9320	증 2640	-	-	-	-	-	증 2640	16700	-	56466	1494	-	-	-	95840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	6호 공공공지	구래동 6886-6공 일원	38367.1	-	23511.4	11037	-	-	23130	-	-	-	-	-	-	38981	-	23511.4	11037	-	-	-	23130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7	7호 공공공지	구래동 6895-5공 일원	9737.6	2801.6	26257	43103	-	-	-	-	-	-	-	-	-	9737.6	2801.6	26257	43103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8	8호 공공공지	구래동 6891-1공	22054	-	22054	-	-	-	-	-	-	-	-	-	-	22054	-	22054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9	9호 공공공지	마산동 626-2공 일원	4861	-	-	4861	-	-	-	-	-	-	-	-	-	4861	-	-	4861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0	10호 공공공지	마산동 688-2공 일원	4318	1221.1	-	1196	1951.1	-	-	-	-	-	-	-	-	4318	1221.1	-	1196	1951.1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1	11호 공공공지	마산동 643-3공	8727.8	-	8727.8	-	-	-	-	-	-	-	-	-	-	8727.8	-	8727.8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2	12호 공공공지	마산동 643-5공 일원	6964	-	3867	3069	328	-	-	-	-	-	-	-	-	6964	-	3867	3069	328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3	13호 공공공지	마산동 623-3공 일원	46575.8	29501.8	49760	9740.1	-	23579	-	-	-	-	-	-	-	46575.8	29501.8	49760	9740.1	-	23579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4	14호 공공공지	장기동 1888-12공 일원	42851.2	3895	-	35905	-	3361.2	-	-	-	-	-	-	-	42851.2	3895	-	35905	-	3361.2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5	15호 공공공지	장기동 1873-1공	161965	161965	-	-	-	-	-	-	-	-	-	-	-	161965	161965	-	-	-	-	-	-	-	-	건고 07-452 (07.10.29)	방역향간지 (1-54㎡)	
변경	공16	16호 공공공지	장기동 2088공 일원	96986	2979	-	7988	265867	553617	6785	감 1984	-	-	-	-	-	감 1984	95052	2979	-	7988	265867	553617	4881	-	-	건고 07-452 (07.10.29)	수처리 시설포함	
기정	공17	17호 공공공지	장기동 1910-1공	57122	57122	-	-	-	-	-	-	-	-	-	-	-	57122	57122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18	18호 공공공지	울양동 1331-2공	257340	257340	-	-	-	-	-	-	-	-	-	-	-	257340	257340	-	-	-	-	-	-	-	-	건고 07-452 (07.10.29)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공19	19호 공공공지	장기동 2020-9공 일원	4052	1893	-	22459	-	-	-	공	-	-	-	-	-	4052	1893	-	22459	-	-	-	-	-	견고 07-452 (07.10.29)			
변경	공20	20호 공공공지	운양동 1306-5공 일원	371332	58087	178169	83339	41063	10674	-	증 397	-	-	-	-	증 397	371729	58087	178169	83339	41063	10674	397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1	21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0-4공 일원	150130	-	50613	9617	-	-	-	-	-	-	-	-	-	150130	-	50613	9617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2	22호 공공공지	운양동 1236-6공	153247	-	153247	-	-	-	-	-	-	-	-	-	-	153247	-	153247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3	23호 공공공지	운양동 1307-10공	75662	-	-	75662	-	-	-	-	-	-	-	-	-	75662	-	-	75662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4	24호 공공공지	운양동 1288-2공	116458	-	116458	-	-	-	-	-	-	-	-	-	-	116458	-	116458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5	25호 공공공지	운양동 1331-4공 일원	145459	-	123723	8010	13726	-	-	-	-	-	-	-	-	145459	-	123723	8010	13726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6	26호 공공공지	장기동 1984-7공	17945	-	17945	-	-	-	-	-	-	-	-	-	-	17945	-	17945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7	27호 공공공지	운양동 1329-13공 일원	15649	-	-	-	-	15649	-	-	-	-	-	-	-	15649	-	-	-	-	-	15649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28	28호 공공공지	운양동 1301-2공 일원	19611	-	16839	-	-	272	-	-	-	-	-	-	-	19611	-	16839	-	-	-	272	-	견고 07-452 (07.10.29)				
변경	공29	29호 공공공지	운양동 1015-2단 일원	12607	-	-	-	-	-	12607	감 53	-	-	-	-	-	감 53	1254	-	-	-	-	-	1254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2	32호 공공공지	장기동 1868-4도	1319	1319	-	-	-	-	-	-	-	-	-	-	-	1319	1319	-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3	33호 공공공지	장기동 1919-1공	5985	-	5985	-	-	-	-	-	-	-	-	-	-	5985	-	5985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5	35호 공공공지	장기동 1910-2공	11638	11638	-	-	-	-	-	-	-	-	-	-	-	11638	11638	-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7	37호 공공공지	장기동 2057-3공	2094	2094	-	-	-	-	-	-	-	-	-	-	-	2094	2094	-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8	38호 공공공지	장기동 2017공	6314	-	-	6314	-	-	-	-	-	-	-	-	-	6314	-	-	6314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39	39호 공공공지	장기동 2008-8공	53720	53720	-	-	-	-	-	-	-	-	-	-	-	53720	53720	-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0	40호 공공공지	운양동 1010-6도 일원	14101	-	-	-	14101	-	-	-	-	-	-	-	-	14101	-	-	-	-	14101	-	-	견고 07-452 (07.10.29)	방화경간지 (L=153m)			
기정	공42	42호 공공공지	장기동 1971-24공 일원	656	-	656	-	-	-	-	-	-	-	-	-	-	656	-	656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3	43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2-19공	20221	-	20221	-	-	-	-	-	-	-	-	-	-	20221	-	20221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4	44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2-7공	958	-	958	-	-	-	-	-	-	-	-	-	-	958	-	958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5	45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8-4공	1889	-	1889	-	-	-	-	-	-	-	-	-	-	1889	-	1889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6	46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3-28공	29787	-	29787	-	-	-	-	-	-	-	-	-	-	29787	-	29787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7	47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7-9공	12525	-	12525	-	-	-	-	-	-	-	-	-	-	12525	-	12525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8	48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5-2공	1098	-	1098	-	-	-	-	-	-	-	-	-	-	1098	-	1098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49	49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6-26공	14293	-	14293	-	-	-	-	-	-	-	-	-	-	14293	-	14293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50	50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6-27공	2449	-	2449	-	-	-	-	-	-	-	-	-	-	2449	-	2449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51	51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5-7공	7889	-	7889	-	-	-	-	-	-	-	-	-	-	7889	-	7889	-	-	-	-	-	견고 07-452 (07.10.29)				
기정	공54	54호 공공공지	운양동 1247-3공 일원	110742	-	-	-	-	110742	-	-	-	-	-	-	-	110742	-	-	-	-	-	110742	-	견고 07-452 (07.10.29)	방화경간지 (L=170m)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공55	55호 공공공지	운양동 1304-4동 일원	2237	-	2237	-	-	-	-	-	-	-	-	-	-	2237	-	2237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56	56호 공공공지	운양동 1304동 일원	35392	-	-	-	-	35392	-	-	-	-	-	-	-	35392	-	-	-	-	-	-	-	35392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57	57호 공공공지	장기동 1974-2동	11395	-	11395	-	-	-	-	-	-	-	-	-	-	11395	-	11395	-	-	-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58	58호 공공공지	운양동 139-1답 일원	692	-	-	-	692	-	-	-	-	-	-	-	-	692	-	-	-	-	692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0	60호 공공공지	운양동 125도 일원	1034	-	-	-	1034	-	-	-	-	-	-	-	-	1034	-	-	-	-	1034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1	61호 공공공지	운양동 140-4답 일원	2874	-	-	-	2874	-	-	-	-	-	-	-	-	2874	-	-	-	-	2874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2	62호 공공공지	운양동 140-1답 일원	1281	-	-	-	1281	-	-	-	-	-	-	-	-	1281	-	-	-	-	1281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3	63호 공공공지	운양동 124-7답 일원	1995	-	-	-	1995	-	-	-	-	-	-	-	-	1995	-	-	-	-	1995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7	67호 공공공지	운양동 1246-9동 일원	3515	-	1140	1365	-	1010	-	-	-	-	-	-	-	3515	-	1140	1365	-	1010	-	-	-	-	건고 07-452 (07.10.29)		
기정	공69	69호 공공공지	장기동 1888-12동	1559	1559	-	-	-	-	-	-	-	-	-	-	-	1559	1559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0	70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3-7동	20722	20722	-	-	-	-	-	-	-	-	-	-	-	20722	20722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1	71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4-24동	592	592	-	-	-	-	-	-	-	-	-	-	-	592	592	-	-	-	-	-	-	-	-	국고 08-615 (08.11.03)		
변경	공72	72호 공공공지	양촌면 석모리 782-4답 일원	12300	-	-	-	-	-	12300	증 7556	-	-	-	-	-	19556	-	-	-	-	-	-	-	19556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3	73호 공공공지	구래동 6889-9동	1613	-	1613	-	-	-	-	-	-	-	-	-	-	1613	-	1613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4	74호 공공공지	구래동 6892-10동	962	-	962	-	-	-	-	-	-	-	-	-	-	962	-	962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5	75호 공공공지	구래동 6892-15동	952	-	952	-	-	-	-	-	-	-	-	-	-	952	-	952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6	76호 공공공지	마산동 648-3동	844	-	844	-	-	-	-	-	-	-	-	-	-	844	-	844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7	77호 공공공지	마산동 649-3동	836	-	836	-	-	-	-	-	-	-	-	-	-	836	-	836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8	78호 공공공지	마산동 661-1동	1032	-	1032	-	-	-	-	-	-	-	-	-	-	1032	-	1032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79	79호 공공공지	마산동 663-1동	1279	-	1279	-	-	-	-	-	-	-	-	-	-	1279	-	1279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0	80호 공공공지	마산동 664-7동	1465	-	1465	-	-	-	-	-	-	-	-	-	-	1465	-	1465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1	81호 공공공지	장기동 1890-17동	924	924	-	-	-	-	-	-	-	-	-	-	-	924	924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2	82호 공공공지	장기동 1964-5동	1084	1084	-	-	-	-	-	-	-	-	-	-	-	1084	1084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3	83호 공공공지	장기동 1956-1동	835	835	-	-	-	-	-	-	-	-	-	-	-	835	835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4	84호 공공공지	장기동 1956-5동	832	832	-	-	-	-	-	-	-	-	-	-	-	832	832	-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5	85호 공공공지	장기동 1980-1동	2317	-	2317	-	-	-	-	-	-	-	-	-	-	2317	-	2317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6	86호 공공공지	운양동 1276-5동	1778	-	1778	-	-	-	-	-	-	-	-	-	-	1778	-	1778	-	-	-	-	-	-	-	국고 08-615 (08.11.03)		
기정	공87	87호 공공공지	장기동 선180-16원 일원	30	-	-	30	-	-	-	-	-	-	-	-	-	30	-	-	30	-	-	-	-	-	-	국고 08-762 (08.12.22)		
기정	공88	88호 공공공지	구래동 6878-5동	8706	-	8706	-	-	-	-	-	-	-	-	-	-	8706	-	8706	-	-	-	-	-	-	-	건고 10-559 (10.08.13)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기정	공88	마산동 공공공지	671-2공	2070	-	-	2070	-	-	-	-	-	-	-	-	-	2070	-	-	2070	-	-	-	-	-	-	건고 10-559 (10.08.13)		
기정	공90	구래동 공공공지	6887-4공	9722	-	-	9722	-	-	-	-	-	-	-	-	-	9722	-	-	9722	-	-	-	-	-	-	건고 10-559 (10.08.13)		
기정	공91	윤양동 공공공지	1254-27공	1,757.3	-	1,757.3	-	-	-	-	-	-	-	-	-	-	1,757.3	-	1,757.3	-	-	-	-	-	-	건고 10-559 (10.08.13)			
기정	공92	마산동 공공공지	630-1공	821	821	-	-	-	-	-	-	-	-	-	-	-	821	821	-	-	-	-	-	-	-	건고 10-559 (10.08.13)			
기정	공93	장기동 공공공지	1330-3공	3062	-	3062	-	-	-	-	-	-	-	-	-	-	3062	-	3062	-	-	-	-	-	-	건고 10-559 (10.08.13)			
기정	공94	윤양동 공공공지	1325-8공	6920	-	-	6920	-	-	-	-	-	-	-	-	-	6920	-	-	6920	-	-	-	-	-	국고 11-406 (12.01.04)			

■ 공공공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1	1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지구외 현황을 반영한 구역경계 조정 및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공5	5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공16	16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공20	20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공29	29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공72	72호 공공공지	면적 변경	6단계 확정측량에 따른 변경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1)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1) 학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4)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방재시설

- 1) 하천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우수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방수설비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바. 보건위생시설

- 1)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환경기초시설

- 1)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게재생략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붙임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김포한강 지구단위 계획구역	경기도 김포시 김포2동(장기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일원	10,865,251.0	감 691.3	10,864,559.7	-

II.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I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 가.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다. 문화예술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합계		18,865.0	-	-	-	-	-	18,865.0	33획지	18,865.0	-	-	-	-	-	-	18,865.0	
문화1	CA-1	992.0	-	-	-	-	-	992.0	CA-1-1	496.0	-	-	-	-	-	-	496.0	
									CA-1-2	496.0	-	-	-	-	-	-	496.0	
문화1	CA-2	1,720.0	-	-	-	-	-	1,720.0	CA-2-1	573.0	-	-	-	-	-	-	573.0	
									CA-2-2	574.0	-	-	-	-	-	-	574.0	
									CA-2-3	573.0	-	-	-	-	-	-	573.0	
문화1	CA-3	1,213.0	-	-	-	-	-	1,213.0	CA-3-1	607.0	-	-	-	-	-	-	607.0	
									CA-3-2	606.0	-	-	-	-	-	-	606.0	
문화1	CA-4	1,488.0	-	-	-	-	-	1,488.0	CA-4-1	496.0	-	-	-	-	-	-	496.0	
									CA-4-2	496.0	-	-	-	-	-	-	496.0	
									CA-4-3	496.0	-	-	-	-	-	-	496.0	
문화1	CA-5	2,249.0	-	-	-	-	-	2,249.0	CA-5-1	562.0	-	-	-	-	-	-	562.0	
									CA-5-2	562.0	-	-	-	-	-	-	562.0	
									CA-5-3	562.0	-	-	-	-	-	-	562.0	
									CA-5-4	563.0	-	-	-	-	-	-	563.0	
문화1	CA-6	1,873.0	-	-	-	-	-	1,873.0	CA-6-1	624.0	-	-	-	-	-	-	624.0	
									CA-6-2	624.0	-	-	-	-	-	-	624.0	
									CA-6-3	625.0	-	-	-	-	-	-	625.0	
문화2	CA-7	1,057.0	-	-	-	-	-	1,057.0	CA-7-1	529.0	-	-	-	-	-	-	529.0	
									CA-7-2	528.0	-	-	-	-	-	-	528.0	
문화2	CA-8	594.0	-	-	-	-	-	594.0	CA-8-1	594.0	-	-	-	-	-	-	594.0	
문화2	CA-9	1,000.0	-	-	-	-	-	1,000.0	CA-9-1	500.0	-	-	-	-	-	-	500.0	
									CA-9-2	500.0	-	-	-	-	-	-	500.0	
문화2	CA-10	1,219.0	-	-	-	-	-	1,219.0	CA-10-1	609.0	-	-	-	-	-	-	609.0	
									CA-10-2	610.0	-	-	-	-	-	-	610.0	
문화3	CA-11	1,832.0	-	-	-	-	-	1,832.0	CA-11-1	611.0	-	-	-	-	-	-	611.0	
									CA-11-2	611.0	-	-	-	-	-	-	611.0	
									CA-11-3	610.0	-	-	-	-	-	-	610.0	
문화3	CA-12	1,194.0	-	-	-	-	-	1,194.0	CA-12-1	597.0	-	-	-	-	-	-	597.0	
									CA-12-2	597.0	-	-	-	-	-	-	597.0	
문화3	CA-13	1,709.0	-	-	-	-	-	1,709.0	CA-13-1	569.0	-	-	-	-	-	-	569.0	
									CA-13-2	570.0	-	-	-	-	-	-	570.0	
									CA-13-3	570.0	-	-	-	-	-	-	570.0	
문화3	CA-14	725.0	-	-	-	-	-	725.0	CA-14-1	725.0	-	-	-	-	-	-	725.0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획지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20,001.5	-	-	-	-	-	20,001.5	34획지	20,001.5	-	-	-	-	-	-	20,001.5	
문화1	CA-1	991.2	-	-	-	-	-	991.2	CA-1-1	495.6	-	-	-	-	-	-	495.6	
									CA-1-2	495.6	-	-	-	-	-	-	495.6	
문화1	CA-2	1,721.5	-	-	-	-	-	1,721.5	CA-2-1	573.4	-	-	-	-	-	-	573.4	
									CA-2-2	574.5	-	-	-	-	-	-	574.5	
									CA-2-3	573.6	-	-	-	-	-	-	573.6	
문화1	CA-3	1,213.9	-	-	-	-	-	1,213.9	CA-3-1	607.5	-	-	-	-	-	-	607.5	
									CA-3-2	606.4	-	-	-	-	-	-	606.4	
문화1	CA-4	1,486.7	-	-	-	-	-	1,486.7	CA-4-1	495.6	-	-	-	-	-	-	495.6	
									CA-4-2	495.6	-	-	-	-	-	-	495.6	
									CA-4-3	495.5	-	-	-	-	-	-	495.5	
문화1	CA-5	2,249.2	-	-	-	-	-	2,249.2	CA-5-1	562.0	-	-	-	-	-	-	562.0	
									CA-5-2	562.1	-	-	-	-	-	-	562.1	
									CA-5-3	562.0	-	-	-	-	-	-	562.0	
									CA-5-4	563.1	-	-	-	-	-	-	563.1	
문화1	CA-6	1,871.8	-	-	-	-	-	1,871.8	CA-6-1	623.6	-	-	-	-	-	-	623.6	
									CA-6-2	623.6	-	-	-	-	-	-	623.6	
									CA-6-3	624.6	-	-	-	-	-	-	624.6	
문화2	CA-7	1,060.5	-	-	-	-	-	1,060.5	CA-7-1	530.8	-	-	-	-	-	-	530.8	
									CA-7-2	529.7	-	-	-	-	-	-	529.7	
문화2	CA-8	593.4	-	-	-	-	-	593.4	CA-8-1	593.4	-	-	-	-	-	-	593.4	
문화2	CA-9	1,002.2	-	-	-	-	-	1,002.2	CA-9-1	501.1	-	-	-	-	-	-	501.1	
									CA-9-2	501.1	-	-	-	-	-	-	501.1	
문화2	CA-10	1,218.8	-	-	-	-	-	1,218.8	CA-10-1	608.9	-	-	-	-	-	-	608.9	
									CA-10-2	609.9	-	-	-	-	-	-	609.9	
문화3	CA-11	1,836.4	-	-	-	-	-	1,836.4	CA-11-1	612.7	-	-	-	-	-	-	612.7	
									CA-11-2	612.5	-	-	-	-	-	-	612.5	
									CA-11-3	611.2	-	-	-	-	-	-	611.2	
문화3	CA-12	1,192.3	-	-	-	-	-	1,192.3	CA-12-1	596.2	-	-	-	-	-	-	596.2	
									CA-12-2	596.1	-	-	-	-	-	-	596.1	
문화3	CA-13	1,705.4	-	-	-	-	-	1,705.4	CA-13-1	567.8	-	-	-	-	-	-	567.8	
									CA-13-2	568.9	-	-	-	-	-	-	568.9	
									CA-13-3	568.7	-	-	-	-	-	-	568.7	
문화3	CA-14	725.0	-	-	-	-	-	725.0	CA-14-1	725.0	-	-	-	-	-	-	725.0	
문화3	CA-15	1,133.2	-	-	-	-	-	1,133.2	CA-15-1	1,133.2	-	-	-	-	-	-	1,133.2	

라.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마. 상업업무용지 (변경)

■ 기정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획지 기정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418,492.3	53,876.3	176,125.5	170,443.4	-	13,292.1	4,755.0	177획지	418,492.3	53,876.3	176,125.5	170,443.4	-	13,292.1	4,755.0	
주상1	Cc-1	21,299.8	-	-	21,299.8	-	-	-	Cc-1	21,299.8	-	-	21,299.8	-	-	-	
주상1	Cc-3	32,293.0	-	-	32,293.0	-	-	-	Cc-3	32,293.0	-	-	32,293.0	-	-	-	
주상2	Cc-5	30,114.0	-	-	30,114.0	-	-	-	Cc-5	30,114.0	-	-	30,114.0	-	-	-	
일상1	C1-1	8,138.7	-	8,138.7	-	-	-	-	C1-1-1	1,357.6	-	1,357.6	-	-	-	-	
									C1-1-2	1,357.5	-	1,357.5	-	-	-	-	
									C1-1-3	2,710.6	-	2,710.6	-	-	-	-	
									C1-1-4	1,356.4	-	1,356.4	-	-	-	-	
									C1-1-5	1,356.6	-	1,356.6	-	-	-	-	
일상1	C1-2	5,425.7	-	5,425.7	-	-	-	-	C1-2-1	1,356.4	-	1,356.4	-	-	-	-	
									C1-2-2	1,356.5	-	1,356.5	-	-	-	-	
									C1-2-3	1,356.5	-	1,356.5	-	-	-	-	
									C1-2-4	1,356.3	-	1,356.3	-	-	-	-	
일상1	C1-3	8,124.5	-	8,124.5	-	-	-	-	C1-3-1	812.9	-	812.9	-	-	-	-	
									C1-3-2	812.6	-	812.6	-	-	-	-	
									C1-3-3	812.6	-	812.6	-	-	-	-	
									C1-3-4	812.8	-	812.8	-	-	-	-	
									C1-3-5	812.1	-	812.1	-	-	-	-	
									C1-3-6	810.1	-	810.1	-	-	-	-	
									C1-3-7	813.1	-	813.1	-	-	-	-	
									C1-3-8	812.9	-	812.9	-	-	-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회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C1-3-9	812.7	-	812.7	-	-	-	-	
								C1-3-10	812.7	-	812.7	-	-	-	-	
일상1	C1-4	4,094.5	-	4,094.5	-	-	-	C1-4-1	2,047.1	-	2,047.1	-	-	-	-	
								C1-4-2	2,047.4	-	2,047.4	-	-	-	-	
일상1	C1-5	5,357.4	-	5,357.4	-	-	-	C1-5-1	1,785.8	-	1,785.8	-	-	-	-	
								C1-5-2	1,786.5	-	1,786.5	-	-	-	-	
								C1-5-3	1,785.1	-	1,785.1	-	-	-	-	
일상1	C1-6	5,574.0	-	5,574.0	-	-	-	C1-6-1	2,787.2	-	2,787.2	-	-	-	-	
								C1-6-2	2,786.8	-	2,786.8	-	-	-	-	
일상1	C1-7	8,137.5	-	8,137.5	-	-	-	C1-7-1	2,712.6	-	2,712.6	-	-	-	-	
								C1-7-2	2,712.5	-	2,712.5	-	-	-	-	
								C1-7-3	2,712.4	-	2,712.4	-	-	-	-	
일상1	C1-8	2,628.8	-	2,628.8	-	-	-	C1-8-1	1,314.4	-	1,314.4	-	-	-	-	
								C1-8-2	1,314.4	-	1,314.4	-	-	-	-	
일상1	C1-9	2,526.7	-	2,526.7	-	-	-	C1-9-1	1,263.3	-	1,263.3	-	-	-	-	
								C1-9-2	1,263.4	-	1,263.4	-	-	-	-	
일상1	C1-10	5,300.8	-	5,300.8	-	-	-	C1-10-1	1,766.1	-	1,766.1	-	-	-	-	
								C1-10-2	1,767.4	-	1,767.4	-	-	-	-	
								C1-10-3	1,767.3	-	1,767.3	-	-	-	-	
일상1	C1-11	6,565.3	-	6,565.3	-	-	-	C1-11-1	1,641.4	-	1,641.4	-	-	-	-	
								C1-11-2	1,641.5	-	1,641.5	-	-	-	-	
								C1-11-3	1,641.3	-	1,641.3	-	-	-	-	
								C1-11-4	1,641.1	-	1,641.1	-	-	-	-	
일상1	C1-12	5,955.6	-	5,955.6	-	-	-	C1-12-1	979.3	-	979.3	-	-	-	-	
								C1-12-2	984.9	-	984.9	-	-	-	-	
								C1-12-3	1,084.1	-	1,084.1	-	-	-	-	
								C1-12-4	937.0	-	937.0	-	-	-	-	
								C1-12-5	984.7	-	984.7	-	-	-	-	
								C1-12-6	985.6	-	985.6	-	-	-	-	
일상1	C1-13	7,072.3	-	7,072.3	-	-	-	C1-13-1	1,271.1	-	1,271.1	-	-	-	-	
								C1-13-2	1,273.2	-	1,273.2	-	-	-	-	
								C1-13-3	1,273.0	-	1,273.0	-	-	-	-	
								C1-13-4	3,255.0	-	3,255.0	-	-	-	-	
일상1	C1-14	4,973.1	-	4,973.1	-	-	-	C1-14-1	2,486.6	-	2,486.6	-	-	-	-	
								C1-14-2	2,486.5	-	2,486.5	-	-	-	-	
일상1	C1-15	5,600.3	-	5,600.3	-	-	-	C1-15-1	1,469.3	-	1,469.3	-	-	-	-	
								C1-15-2	1,469.4	-	1,469.4	-	-	-	-	
								C1-15-3	1,330.3	-	1,330.3	-	-	-	-	
								C1-15-4	1,331.3	-	1,331.3	-	-	-	-	
일상1	C1-16	1,024.1	-	1,024.1	-	-	-	C1-16-1	1,024.1	-	1,024.1	-	-	-	-	
일상1	C1-17	1,529.1	-	1,529.1	-	-	-	C1-17-1	764.6	-	764.6	-	-	-	-	
								C1-17-2	764.5	-	764.5	-	-	-	-	
일상1	C1-18	2,752.3	-	2,752.3	-	-	-	C1-18-1	687.6	-	687.6	-	-	-	-	
								C1-18-2	688.7	-	688.7	-	-	-	-	
								C1-18-3	688.5	-	688.5	-	-	-	-	
								C1-18-4	687.5	-	687.5	-	-	-	-	
일상1	C1-19	4,543.0	-	4,543.0	-	-	-	C1-19-1	1,515.2	-	1,515.2	-	-	-	-	
								C1-19-2	1,513.8	-	1,513.8	-	-	-	-	
								C1-19-3	1,514.0	-	1,514.0	-	-	-	-	
일상1	C1-20	14,033.8	-	14,033.8	-	-	-	C1-20-1	14,033.8	-	14,033.8	-	-	-	-	
근상1	C2-1	3,738.2	-	3,738.2	-	-	-	C2-1-1	925.5	-	925.5	-	-	-	-	
								C2-1-2	925.2	-	925.2	-	-	-	-	
								C2-1-3	944.5	-	944.5	-	-	-	-	
								C2-1-4	943.0	-	943.0	-	-	-	-	
근상1	C2-2	3,147.0	-	3,147.0	-	-	-	C2-2-1	788.3	-	788.3	-	-	-	-	
								C2-2-2	786.8	-	786.8	-	-	-	-	
								C2-2-3	786.1	-	786.1	-	-	-	-	
								C2-2-4	785.8	-	785.8	-	-	-	-	
근상2	C3-1	4,749.5	-	4,749.5	-	-	-	C3-1-1	1,666.0	-	1,666.0	-	-	-	-	
								C3-1-2	1,526.5	-	1,526.5	-	-	-	-	
								C3-1-3	1,557.0	-	1,557.0	-	-	-	-	
근상2	C3-2	4,780.4	-	4,780.4	-	-	-	C3-2-1	1,517.9	-	1,517.9	-	-	-	-	
								C3-2-2	1,552.2	-	1,552.2	-	-	-	-	
								C3-2-3	1,710.3	-	1,710.3	-	-	-	-	
근상2	C3-3	4,397.1	-	4,397.1	-	-	-	C3-3-1	4,397.1	-	4,397.1	-	-	-	-	
근상2	C3-4	3,289.6	-	3,289.6	-	-	-	C3-4-1	3,289.6	-	3,289.6	-	-	-	-	
근상2	C3-5	5,012.3	-	-	5,012.3	-	-	C3-5-1	5,012.3	-	-	5,012.3	-	-	-	
근상2	C3-6	3,648.5	-	-	3,648.5	-	-	C3-6-1	3,648.5	-	-	3,648.5	-	-	-	
근상2	C3-7	3,102.7	-	-	3,102.7	-	-	C3-7-1	1,425.3	-	-	1,425.3	-	-	-	
								C3-7-2	1,677.4	-	-	1,677.4	-	-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근상2	C3-8	2,986.2	-	-	2,986.2	-	-	-	C3-8-1	1,677.1	-	-	1,677.1	-	-	-
									C3-8-2	1,309.1	-	-	1,309.1	-	-	-
수상1	C4-1	1,344.0	-	-	1,344.0	-	-	-	C4-1	1,344.0	-	-	1,344.0	-	-	-
수상1	C4-2	2,962.7	-	-	2,962.7	-	-	-	C4-2-1	1,473.5	-	-	1,473.5	-	-	-
									C4-2-2	1,489.2	-	-	1,489.2	-	-	-
수상1	C4-3	2,092.1	-	-	2,092.1	-	-	-	C4-3	2,092.1	-	-	2,092.1	-	-	-
수상1	C4-4	4,865.7	-	-	4,865.7	-	-	-	C4-4-1	1,619.8	-	-	1,619.8	-	-	-
									C4-4-2	1,621.7	-	-	1,621.7	-	-	-
									C4-4-3	1,624.2	-	-	1,624.2	-	-	-
수상1	C4-5	2,213.3	-	-	2,213.3	-	-	-	C4-5-1	1,085.9	-	-	1,085.9	-	-	-
									C4-5-2	1,127.4	-	-	1,127.4	-	-	-
수상1	C4-6	3,020.1	-	-	3,020.1	-	-	-	C4-6-1	1,502.4	-	-	1,502.4	-	-	-
									C4-6-2	1,517.7	-	-	1,517.7	-	-	-
수상1	C4-7	2,229.2	-	-	2,229.2	-	-	-	C4-7-1	1,113.7	-	-	1,113.7	-	-	-
									C4-7-2	1,115.5	-	-	1,115.5	-	-	-
수상1	C4-8	3,625.0	-	-	3,625.0	-	-	-	C4-8-1	857.0	-	-	857.0	-	-	-
									C4-8-2	1,585.2	-	-	1,585.2	-	-	-
									C4-8-3	1,182.8	-	-	1,182.8	-	-	-
수상1	C4-9	3,727.6	-	-	3,727.6	-	-	-	C4-9-1	984.5	-	-	984.5	-	-	-
									C4-9-2	1,216.6	-	-	1,216.6	-	-	-
									C4-9-3	1,526.5	-	-	1,526.5	-	-	-
수상1	C4-10	1,765.8	-	-	1,765.8	-	-	-	C4-10-1	863.3	-	-	863.3	-	-	-
									C4-10-2	902.5	-	-	902.5	-	-	-
수상1	C4-11	2,203.3	-	-	2,203.3	-	-	-	C4-11-1	1,135.6	-	-	1,135.6	-	-	-
									C4-11-2	1,067.7	-	-	1,067.7	-	-	-
수상1	C4-12	1,266.5	-	-	1,266.5	-	-	-	C4-12	1,266.5	-	-	1,266.5	-	-	-
수상1	C4-13	2,134.9	-	-	2,134.9	-	-	-	C4-13-1	1,097.6	-	-	1,097.6	-	-	-
									C4-13-2	1,037.3	-	-	1,037.3	-	-	-
수상1	C4-14	1,449.4	-	-	1,449.4	-	-	-	C4-14	1,449.4	-	-	1,449.4	-	-	-
수상2	C5-1	1,174.0	-	1,174.0	-	-	-	-	C5-1	1,174.0	-	1,174.0	-	-	-	-
수상2	C5-2	1,030.9	-	1,030.9	-	-	-	-	C5-2	1,030.9	-	1,030.9	-	-	-	-
수상2	C5-3	1,146.7	-	-	1,146.7	-	-	-	C5-3	1,146.7	-	-	1,146.7	-	-	-
수상2	C5-4	1,028.3	-	-	1,028.3	-	-	-	C5-4	1,028.3	-	-	1,028.3	-	-	-
수상2	C5-5	2,351.1	-	-	2,351.1	-	-	-	C5-5-1	1,175.0	-	-	1,175.0	-	-	-
									C5-5-2	1,176.1	-	-	1,176.1	-	-	-
수상2	C5-6	949.4	-	-	949.4	-	-	-	C5-6	949.4	-	-	949.4	-	-	-
수상3	C6-1	1,692.8	-	-	1,692.8	-	-	-	C6-1	1,692.8	-	-	1,692.8	-	-	-
수상3	C6-2	2,038.1	-	-	2,038.1	-	-	-	C6-2	2,038.1	-	-	2,038.1	-	-	-
수상3	C6-3	1,089.6	-	-	1,089.6	-	-	-	C6-3	1,089.6	-	-	1,089.6	-	-	-
수상3	C6-4	808.0	-	-	808.0	-	-	-	C6-4	808.0	-	-	808.0	-	-	-
수상3	C6-5	1,066.4	-	-	1,066.4	-	-	-	C6-5	1,066.4	-	-	1,066.4	-	-	-
업무1	B1-1	5,302.7	-	5,302.7	-	-	-	-	B1-1-1	2,254.5	-	2,254.5	-	-	-	-
									B1-1-2	3,048.2	-	3,048.2	-	-	-	-
업무1	B1-2	4,512.2	-	4,512.2	-	-	-	-	B1-2-1	1,504.1	-	1,504.1	-	-	-	-
									B1-2-2	1,504.0	-	1,504.0	-	-	-	-
									B1-2-3	1,504.1	-	1,504.1	-	-	-	-
업무1	B1-3	7,690.5	-	7,690.5	-	-	-	-	B1-3-1	1,746.6	-	1,746.6	-	-	-	-
									B1-3-2	1,746.7	-	1,746.7	-	-	-	-
									B1-3-3	1,746.6	-	1,746.6	-	-	-	-
									B1-3-4	2,450.6	-	2,450.6	-	-	-	-
업무1	B1-4	1,452.2	-	1,452.2	-	-	-	-	B1-4-1	1,452.2	-	1,452.2	-	-	-	-
업무2	B2-2	8,234.4	8,234.4	-	-	-	-	-	B2-2-1	2,442.2	2,442.2	-	-	-	-	-
									B2-2-2	2,857.0	2,857.0	-	-	-	-	-
									B2-2-3	2,935.2	2,935.2	-	-	-	-	-
업무2	B2-3	6,100.8	6,100.8	-	-	-	-	-	B2-3-1	3,044.9	3,044.9	-	-	-	-	-
									B2-3-2	3,055.9	3,055.9	-	-	-	-	-
업무2	B2-4	15,806.6	15,806.6	-	-	-	-	-	B2-4-1	5,358.0	5,358.0	-	-	-	-	-
									B2-4-2	5,433.2	5,433.2	-	-	-	-	-
									B2-4-3	5,015.4	5,015.4	-	-	-	-	-
업무3	B2-1	19,378.8	-	-	19,378.8	-	-	-	B2-1-1	3,243.6	-	-	3,243.6	-	-	-
									B2-1-2	3,193.4	-	-	3,193.4	-	-	-
									B2-1-3	3,134.7	-	-	3,134.7	-	-	-
									B2-1-4	4,932.8	-	-	4,932.8	-	-	-
									B2-1-5	4,874.3	-	-	4,874.3	-	-	-
업무4	B2-5	9,747.9	-	9,747.9	-	-	-	-	B2-5-1	2,751.2	-	2,751.2	-	-	-	-
									B2-5-2	6,996.7	-	6,996.7	-	-	-	-
업무5	B2-6	3,397.9	-	-	-	-	3,397.9	-	B2-6-1	1,699.0	-	-	-	-	1,699.0	-
									B2-6-2	1,698.9	-	-	-	-	1,698.9	-
업무5	B2-7	1,736.1	-	-	-	-	1,736.1	-	B2-7-1	1,736.1	-	-	-	-	1,736.1	-
업무5	B2-8	1,762.0	-	-	-	-	1,762.0	-	B2-8-1	1,762.0	-	-	-	-	1,762.0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업무5	B2-9	6,396.1	-	-	-	-	6,396.1	-	B2-9-1	3,198.1	-	-	-	-	3,198.1
									B2-9-2	3,198.0	-	-	-	-	3,198.0
소방서1	소방서1	8,678.5	8,678.5	-	-	-	-	-	소방서1	8,678.5	8,678.5	-	-	-	-
소파1	소파1	1,447.9	-	1,447.9	-	-	-	-	소파1	1,447.9	-	1,447.9	-	-	-
소파2	소파2	1,183.0	-	-	-	-	-	1,183.0	소파2	1,183.0	-	-	-	-	1,183.0
우체1	우체1	8,293.1	-	8,293.1	-	-	-	-	우체1	8,293.1	-	8,293.1	-	-	-
우체2	우체2	1,016.7	-	-	1,016.7	-	-	-	우체2	1,016.7	-	-	1,016.7	-	-
전화1	전화1	820.0	-	820.0	-	-	-	-	전화1	820.0	-	820.0	-	-	-
전화2	전화2	593.6	-	-	593.6	-	-	-	전화2	593.6	-	-	593.6	-	-
경찰1	경찰1	10,019.2	10,019.2	-	-	-	-	-	경찰1	10,019.2	10,019.2	-	-	-	-
파출1	파출1	1,035.2	1,035.2	-	-	-	-	-	파출1	1,035.2	1,035.2	-	-	-	-
파출2	파출2	1,194.8	-	1,194.8	-	-	-	-	파출2	1,194.8	-	1,194.8	-	-	-
동1	동1	2,000.0	2,000.0	-	-	-	-	-	동1	2,000.0	2,000.0	-	-	-	-
동2	동2	1,998.6	-	-	1,998.6	-	-	-	동2	1,998.6	-	-	1,998.6	-	-
동3	동3	1,929.2	-	-	1,929.2	-	-	-	동3	1,929.2	-	-	1,929.2	-	-
동4	동4	2,001.6	2,001.6	-	-	-	-	-	동4	2,001.6	2,001.6	-	-	-	-
보건1	보건1	3,572.0	-	-	-	-	-	3,572.0	보건1	3,572.0	-	-	-	-	3,572.0

■ 변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변경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417,292.3	53,876.3	176,125.5	170,443.4	-	13,292.1	3,555.0	176획지	417,292.3	53,876.3	176,125.5	170,443.4	-	13,292.1	3,555.0
주상1	Cc-1	21,299.8	-	-	21,299.8	-	-	-	Cc-1	21,299.8	-	-	21,299.8	-	-	-
주상1	Cc-3	32,293.0	-	-	32,293.0	-	-	-	Cc-3	32,293.0	-	-	32,293.0	-	-	-
주상2	Cc-5	30,114.0	-	-	30,114.0	-	-	-	Cc-5	30,114.0	-	-	30,114.0	-	-	-
일상1	C1-1	8,138.7	-	8,138.7	-	-	-	-	C1-1-1	1,357.6	-	1,357.6	-	-	-	-
									C1-1-2	1,357.5	-	1,357.5	-	-	-	-
									C1-1-3	2,710.6	-	2,710.6	-	-	-	-
									C1-1-4	1,356.4	-	1,356.4	-	-	-	-
									C1-1-5	1,356.6	-	1,356.6	-	-	-	-
일상1	C1-2	5,425.7	-	5,425.7	-	-	-	-	C1-2-1	1,356.4	-	1,356.4	-	-	-	-
									C1-2-2	1,356.5	-	1,356.5	-	-	-	-
									C1-2-3	1,356.5	-	1,356.5	-	-	-	-
									C1-2-4	1,356.3	-	1,356.3	-	-	-	-
일상1	C1-3	8,124.5	-	8,124.5	-	-	-	-	C1-3-1	812.9	-	812.9	-	-	-	-
									C1-3-2	812.6	-	812.6	-	-	-	-
									C1-3-3	812.6	-	812.6	-	-	-	-
									C1-3-4	812.8	-	812.8	-	-	-	-
									C1-3-5	812.1	-	812.1	-	-	-	-
									C1-3-6	810.1	-	810.1	-	-	-	-
									C1-3-7	813.1	-	813.1	-	-	-	-
									C1-3-8	812.9	-	812.9	-	-	-	-
									C1-3-9	812.7	-	812.7	-	-	-	-
									C1-3-10	812.7	-	812.7	-	-	-	-
일상1	C1-4	4,094.5	-	4,094.5	-	-	-	-	C1-4-1	2,047.1	-	2,047.1	-	-	-	-
									C1-4-2	2,047.4	-	2,047.4	-	-	-	-
일상1	C1-5	5,357.4	-	5,357.4	-	-	-	-	C1-5-1	1,785.8	-	1,785.8	-	-	-	-
									C1-5-2	1,786.5	-	1,786.5	-	-	-	-
									C1-5-3	1,785.1	-	1,785.1	-	-	-	-
일상1	C1-6	5,574.0	-	5,574.0	-	-	-	-	C1-6-1	2,787.2	-	2,787.2	-	-	-	-
									C1-6-2	2,786.8	-	2,786.8	-	-	-	-
일상1	C1-7	8,137.5	-	8,137.5	-	-	-	-	C1-7-1	2,712.6	-	2,712.6	-	-	-	-
									C1-7-2	2,712.5	-	2,712.5	-	-	-	-
									C1-7-3	2,712.4	-	2,712.4	-	-	-	-
일상1	C1-8	2,628.8	-	2,628.8	-	-	-	-	C1-8-1	1,314.4	-	1,314.4	-	-	-	-
									C1-8-2	1,314.4	-	1,314.4	-	-	-	-
일상1	C1-9	2,526.7	-	2,526.7	-	-	-	-	C1-9-1	1,263.3	-	1,263.3	-	-	-	-
									C1-9-2	1,263.4	-	1,263.4	-	-	-	-
일상1	C1-10	5,300.8	-	5,300.8	-	-	-	-	C1-10-1	1,766.1	-	1,766.1	-	-	-	-
									C1-10-2	1,767.4	-	1,767.4	-	-	-	-
									C1-10-3	1,767.3	-	1,767.3	-	-	-	-
일상1	C1-11	6,565.3	-	6,565.3	-	-	-	-	C1-11-1	1,641.4	-	1,641.4	-	-	-	-
									C1-11-2	1,641.5	-	1,641.5	-	-	-	-
									C1-11-3	1,641.3	-	1,641.3	-	-	-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회지								비고
		변경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일상1	C1-12	5,955.6	-	5,955.6	-	-	-	-	C1-11-4	1,641.1	-	1,641.1	-	-	-	-	
									C1-12-1	979.3	-	979.3	-	-	-	-	
									C1-12-2	984.9	-	984.9	-	-	-	-	
									C1-12-3	1,084.1	-	1,084.1	-	-	-	-	
									C1-12-4	937.0	-	937.0	-	-	-	-	
									C1-12-5	984.7	-	984.7	-	-	-	-	
일상1	C1-13	7,072.3	-	7,072.3	-	-	-	-	C1-12-6	985.6	-	985.6	-	-	-	-	
									C1-13-1	1,271.1	-	1,271.1	-	-	-	-	
									C1-13-2	1,273.2	-	1,273.2	-	-	-	-	
									C1-13-3	1,273.0	-	1,273.0	-	-	-	-	
									C1-13-4	3,255.0	-	3,255.0	-	-	-	-	
일상1	C1-14	4,973.1	-	4,973.1	-	-	-	-	C1-14-1	2,486.6	-	2,486.6	-	-	-	-	
									C1-14-2	2,486.5	-	2,486.5	-	-	-	-	
일상1	C1-15	5,600.3	-	5,600.3	-	-	-	-	C1-15-1	1,469.3	-	1,469.3	-	-	-	-	
									C1-15-2	1,469.4	-	1,469.4	-	-	-	-	
									C1-15-3	1,330.3	-	1,330.3	-	-	-	-	
									C1-15-4	1,331.3	-	1,331.3	-	-	-	-	
일상1	C1-16	1,024.1	-	1,024.1	-	-	-	-	C1-16-1	1,024.1	-	1,024.1	-	-	-	-	
일상1	C1-17	1,529.1	-	1,529.1	-	-	-	-	C1-17-1	764.6	-	764.6	-	-	-	-	
									C1-17-2	764.5	-	764.5	-	-	-	-	
일상1	C1-18	2,752.3	-	2,752.3	-	-	-	-	C1-18-1	687.6	-	687.6	-	-	-	-	
									C1-18-2	688.7	-	688.7	-	-	-	-	
									C1-18-3	688.5	-	688.5	-	-	-	-	
									C1-18-4	687.5	-	687.5	-	-	-	-	
일상1	C1-19	4,543.0	-	4,543.0	-	-	-	-	C1-19-1	1,515.2	-	1,515.2	-	-	-	-	
									C1-19-2	1,513.8	-	1,513.8	-	-	-	-	
									C1-19-3	1,514.0	-	1,514.0	-	-	-	-	
일상1	C1-20	14,033.8	-	14,033.8	-	-	-	-	C1-20-1	14,033.8	-	14,033.8	-	-	-	-	
근상1	C2-1	3,738.2	-	3,738.2	-	-	-	-	C2-1-1	925.5	-	925.5	-	-	-	-	
									C2-1-2	925.2	-	925.2	-	-	-	-	
									C2-1-3	944.5	-	944.5	-	-	-	-	
									C2-1-4	943.0	-	943.0	-	-	-	-	
근상1	C2-2	3,147.0	-	3,147.0	-	-	-	-	C2-2-1	788.3	-	788.3	-	-	-	-	
									C2-2-2	786.8	-	786.8	-	-	-	-	
									C2-2-3	786.1	-	786.1	-	-	-	-	
									C2-2-4	785.8	-	785.8	-	-	-	-	
근상2	C3-1	4,749.5	-	4,749.5	-	-	-	-	C3-1-1	1,666.0	-	1,666.0	-	-	-	-	
									C3-1-2	1,526.5	-	1,526.5	-	-	-	-	
									C3-1-3	1,557.0	-	1,557.0	-	-	-	-	
근상2	C3-2	4,780.4	-	4,780.4	-	-	-	-	C3-2-1	1,517.9	-	1,517.9	-	-	-	-	
									C3-2-2	1,552.2	-	1,552.2	-	-	-	-	
									C3-2-3	1,710.3	-	1,710.3	-	-	-	-	
근상2	C3-3	4,397.1	-	4,397.1	-	-	-	-	C3-3-1	4,397.1	-	4,397.1	-	-	-	-	
근상2	C3-4	3,289.6	-	3,289.6	-	-	-	-	C3-4-1	3,289.6	-	3,289.6	-	-	-	-	
근상2	C3-5	5,012.3	-	-	5,012.3	-	-	-	C3-5-1	5,012.3	-	-	5,012.3	-	-	-	
근상2	C3-6	3,648.5	-	-	3,648.5	-	-	-	C3-6-1	3,648.5	-	-	3,648.5	-	-	-	
근상2	C3-7	3,102.7	-	-	3,102.7	-	-	-	C3-7-1	1,425.3	-	-	1,425.3	-	-	-	
									C3-7-2	1,677.4	-	-	1,677.4	-	-	-	
근상2	C3-8	2,986.2	-	-	2,986.2	-	-	-	C3-8-1	1,677.1	-	-	1,677.1	-	-	-	
									C3-8-2	1,309.1	-	-	1,309.1	-	-	-	
수상1	C4-1	1,344.0	-	-	1,344.0	-	-	-	C4-1	1,344.0	-	-	1,344.0	-	-	-	
수상1	C4-2	2,962.7	-	-	2,962.7	-	-	-	C4-2-1	1,473.5	-	-	1,473.5	-	-	-	
									C4-2-2	1,489.2	-	-	1,489.2	-	-	-	
수상1	C4-3	2,092.1	-	-	2,092.1	-	-	-	C4-3	2,092.1	-	-	2,092.1	-	-	-	
수상1	C4-4	4,865.7	-	-	4,865.7	-	-	-	C4-4-1	1,619.8	-	-	1,619.8	-	-	-	
									C4-4-2	1,621.7	-	-	1,621.7	-	-	-	
									C4-4-3	1,624.2	-	-	1,624.2	-	-	-	
									C4-4-4	1,621.7	-	-	1,621.7	-	-	-	
수상1	C4-5	2,213.3	-	-	2,213.3	-	-	-	C4-5-1	1,085.9	-	-	1,085.9	-	-	-	
									C4-5-2	1,127.4	-	-	1,127.4	-	-	-	
수상1	C4-6	3,020.1	-	-	3,020.1	-	-	-	C4-6-1	1,502.4	-	-	1,502.4	-	-	-	
									C4-6-2	1,517.7	-	-	1,517.7	-	-	-	
수상1	C4-7	2,229.2	-	-	2,229.2	-	-	-	C4-7-1	1,113.7	-	-	1,113.7	-	-	-	
									C4-7-2	1,115.5	-	-	1,115.5	-	-	-	
수상1	C4-8	3,625.0	-	-	3,625.0	-	-	-	C4-8-1	857.0	-	-	857.0	-	-	-	
									C4-8-2	1,585.2	-	-	1,585.2	-	-	-	
									C4-8-3	1,182.8	-	-	1,182.8	-	-	-	
수상1	C4-9	3,727.6	-	-	3,727.6	-	-	-	C4-9-1	984.5	-	-	984.5	-	-	-	
									C4-9-2	1,216.6	-	-	1,216.6	-	-	-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적(m ²)						회지								비고
		변경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수상1	C4-10	1,765.8	-	-	1,765.8	-	-	C4-9-3	1,526.5	-	-	1,526.5	-	-	-	
								C4-10-1	863.3	-	-	863.3	-	-	-	
수상1	C4-11	2,203.3	-	-	2,203.3	-	-	C4-10-2	902.5	-	-	902.5	-	-	-	
								C4-11-1	1,135.6	-	-	1,135.6	-	-	-	
수상1	C4-12	1,266.5	-	-	1,266.5	-	-	C4-11-2	1,067.7	-	-	1,067.7	-	-	-	
								C4-12	1,266.5	-	-	1,266.5	-	-	-	
수상1	C4-13	2,134.9	-	-	2,134.9	-	-	C4-13-1	1,097.6	-	-	1,097.6	-	-	-	
								C4-13-2	1,037.3	-	-	1,037.3	-	-	-	
수상1	C4-14	1,449.4	-	-	1,449.4	-	-	C4-14	1,449.4	-	-	1,449.4	-	-	-	
수상2	C5-1	1,174.0	-	1,174.0	-	-	-	C5-1	1,174.0	-	1,174.0	-	-	-	-	
수상2	C5-2	1,030.9	-	1,030.9	-	-	-	C5-2	1,030.9	-	1,030.9	-	-	-	-	
수상2	C5-3	1,146.7	-	-	1,146.7	-	-	C5-3	1,146.7	-	-	1,146.7	-	-	-	
수상2	C5-4	1,028.3	-	-	1,028.3	-	-	C5-4	1,028.3	-	-	1,028.3	-	-	-	
수상2	C5-5	2,351.1	-	-	2,351.1	-	-	C5-5-1	1,175.0	-	-	1,175.0	-	-	-	
								C5-5-2	1,176.1	-	-	1,176.1	-	-	-	
수상2	C5-6	949.4	-	-	949.4	-	-	C5-6	949.4	-	-	949.4	-	-	-	
수상3	C6-1	1,692.8	-	-	1,692.8	-	-	C6-1	1,692.8	-	-	1,692.8	-	-	-	
수상3	C6-2	2,038.1	-	-	2,038.1	-	-	C6-2	2,038.1	-	-	2,038.1	-	-	-	
수상3	C6-3	1,089.6	-	-	1,089.6	-	-	C6-3	1,089.6	-	-	1,089.6	-	-	-	
수상3	C6-4	808.0	-	-	808.0	-	-	C6-4	808.0	-	-	808.0	-	-	-	
수상3	C6-5	1,066.4	-	-	1,066.4	-	-	C6-5	1,066.4	-	-	1,066.4	-	-	-	
업무1	B1-1	5,302.7	-	5,302.7	-	-	-	B1-1-1	2,254.5	-	2,254.5	-	-	-	-	
								B1-1-2	3,048.2	-	3,048.2	-	-	-	-	
업무1	B1-2	4,512.2	-	4,512.2	-	-	-	B1-2-1	1,504.1	-	1,504.1	-	-	-	-	
								B1-2-2	1,504.0	-	1,504.0	-	-	-	-	
업무1	B1-3	7,690.5	-	7,690.5	-	-	-	B1-2-3	1,504.1	-	1,504.1	-	-	-	-	
								B1-3-1	1,746.6	-	1,746.6	-	-	-	-	
업무1	B1-4	1,452.2	-	1,452.2	-	-	-	B1-3-2	1,746.7	-	1,746.7	-	-	-	-	
								B1-3-3	1,746.6	-	1,746.6	-	-	-	-	
업무2	B2-2	8,234.4	8,234.4	-	-	-	-	B1-3-4	2,450.6	-	2,450.6	-	-	-	-	
								B1-4-1	1,452.2	-	1,452.2	-	-	-	-	
업무2	B2-3	6,100.8	6,100.8	-	-	-	-	B2-2-1	2,442.2	2,442.2	-	-	-	-	-	
								B2-2-2	2,857.0	2,857.0	-	-	-	-	-	
업무2	B2-4	15,806.6	15,806.6	-	-	-	-	B2-2-3	2,935.2	2,935.2	-	-	-	-	-	
								B2-3-1	3,044.9	3,044.9	-	-	-	-	-	
업무3	B2-1	19,378.8	-	-	19,378.8	-	-	B2-3-2	3,055.9	3,055.9	-	-	-	-	-	
								B2-4-1	5,358.0	5,358.0	-	-	-	-	-	
업무4	B2-5	9,747.9	-	9,747.9	-	-	-	B2-4-2	5,433.2	5,433.2	-	-	-	-	-	
								B2-4-3	5,015.4	5,015.4	-	-	-	-	-	
업무5	B2-6	3,397.9	-	-	-	-	3,397.9	B2-1-1	3,243.6	-	-	3,243.6	-	-	-	
								B2-1-2	3,193.4	-	-	3,193.4	-	-	-	
업무5	B2-7	1,736.1	-	-	-	-	1,736.1	B2-1-3	3,134.7	-	-	3,134.7	-	-	-	
								B2-1-4	4,932.8	-	-	4,932.8	-	-	-	
업무5	B2-8	1,762.0	-	-	-	-	1,762.0	B2-1-5	4,874.3	-	-	4,874.3	-	-	-	
								B2-5-1	2,751.2	-	2,751.2	-	-	-	-	
업무5	B2-9	6,396.1	-	-	-	-	6,396.1	B2-5-2	6,996.7	-	6,996.7	-	-	-	-	
								B2-6-1	1,699.0	-	-	-	-	1,699.0	-	
소방서1	소방서1	8,678.5	8,678.5	-	-	-	-	B2-6-2	1,698.9	-	-	-	-	1,698.9	-	
								B2-7-1	1,736.1	-	-	-	-	1,736.1	-	
소파1	소파1	1,447.9	-	1,447.9	-	-	-	B2-8-1	1,762.0	-	-	-	1,762.0	-		
우체1	우체1	8,293.1	-	8,293.1	-	-	-	B2-9-1	3,198.1	-	-	-	3,198.1	-		
우체2	우체2	1,016.7	-	-	1,016.7	-	-	B2-9-2	3,198.0	-	-	-	3,198.0	-		
전화1	전화1	820.0	-	820.0	-	-	-	소방서1	8,678.5	8,678.5	-	-	-	-		
전화2	전화2	593.6	-	-	593.6	-	-	소파1	1,447.9	-	1,447.9	-	-	-		
경찰1	경찰1	10,019.2	10,019.2	-	-	-	-	우체1	8,293.1	-	8,293.1	-	-	-		
파출1	파출1	1,035.2	1,035.2	-	-	-	-	우체2	1,016.7	-	-	1,016.7	-	-		
파출2	파출2	1,194.8	-	1,194.8	-	-	-	전화1	820.0	-	820.0	-	-	-		
동1	동1	2,000.0	2,000.0	-	-	-	-	전화2	593.6	-	-	593.6	-	-		
동2	동2	1,998.6	-	-	1,998.6	-	-	경찰1	10,019.2	10,019.2	-	-	-	-		
동3	동3	1,929.2	-	-	1,929.2	-	-	파출1	1,035.2	1,035.2	-	-	-	-		
동4	동4	2,001.6	2,001.6	-	-	-	-	파출2	1,194.8	-	1,194.8	-	-	-		
보건1	보건1	3,555.0	-	-	-	-	3,555.0	동1	2,000.0	2,000.0	-	-	-	-		
								동2	1,998.6	-	-	1,998.6	-	-	-	
								동3	1,929.2	-	-	1,929.2	-	-	-	
								동4	2,001.6	2,001.6	-	-	-	-	-	
								보건1	3,555.0	-	-	-	-	-	3,555.0	

바. 도시지원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사. 자족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123,373.0	-	-	-	-	-	123,373	38획지	123,373.0	-	-	-	-	-	123,373.0
자족시설1	MS-1	6,685.0	-	-	-	-	-	6,685	MS-1-1	2,174.0	-	-	-	-	-	2,174
									MS-1-2	2,764.0	-	-	-	-	-	2,764
									MS-1-3	1,747.0	-	-	-	-	-	1,747
자족시설1	MS-2	8,887.0	-	-	-	-	-	8,887	MS-2-1	3,135.0	-	-	-	-	-	3,135
									MS-2-2	1,981.0	-	-	-	-	-	1,981
									MS-2-3	1,257.0	-	-	-	-	-	1,257
									MS-2-4	1,257.0	-	-	-	-	-	1,257
									MS-2-5	1,257.0	-	-	-	-	-	1,257
자족시설1	MS-3	2,482.0	-	-	-	-	-	2,482	MS-3-1	1,260.0	-	-	-	-	-	1,260
									MS-3-2	1,222.0	-	-	-	-	-	1,222
자족시설1	MS-4	8,284.0	-	-	-	-	-	8,284	MS-4-1	3,405.0	-	-	-	-	-	3,405
									MS-4-2	2,440.0	-	-	-	-	-	2,440
									MS-4-3	2,439.0	-	-	-	-	-	2,439
자족시설1	MS-5	2,490.0	-	-	-	-	-	2,490	MS-5-1	1,400.0	-	-	-	-	-	1,400
									MS-5-2	1,090.0	-	-	-	-	-	1,090
자족시설1	MS-6	8,783.0	-	-	-	-	-	8,783	MS-6-1	1,682.0	-	-	-	-	-	1,682
									MS-6-2	1,372.0	-	-	-	-	-	1,372
									MS-6-3	5,729.0	-	-	-	-	-	5,729
자족시설1	MS-7	16,387.0	-	-	-	-	-	16,387	MS-7-1	2,372.0	-	-	-	-	-	2,372
									MS-7-2	2,372.0	-	-	-	-	-	2,372
									MS-7-3	2,372.0	-	-	-	-	-	2,372
									MS-7-4	2,372.0	-	-	-	-	-	2,372
									MS-7-5	2,495.0	-	-	-	-	-	2,495
									MS-7-6	2,202.0	-	-	-	-	-	2,202
									MS-7-7	2,202.0	-	-	-	-	-	2,202
자족시설1	MS-8	7,668.0	-	-	-	-	-	7,668	MS-8-1	2,040.0	-	-	-	-	-	2,040
									MS-8-2	2,150.0	-	-	-	-	-	2,150
									MS-8-3	1,739.0	-	-	-	-	-	1,739
									MS-8-4	1,739.0	-	-	-	-	-	1,739
자족시설1	MS-9	3,446.0	-	-	-	-	-	3,446	MS-9-1	1,723.0	-	-	-	-	-	1,723
									MS-9-2	1,723.0	-	-	-	-	-	1,723
자족시설1	MS-10	3,446.0	-	-	-	-	-	3,446	MS-10-1	1,723.0	-	-	-	-	-	1,723
									MS-10-2	1,723.0	-	-	-	-	-	1,723
자족시설1	MS-11	17,809.0	-	-	-	-	-	17,809	MS-11-1	2,005.0	-	-	-	-	-	2,005
									MS-11-2	2,005.0	-	-	-	-	-	2,005
									MS-11-3	13,799.0	-	-	-	-	-	13,799
자족시설1	MS-12	37,006.0	-	-	-	-	-	37,006	MS-12-1	7,462.0	-	-	-	-	-	7,462
									MS-12-2	29,544.0	-	-	-	-	-	29,544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변경							변경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253,828.2	-	-	-	-	-	253,828.2	44획지	253,828.2	-	-	-	-	-	253,828.2
자족시설1	MS-1	6,681.4	-	-	-	-	-	6,681.4	MS-1-1	2,173.7	-	-	-	-	-	2,173.7
									MS-1-2	2,761.4	-	-	-	-	-	2,761.4
									MS-1-3	1,746.3	-	-	-	-	-	1,746.3
자족시설1	MS-2	8,889.1	-	-	-	-	-	8,889.1	MS-2-1	3,133.9	-	-	-	-	-	3,133.9
									MS-2-2	1,982.1	-	-	-	-	-	1,982.1
									MS-2-3	1,257.7	-	-	-	-	-	1,257.7
									MS-2-4	1,257.7	-	-	-	-	-	1,257.7
									MS-2-5	1,257.7	-	-	-	-	-	1,257.7
자족시설1	MS-3	2,482.2	-	-	-	-	-	2,482.2	MS-3-1	1,260.0	-	-	-	-	-	1,260.0
									MS-3-2	1,222.2	-	-	-	-	-	1,222.2
자족시설1	MS-4	8,284.4	-	-	-	-	-	8,284.4	MS-4-1	3,405.0	-	-	-	-	-	3,405.0
									MS-4-2	2,440.0	-	-	-	-	-	2,440.0
									MS-4-3	2,439.4	-	-	-	-	-	2,439.4
자족시설1	MS-5	2,487.5	-	-	-	-	-	2,487.5	MS-5-1	1,398.7	-	-	-	-	-	1,398.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획지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MS-5-2	1,088.8	-	-	-	-	-	-	1,088.8	
자족시설1	MS-6	8,786.8	-	-	-	-	-	8,786.8	MS-6-1	1,684.3	-	-	-	-	-	1,684.3	
									MS-6-2	1,374.0	-	-	-	-	-	1,374.0	
									MS-6-3	5,728.5	-	-	-	-	-	5,728.5	
자족시설1	MS-7	16,387.0	-	-	-	-	-	16,387.0	MS-7-1	2,372.0	-	-	-	-	-	2,372.0	
									MS-7-2	2,372.0	-	-	-	-	-	2,372.0	
									MS-7-3	2,372.0	-	-	-	-	-	2,372.0	
									MS-7-4	2,372.0	-	-	-	-	-	2,372.0	
									MS-7-5	2,495.0	-	-	-	-	-	2,495.0	
									MS-7-6	2,202.0	-	-	-	-	-	2,202.0	
									MS-7-7	2,202.0	-	-	-	-	-	2,202.0	
자족시설1	MS-8	7,666.8	-	-	-	-	-	7,666.8	MS-8-1	2,037.6	-	-	-	-	-	2,037.6	
									MS-8-2	2,150.3	-	-	-	-	-	2,150.3	
									MS-8-3	1,739.5	-	-	-	-	-	1,739.5	
									MS-8-4	1,739.4	-	-	-	-	-	1,739.4	
자족시설1	MS-9	3,445.2	-	-	-	-	-	3,445.2	MS-9-1	1,722.5	-	-	-	-	-	1,722.5	
									MS-9-2	1,722.7	-	-	-	-	-	1,722.7	
자족시설1	MS-10	3,444.8	-	-	-	-	-	3,444.8	MS-10-1	1,722.5	-	-	-	-	-	1,722.5	
									MS-10-2	1,722.3	-	-	-	-	-	1,722.3	
자족시설1	MS-11	17,811.9	-	-	-	-	-	17,811.9	MS-11-1	2,005.2	-	-	-	-	-	2,005.2	
									MS-11-2	2,005.3	-	-	-	-	-	2,005.3	
									MS-11-3	13,801.4	-	-	-	-	-	13,801.4	
자족시설1	MS-12	36,995.4	-	-	-	-	-	36,995.4	MS-12-1	7,459.3	-	-	-	-	-	7,459.3	
									MS-12-2	29,536.1	-	-	-	-	-	29,536.1	
자족시설2	MS-13	13,824.9	-	-	-	-	-	13,824.9	MS-13-1	13,824.9	-	-	-	-	-	13,824.9	
자족시설2	MS-14	87,556.5	-	-	-	-	-	87,556.5	MS-14-1	29,402.7	-	-	-	-	-	29,402.7	
									MS-14-2	25,840.6	-	-	-	-	-	25,840.6	
									MS-14-3	12,464.8	-	-	-	-	-	12,464.8	
									MS-14-4	19,848.4	-	-	-	-	-	19,848.4	
자족시설2	MS-15	29,084.3	-	-	-	-	-	29,084.3	MS-15-1	29,084.3	-	-	-	-	-	29,084.3	

아. 농업관련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자. 공공건축물 (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기정						획지 기정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면적(m ²)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835,046.4	300,873.1	154,194.4	146,437.9	9,652.5	75,321.5	148,567.0	136 획지	835,046.4	300,873.1	154,194.4	146,437.9	9,652.5	75,321.5	148,567.0	
주1	주1	1,926.3	1,926.3	-	-	-	-	-	주1	1,926.3	1,926.3	-	-	-	-	-	
주2	주2	12,721.0	-	-	-	-	-	12,721.0	주2	12,721.0	-	-	-	-	-	12,721.0	
주3	주3	1,567.9	-	1,567.9	-	-	-	-	주3	1,567.9	-	1,567.9	-	-	-	-	
주4	주4	1,323.7	-	1,323.7	-	-	-	-	주4	1,323.7	-	1,323.7	-	-	-	-	
주5	주5	6,075.8	-	6,075.8	-	-	-	-	주5	6,075.8	-	6,075.8	-	-	-	-	
주6	주6	1,353.6	1,353.6	-	-	-	-	-	주6	1,353.6	1,353.6	-	-	-	-	-	
주7	주7	1,061.7	1,061.7	-	-	-	-	-	주7	1,061.7	1,061.7	-	-	-	-	-	
주8	주8	2,007.0	2,007.0	-	-	-	-	-	주8	2,007.0	2,007.0	-	-	-	-	-	
주9	주9	1,578.1	-	1,578.1	-	-	-	-	주9	1,578.1	-	1,578.1	-	-	-	-	
주10	주10	1,371.7	1,371.7	-	-	-	-	-	주10	1,371.7	1,371.7	-	-	-	-	-	
주11	주11	1,229.5	1,229.5	-	-	-	-	-	주11	1,229.5	1,229.5	-	-	-	-	-	
주12	주12	1,230.7	-	1,230.7	-	-	-	-	주12	1,230.7	-	1,230.7	-	-	-	-	
주13	주13	1,004.7	1,004.7	-	-	-	-	-	주13	1,004.7	1,004.7	-	-	-	-	-	
주14	주14	1,172.0	-	1,172.0	-	-	-	-	주14	1,172.0	-	1,172.0	-	-	-	-	
주15	주15	1,297.8	1,297.8	-	-	-	-	-	주15	1,297.8	1,297.8	-	-	-	-	-	
주16	주16	301.1	301.1	-	-	-	-	-	주16	301.1	301.1	-	-	-	-	-	
주17	주17	632.6	632.6	-	-	-	-	-	주17	632.6	632.6	-	-	-	-	-	
주18	주18	873.0	873.0	-	-	-	-	-	주18	873.0	873.0	-	-	-	-	-	
주19	주19	1,408.5	-	1,408.5	-	-	-	-	주19	1,408.5	-	1,408.5	-	-	-	-	
주20	주20	1,028.7	-	-	1,028.7	-	-	-	주20	1,028.7	-	-	1,028.7	-	-	-	
주21	주21	933.7	-	933.7	-	-	-	-	주21	933.7	-	933.7	-	-	-	-	
주24	주24	1,285.3	-	-	1,285.3	-	-	-	주24	1,285.3	-	-	1,285.3	-	-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위치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주25	주25	1,263.8	1,263.8	-	-	-	-	-	주25	1,263.8	1,263.8	-	-	-	-	-		
주26	주26	1,659.1	-	-	1,659.1	-	-	-	주26	1,659.1	-	-	1,659.1	-	-	-		
주27	주27	975.5	-	-	975.5	-	-	-	주27	975.5	-	-	975.5	-	-	-		
주28	주28	7,604.7	7,604.7	-	-	-	-	-	주28	7,604.7	7,604.7	-	-	-	-	-		
주29	주29	1,495.1	-	1,495.1	-	-	-	-	주29	1,495.1	-	1,495.1	-	-	-	-		
주30	주30	1,487.9	-	1,487.9	-	-	-	-	주30	1,487.9	-	1,487.9	-	-	-	-		
주31	주31	1,739.6	-	-	1,739.6	-	-	-	주31	1,739.6	-	-	1,739.6	-	-	-		
주32	주32	1,744.1	-	-	1,744.1	-	-	-	주32	1,744.1	-	-	1,744.1	-	-	-		
주33	주33	1,279.2	-	-	1,279.2	-	-	-	주33	1,279.2	-	-	1,279.2	-	-	-		
주34	주34	1,386.0	-	-	-	-	-	1,386.0	주34	1,386.0	-	-	-	-	-	1,386.0		
주35	주35	606.0	-	-	-	-	-	606.0	주35	606.0	-	-	-	-	-	606.0		
주36	주36	695.9	-	695.9	-	-	-	-	주36	695.9	-	695.9	-	-	-	-		
주37	주37	791.0	-	-	-	-	-	791.0	주37	791.0	-	-	-	-	-	791.0		
주38	주38	1,271.2	-	1,271.2	-	-	-	-	주38	1,271.2	-	1,271.2	-	-	-	-		
주39	주39	785.7	-	785.7	-	-	-	-	주39	785.7	-	785.7	-	-	-	-		
주40	주40	381.4	-	381.4	-	-	-	-	주40	381.4	-	381.4	-	-	-	-		
주41	주41	1,338.5	-	-	1,338.5	-	-	-	주41	1,338.5	-	-	1,338.5	-	-	-		
주45	주45	1,428.0	-	1,428.0	-	-	-	-	주45	1,428.0	-	1,428.0	-	-	-	-		
주46	주46	1,408.1	-	-	1,408.1	-	-	-	주46	1,408.1	-	-	1,408.1	-	-	-		
주47	주47	1,800.3	-	-	-	1,800.3	-	-	주47	1,800.3	-	-	-	1,800.3	-	-		
유1	유1	1,468.0	1,468.0	-	-	-	-	-	유1	1,468.0	1,468.0	-	-	-	-	-		
유2	유2	750.9	750.9	-	-	-	-	-	유2	750.9	750.9	-	-	-	-	-		
유3	유3	743.2	-	743.2	-	-	-	-	유3	743.2	-	743.2	-	-	-	-		
유5	유5	876.6	-	-	876.6	-	-	-	유5	876.6	-	-	876.6	-	-	-		
유6	유6	628.0	628.0	-	-	-	-	-	유6	628.0	628.0	-	-	-	-	-		
유8	유8	744.7	-	744.7	-	-	-	-	유8	744.7	-	744.7	-	-	-	-		
유9	유9	760.3	760.3	-	-	-	-	-	유9	760.3	760.3	-	-	-	-	-		
유10	유10	692.0	692.0	-	-	-	-	-	유10	692.0	692.0	-	-	-	-	-		
유11	유11	787.7	-	787.7	-	-	-	-	유11	787.7	-	787.7	-	-	-	-		
유12	유12	2,508.5	-	-	-	2,508.5	-	-	유12	2,508.5	-	-	-	2,508.5	-	-		
유13	유13	2,502.1	-	-	2,502.1	-	-	-	유13	2,502.1	-	-	2,502.1	-	-	-		
유14	유14	2,299.8	-	-	-	2,299.8	-	-	유14	2,299.8	-	-	-	2,299.8	-	-		
초1	초1	14,750.0	14,750.0	-	-	-	-	-	초1	14,750.0	14,750.0	-	-	-	-	-		
초2	초2	11,788.3	-	11,788.3	-	-	-	-	초2	11,788.3	-	11,788.3	-	-	-	-		
초3	초3	13,145.0	-	-	13,145.0	-	-	-	초3	13,145.0	-	-	13,145.0	-	-	-		
초4	초4	11,490.4	11,490.4	-	-	-	-	-	초4	11,490.4	11,490.4	-	-	-	-	-		
초5	초5	11,815.3	-	11,815.3	-	-	-	-	초5	11,815.3	-	11,815.3	-	-	-	-		
초6	초6	11,560.8	11,560.8	-	-	-	-	-	초6	11,560.8	11,560.8	-	-	-	-	-		
초7	초7	13,978.7	13,978.7	-	-	-	-	-	초7	13,978.7	13,978.7	-	-	-	-	-		
초8	초8	11,307.0	-	11,307.0	-	-	-	-	초8	11,307.0	-	11,307.0	-	-	-	-		
초9	초9	11,758.5	-	11,758.5	-	-	-	-	초9	11,758.5	-	11,758.5	-	-	-	-		
초10	초10	12,349.5	12,349.5	-	-	-	-	-	초10	12,349.5	12,349.5	-	-	-	-	-		
초11	초11	18,382.5	-	-	18,382.5	-	-	-	초11	18,382.5	-	-	18,382.5	-	-	-	운양초등학교	
초12	초12	11,725.5	-	11,725.5	-	-	-	-	초12	11,725.5	-	11,725.5	-	-	-	-		
초13	초13	23,613.6	23,613.6	-	-	-	-	-	초13	23,613.6	23,613.6	-	-	-	-	-	1952(고창초등학교)	
중1	중1	11,594.0	11,594.0	-	-	-	-	-	중1	11,594.0	11,594.0	-	-	-	-	-		
중2	중2	13,076.8	-	-	13,076.8	-	-	-	중2	13,076.8	-	-	13,076.8	-	-	-		
중3	중3	12,922.9	12,922.9	-	-	-	-	-	중3	12,922.9	12,922.9	-	-	-	-	-		
중4	중4	12,897.2	12,897.2	-	-	-	-	-	중4	12,897.2	12,897.2	-	-	-	-	-		
중5	중5	13,063.1	13,063.1	-	-	-	-	-	중5	13,063.1	13,063.1	-	-	-	-	-		
중6	중6	12,939.7	-	12,939.7	-	-	-	-	중6	12,939.7	-	12,939.7	-	-	-	-		
고1	고1	13,622.0	-	13,622.0	-	-	-	-	고1	13,622.0	-	13,622.0	-	-	-	-		
고2	고2	14,022.2	14,022.2	-	-	-	-	-	고2	14,022.2	14,022.2	-	-	-	-	-		
고3	고3	13,322.6	-	13,322.6	-	-	-	-	고3	13,322.6	-	13,322.6	-	-	-	-		
고4	고4	14,316.4	14,316.4	-	-	-	-	-	고4	14,316.4	14,316.4	-	-	-	-	-		
고5	고5	14,025.7	14,025.7	-	-	-	-	-	고5	14,025.7	14,025.7	-	-	-	-	-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기정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특1	특1	12,879.1	-	-	12,879.1	-	-	-	특1	12,879.1	-	-	12,879.1	-	-	-	
대1	대1	9,896.6	-	-	-	-	9,896.6	-	대1	9,896.6	-	-	-	-	9,896.6	-	
문1	문1	46,164.6	-	-	-	-	46,164.6	-	문1	46,164.6	-	-	-	-	46,164.6	-	
문2	문2	-	-	-	-	-	-	-	문2	-	-	-	-	-	-	-	
청1	청1	14,992.9	-	-	-	-	14,992.9	-	청1	14,992.9	-	-	-	-	14,992.9	-	
복2	복2	2,630.7	2,630.7	-	-	-	-	-	복2	2,630.7	2,630.7	-	-	-	-	-	
복3	복3	13,453.6	13,453.6	-	-	-	-	-	복3	13,453.6	13,453.6	-	-	-	-	-	
복4	복4	1,879.9	-	1,879.9	-	-	-	-	복4	1,879.9	-	1,879.9	-	-	-	-	
복5	복5	18,994.3	18,994.3	-	-	-	-	-	복5	18,994.3	18,994.3	-	-	-	-	-	
복6	복6	2,231.1	-	2,231.1	-	-	-	-	복6	2,231.1	-	2,231.1	-	-	-	-	
복7	복7	2,118.9	-	-	2,118.9	-	-	-	복7	2,118.9	-	-	2,118.9	-	-	-	
복8	복8	1,238.1	1,238.1	-	-	-	-	-	복8	1,238.1	1,238.1	-	-	-	-	-	
복9	복9	1,002.0	1,002.0	-	-	-	-	-	복9	1,002.0	1,002.0	-	-	-	-	-	
복10	복10	1,001.2	-	-	1,001.2	-	-	-	복10	1,001.2	-	-	1,001.2	-	-	-	
의1	의1	25,575.6	25,575.6	-	-	-	-	-	의1	25,575.6	25,575.6	-	-	-	-	-	
변1	변1	2,420.0	2,420.0	-	-	-	-	-	변1	2,420.0	2,420.0	-	-	-	-	-	
변2	변2	14,264.0	-	-	14,264.0	-	-	-	변2	14,264.0	-	-	14,264.0	-	-	-	
진기1	진기1	3,409.2	-	-	3,409.2	-	-	-	진기1	3,409.2	-	-	3,409.2	-	-	-	
열1	열1	3,547.3	-	-	3,547.3	-	-	-	열1	3,547.3	-	-	3,547.3	-	-	-	
방1	방1	2,830.2	2,830.2	-	-	-	-	-	방1	2,830.2	2,830.2	-	-	-	-	-	
폐1	폐1	24,272.7	-	-	24,272.7	-	-	-	폐1	24,272.7	-	-	24,272.7	-	-	-	
집2	집2	5,442.3	-	5,442.3	-	-	-	-	집2	5,442.3	-	5,442.3	-	-	-	-	
지1	지1	524.6	-	-	524.6	-	-	-	지1	524.6	-	-	524.6	-	-	-	
지2	지2	2,154.1	-	2,154.1	-	-	-	-	지2	2,154.1	-	2,154.1	-	-	-	-	
통1	통1	2,447.6	-	-	2,447.6	-	-	-	통1	2,447.6	-	-	2,447.6	-	-	-	
종2	종2	821.0	-	-	-	-	-	821.0	종2	821.0	-	-	-	-	-	821.0	
종3	종3	1,153.0	1,153.0	-	-	-	-	-	종3	1,153.0	1,153.0	-	-	-	-	-	
종6	종6	840.0	840.0	-	-	-	-	-	종6	840.0	840.0	-	-	-	-	-	
종7	종7	2,449.6	-	-	2,449.6	-	-	-	종7	2,449.6	-	-	2,449.6	-	-	-	
종8	종8	1,000.2	1,000.2	-	-	-	-	-	종8	1,000.2	1,000.2	-	-	-	-	-	
종9	종9	825.2	825.2	-	-	-	-	-	종9	825.2	825.2	-	-	-	-	-	
종10	종10	912.7	-	912.7	-	-	-	-	종10	912.7	-	912.7	-	-	-	-	
종11	종11	2,534.0	-	-	-	2,534.0	-	-	종11	2,534.0	-	-	-	2,534.0	-	-	
종13	종13	1,493.1	-	-	1,493.1	-	-	-	종13	1,493.1	-	-	1,493.1	-	-	-	
종14	종14	1,392.0	-	1,392.0	-	-	-	-	종14	1,392.0	-	1,392.0	-	-	-	-	
종15	종15	1,156.4	-	-	-	-	1,156.4	-	종15	1,156.4	-	-	-	-	1,156.4	-	
종16	종16	923.7	923.7	-	-	-	-	-	종16	923.7	923.7	-	-	-	-	-	
종17	종17	1,206.2	1,206.2	-	-	-	-	-	종17	1,206.2	1,206.2	-	-	-	-	-	
종18	종18	1,326.7	-	-	1,326.7	-	-	-	종18	1,326.7	-	-	1,326.7	-	-	-	
종21	종21	825.0	-	-	-	-	825.0	-	종21	825.0	-	-	-	-	825.0	-	
종22	종22	929.3	-	929.3	-	-	-	-	종22	929.3	-	929.3	-	-	-	-	
종23	종23	1,321.2	-	-	1,321.2	-	-	-	종23	1,321.2	-	-	1,321.2	-	-	-	
종24	종24	1,107.2	-	-	1,107.2	-	-	-	종24	1,107.2	-	-	1,107.2	-	-	-	
종25	종25	1,346.0	-	1,346.0	-	-	-	-	종25	1,346.0	-	1,346.0	-	-	-	-	
종26	종26	900.1	-	900.1	-	-	-	-	종26	900.1	-	900.1	-	-	-	-	
종27	종27	1,288.5	-	1,288.5	-	-	-	-	종27	1,288.5	-	1,288.5	-	-	-	-	
종28	종28	4,190.2	-	-	4,190.2	-	-	-	종28	4,190.2	-	-	4,190.2	-	-	-	
종29	종29	509.9	-	-	-	509.9	-	-	종29	509.9	-	-	-	509.9	-	-	
체2	체2	14,851.2	14,851.2	-	-	-	-	-	체2	14,851.2	14,851.2	-	-	-	-	-	
체3	체3	12,328.3	-	12,328.3	-	-	-	-	체3	12,328.3	-	12,328.3	-	-	-	-	
위1	위1	1,328.0	-	-	-	-	-	1,328.0	위1	1,328.0	-	-	-	-	-	1,328.0	
위2	위2	1,313.0	1,313.0	-	-	-	-	-	위2	1,313.0	1,313.0	-	-	-	-	-	
위3	위3	2,364.9	2,364.9	-	-	-	-	-	위3	2,364.9	2,364.9	-	-	-	-	-	
위4	위4	1,440.0	1,440.0	-	-	-	-	-	위4	1,440.0	1,440.0	-	-	-	-	-	
위5	위5	1,922.2	-	-	1,922.2	-	-	-	위5	1,922.2	-	-	1,922.2	-	-	-	
위6	위6	2,286.0	-	-	-	-	2,286.0	-	위6	2,286.0	-	-	-	-	2,286.0	-	
수로1	수로1	7,722.0	-	-	7,722.0	-	-	-	수로1	7,722.0	-	-	7,722.0	-	-	-	
유보1	유보1	101,828.0	-	-	-	-	-	101,828.0	유보1	101,828.0	-	-	-	-	-	101,828.0	
유보2	유보2	29,086.0	-	-	-	-	-	29,086.0	유보2	29,086.0	-	-	-	-	-	29,086.0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위치	회지 면적(m ²)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회지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합계		704,136.4	300,873.1	154,194.4	146,437.9	9,652.5	75,321.5	17,657.0	134 회지	704,136.4	300,873.1	154,194.4	146,437.9	9,652.5	75,321.5	17,657.0			
주1	주1	1,926.3	1,926.3	-	-	-	-	-	주1	1,926.3	1,926.3	-	-	-	-	-			
주2	주2	12,722.2	-	-	-	-	-	12,722.2	주2	12,722.2	-	-	-	-	-	-	12,722.2		
주3	주3	1,567.9	-	1,567.9	-	-	-	-	주3	1,567.9	-	1,567.9	-	-	-	-			
주4	주4	1,323.7	-	1,323.7	-	-	-	-	주4	1,323.7	-	1,323.7	-	-	-	-			
주5	주5	6,075.8	-	6,075.8	-	-	-	-	주5	6,075.8	-	6,075.8	-	-	-	-			
주6	주6	1,353.6	1,353.6	-	-	-	-	-	주6	1,353.6	1,353.6	-	-	-	-	-			
주7	주7	1,061.7	1,061.7	-	-	-	-	-	주7	1,061.7	1,061.7	-	-	-	-	-			
주8	주8	2,007.0	2,007.0	-	-	-	-	-	주8	2,007.0	2,007.0	-	-	-	-	-			
주9	주9	1,578.1	-	1,578.1	-	-	-	-	주9	1,578.1	-	1,578.1	-	-	-	-			
주10	주10	1,371.7	1,371.7	-	-	-	-	-	주10	1,371.7	1,371.7	-	-	-	-	-			
주11	주11	1,229.5	1,229.5	-	-	-	-	-	주11	1,229.5	1,229.5	-	-	-	-	-			
주12	주12	1,230.7	-	1,230.7	-	-	-	-	주12	1,230.7	-	1,230.7	-	-	-	-			
주13	주13	1,004.7	1,004.7	-	-	-	-	-	주13	1,004.7	1,004.7	-	-	-	-	-			
주14	주14	1,172.0	-	1,172.0	-	-	-	-	주14	1,172.0	-	1,172.0	-	-	-	-			
주15	주15	1,297.8	1,297.8	-	-	-	-	-	주15	1,297.8	1,297.8	-	-	-	-	-			
주16	주16	301.1	301.1	-	-	-	-	-	주16	301.1	301.1	-	-	-	-	-			
주17	주17	632.6	632.6	-	-	-	-	-	주17	632.6	632.6	-	-	-	-	-			
주18	주18	873.0	873.0	-	-	-	-	-	주18	873.0	873.0	-	-	-	-	-			
주19	주19	1,408.5	-	1,408.5	-	-	-	-	주19	1,408.5	-	1,408.5	-	-	-	-			
주20	주20	1,028.7	-	-	1,028.7	-	-	-	주20	1,028.7	-	-	1,028.7	-	-	-			
주21	주21	933.7	-	933.7	-	-	-	-	주21	933.7	-	933.7	-	-	-	-			
주24	주24	1,285.3	-	-	1,285.3	-	-	-	주24	1,285.3	-	-	1,285.3	-	-	-			
주25	주25	1,263.8	1,263.8	-	-	-	-	-	주25	1,263.8	1,263.8	-	-	-	-	-			
주26	주26	1,659.1	-	-	1,659.1	-	-	-	주26	1,659.1	-	-	1,659.1	-	-	-			
주27	주27	975.5	-	-	975.5	-	-	-	주27	975.5	-	-	975.5	-	-	-			
주28	주28	7,604.7	7,604.7	-	-	-	-	-	주28	7,604.7	7,604.7	-	-	-	-	-			
주29	주29	1,495.1	-	1,495.1	-	-	-	-	주29	1,495.1	-	1,495.1	-	-	-	-			
주30	주30	1,487.9	-	1,487.9	-	-	-	-	주30	1,487.9	-	1,487.9	-	-	-	-			
주31	주31	1,739.6	-	-	1,739.6	-	-	-	주31	1,739.6	-	-	1,739.6	-	-	-			
주32	주32	1,744.1	-	-	1,744.1	-	-	-	주32	1,744.1	-	-	1,744.1	-	-	-			
주33	주33	1,279.2	-	-	1,279.2	-	-	-	주33	1,279.2	-	-	1,279.2	-	-	-			
주34	주34	1,385.5	-	-	-	-	-	1,385.5	주34	1,385.5	-	-	-	-	-	1,385.5			
주35	주35	604.2	-	-	-	-	-	604.2	주35	604.2	-	-	-	-	-	604.2			
주36	주36	695.9	-	695.9	-	-	-	-	주36	695.9	-	695.9	-	-	-	-			
주37	주37	789.9	-	-	-	-	-	789.9	주37	789.9	-	-	-	-	-	789.9			
주38	주38	1,271.2	-	1,271.2	-	-	-	-	주38	1,271.2	-	1,271.2	-	-	-	-			
주39	주39	785.7	-	785.7	-	-	-	-	주39	785.7	-	785.7	-	-	-	-			
주40	주40	381.4	-	381.4	-	-	-	-	주40	381.4	-	381.4	-	-	-	-			
주41	주41	1,338.5	-	-	1,338.5	-	-	-	주41	1,338.5	-	-	1,338.5	-	-	-			
주45	주45	1,428.0	-	1,428.0	-	-	-	-	주45	1,428.0	-	1,428.0	-	-	-	-			
주46	주46	1,408.1	-	-	1,408.1	-	-	-	주46	1,408.1	-	-	1,408.1	-	-	-			
주47	주47	1,800.3	-	-	-	1,800.3	-	-	주47	1,800.3	-	-	-	1,800.3	-	-			
유1	유1	1,468.0	1,468.0	-	-	-	-	-	유1	1,468.0	1,468.0	-	-	-	-	-			
유2	유2	750.9	750.9	-	-	-	-	-	유2	750.9	750.9	-	-	-	-	-			
유3	유3	743.2	-	743.2	-	-	-	-	유3	743.2	-	743.2	-	-	-	-			
유5	유5	876.6	-	-	876.6	-	-	-	유5	876.6	-	-	876.6	-	-	-			
유6	유6	628.0	628.0	-	-	-	-	-	유6	628.0	628.0	-	-	-	-	-			
유8	유8	744.7	-	744.7	-	-	-	-	유8	744.7	-	744.7	-	-	-	-			
유9	유9	760.3	760.3	-	-	-	-	-	유9	760.3	760.3	-	-	-	-	-			
유10	유10	692.0	692.0	-	-	-	-	-	유10	692.0	692.0	-	-	-	-	-			
유11	유11	787.7	-	787.7	-	-	-	-	유11	787.7	-	787.7	-	-	-	-			
유12	유12	2,508.5	-	-	-	2,508.5	-	-	유12	2,508.5	-	-	-	2,508.5	-	-			
유13	유13	2,502.1	-	-	2,502.1	-	-	-	유13	2,502.1	-	-	2,502.1	-	-	-			
유14	유14	2,299.8	-	-	-	2,299.8	-	-	유14	2,299.8	-	-	-	2,299.8	-	-			
초1	초1	14,750.0	14,750.0	-	-	-	-	-	초1	14,750.0	14,750.0	-	-	-	-	-			
초2	초2	11,788.3	-	11,788.3	-	-	-	-	초2	11,788.3	-	11,788.3	-	-	-	-			
초3	초3	13,145.0	-	-	13,145.0	-	-	-	초3	13,145.0	-	-	13,145.0	-	-	-			
초4	초4	11,490.4	11,490.4	-	-	-	-	-	초4	11,490.4	11,490.4	-	-	-	-	-			
초5	초5	11,815.3	-	11,815.3	-	-	-	-	초5	11,815.3	-	11,815.3	-	-	-	-			
초6	초6	11,560.8	11,560.8	-	-	-	-	-	초6	11,560.8	11,560.8	-	-	-	-	-			
초7	초7	13,978.7	13,978.7	-	-	-	-	-	초7	13,978.7	13,978.7	-	-	-	-	-			
초8	초8	11,307.0	-	11,307.0	-	-	-	-	초8	11,307.0	-	11,307.0	-	-	-	-			
초9	초9	11,758.5	-	11,758.5	-	-	-	-	초9	11,758.5	-	11,758.5	-	-	-	-			
초10	초10	12,349.5	12,349.5	-	-	-	-	-	초10	12,349.5	12,349.5	-	-	-	-	-			
초11	초11	18,382.5	-	-	18,382.5	-	-	-	초11	18,382.5	-	-	18,382.5	-	-	-	운양 초등 학교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변경							위치	획지 면적(m ²) 변경							비고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초12	초12	11,725.5	-	11,725.5	-	-	-	-	초12	11,725.5	-	11,725.5	-	-	-	-	
초13	초13	23,613.6	23,613.6	-	-	-	-	-	초13	23,613.6	23,613.6	-	-	-	-	-	1952 (고창 초등학교)
중1	중1	11,594.0	11,594.0	-	-	-	-	-	중1	11,594.0	11,594.0	-	-	-	-	-	
중2	중2	13,076.8	-	-	13,076.8	-	-	-	중2	13,076.8	-	-	13,076.8	-	-	-	
중3	중3	12,922.9	12,922.9	-	-	-	-	-	중3	12,922.9	12,922.9	-	-	-	-	-	
중4	중4	12,897.2	12,897.2	-	-	-	-	-	중4	12,897.2	12,897.2	-	-	-	-	-	
중5	중5	13,063.1	13,063.1	-	-	-	-	-	중5	13,063.1	13,063.1	-	-	-	-	-	
중6	중6	12,939.7	-	12,939.7	-	-	-	-	중6	12,939.7	-	12,939.7	-	-	-	-	
고1	고1	13,622.0	-	13,622.0	-	-	-	-	고1	13,622.0	-	13,622.0	-	-	-	-	
고2	고2	14,022.2	14,022.2	-	-	-	-	-	고2	14,022.2	14,022.2	-	-	-	-	-	
고3	고3	13,322.6	-	13,322.6	-	-	-	-	고3	13,322.6	-	13,322.6	-	-	-	-	
고4	고4	14,316.4	14,316.4	-	-	-	-	-	고4	14,316.4	14,316.4	-	-	-	-	-	
고5	고5	14,025.7	14,025.7	-	-	-	-	-	고5	14,025.7	14,025.7	-	-	-	-	-	
특1	특1	12,879.1	-	-	12,879.1	-	-	-	특1	12,879.1	-	-	12,879.1	-	-	-	
대1	대1	9,896.6	-	-	-	-	9,896.6	-	대1	9,896.6	-	-	-	-	9,896.6	-	
문1	문1	46,164.6	-	-	-	-	46,164.6	-	문1	46,164.6	-	-	-	-	46,164.6	-	
청1	청1	14,992.9	-	-	-	-	14,992.9	-	청1	14,992.9	-	-	-	-	14,992.9	-	
복2	복2	2,630.7	2,630.7	-	-	-	-	-	복2	2,630.7	2,630.7	-	-	-	-	-	
복3	복3	13,453.6	13,453.6	-	-	-	-	-	복3	13,453.6	13,453.6	-	-	-	-	-	
복4	복4	1,879.9	-	1,879.9	-	-	-	-	복4	1,879.9	-	1,879.9	-	-	-	-	
복5	복5	18,994.3	18,994.3	-	-	-	-	-	복5	18,994.3	18,994.3	-	-	-	-	-	
복6	복6	2,231.1	-	2,231.1	-	-	-	-	복6	2,231.1	-	2,231.1	-	-	-	-	
복7	복7	2,118.9	-	-	2,118.9	-	-	-	복7	2,118.9	-	-	2,118.9	-	-	-	
복8	복8	1,238.1	1,238.1	-	-	-	-	-	복8	1,238.1	1,238.1	-	-	-	-	-	
복9	복9	1,002.0	1,002.0	-	-	-	-	-	복9	1,002.0	1,002.0	-	-	-	-	-	
복10	복10	1,001.2	-	-	1,001.2	-	-	-	복10	1,001.2	-	-	1,001.2	-	-	-	
의1	의1	25,575.6	25,575.6	-	-	-	-	-	의1	25,575.6	25,575.6	-	-	-	-	-	
변1	변1	2,420.0	2,420.0	-	-	-	-	-	변1	2,420.0	2,420.0	-	-	-	-	-	
변2	변2	14,264.0	-	-	14,264.0	-	-	-	변2	14,264.0	-	-	14,264.0	-	-	-	
전기1	전기1	3,409.2	-	-	3,409.2	-	-	-	전기1	3,409.2	-	-	3,409.2	-	-	-	
열1	열1	3,547.3	-	-	3,547.3	-	-	-	열1	3,547.3	-	-	3,547.3	-	-	-	
방1	방1	2,830.2	2,830.2	-	-	-	-	-	방1	2,830.2	2,830.2	-	-	-	-	-	
폐1	폐1	24,272.7	-	-	24,272.7	-	-	-	폐1	24,272.7	-	-	24,272.7	-	-	-	
집2	집2	5,442.3	-	5,442.3	-	-	-	-	집2	5,442.3	-	5,442.3	-	-	-	-	
지1	지1	524.6	-	-	524.6	-	-	-	지1	524.6	-	-	524.6	-	-	-	
지2	지2	2,154.1	-	2,154.1	-	-	-	-	지2	2,154.1	-	2,154.1	-	-	-	-	
통1	통1	2,447.6	-	-	2,447.6	-	-	-	통1	2,447.6	-	-	2,447.6	-	-	-	
종2	종2	826.8	-	-	-	-	-	826.8	종2	826.8	-	-	-	-	-	826.8	
종3	종3	1,153.0	1,153.0	-	-	-	-	-	종3	1,153.0	1,153.0	-	-	-	-	-	
종6	종6	840.0	840.0	-	-	-	-	-	종6	840.0	840.0	-	-	-	-	-	
종7	종7	2,449.6	-	-	2,449.6	-	-	-	종7	2,449.6	-	-	2,449.6	-	-	-	
종8	종8	1,000.2	1,000.2	-	-	-	-	-	종8	1,000.2	1,000.2	-	-	-	-	-	
종9	종9	825.2	825.2	-	-	-	-	-	종9	825.2	825.2	-	-	-	-	-	
종10	종10	912.7	-	912.7	-	-	-	-	종10	912.7	-	912.7	-	-	-	-	
종11	종11	2,534.0	-	-	-	2,534.0	-	-	종11	2,534.0	-	-	-	2,534.0	-	-	
종13	종13	1,493.1	-	-	1,493.1	-	-	-	종13	1,493.1	-	-	1,493.1	-	-	-	
종14	종14	1,392.0	-	1,392.0	-	-	-	-	종14	1,392.0	-	1,392.0	-	-	-	-	
종15	종15	1,156.4	-	-	-	-	1,156.4	-	종15	1,156.4	-	-	-	-	1,156.4	-	
종16	종16	923.7	923.7	-	-	-	-	-	종16	923.7	923.7	-	-	-	-	-	
종17	종17	1,206.2	1,206.2	-	-	-	-	-	종17	1,206.2	1,206.2	-	-	-	-	-	
종18	종18	1,326.7	-	-	1,326.7	-	-	-	종18	1,326.7	-	-	1,326.7	-	-	-	
종21	종21	825.0	-	-	-	-	825.0	-	종21	825.0	-	-	-	-	825.0	-	
종22	종22	929.3	-	929.3	-	-	-	-	종22	929.3	-	929.3	-	-	-	-	
종23	종23	1,321.2	-	-	1,321.2	-	-	-	종23	1,321.2	-	-	1,321.2	-	-	-	
종24	종24	1,107.2	-	-	1,107.2	-	-	-	종24	1,107.2	-	-	1,107.2	-	-	-	
종25	종25	1,346.0	-	1,346.0	-	-	-	-	종25	1,346.0	-	1,346.0	-	-	-	-	
종26	종26	900.1	-	900.1	-	-	-	-	종26	900.1	-	900.1	-	-	-	-	
종27	종27	1,288.5	-	1,288.5	-	-	-	-	종27	1,288.5	-	1,288.5	-	-	-	-	
종28	종28	4,190.2	-	-	4,190.2	-	-	-	종28	4,190.2	-	-	4,190.2	-	-	-	
종29	종29	509.9	-	-	-	509.9	-	-	종29	509.9	-	-	-	509.9	-	-	
체2	체2	14,851.2	14,851.2	-	-	-	-	-	체2	14,851.2	14,851.2	-	-	-	-	-	
체3	체3	12,328.3	-	12,328.3	-	-	-	-	체3	12,328.3	-	12,328.3	-	-	-	-	
위1	위1	1,328.4	-	-	-	-	-	1,328.4	위1	1,328.4	-	-	-	-	-	1,328.4	
위2	위2	1,313.0	1,313.0	-	-	-	-	-	위2	1,313.0	1,313.0	-	-	-	-	-	
위3	위3	2,364.9	2,364.9	-	-	-	-	-	위3	2,364.9	2,364.9	-	-	-	-	-	
위4	위4	1,440.0	1,440.0	-	-	-	-	-	위4	1,440.0	1,440.0	-	-	-	-	-	
위5	위5	1,922.2	-	-	1,922.2	-	-	-	위5	1,922.2	-	-	1,922.2	-	-	-	
위6	위6	2,286.0	-	-	-	-	2,286.0	-	위6	2,286.0	-	-	-	-	2,286.0	-	
수로1	수로1	7,722.0	-	-	7,722.0	-	-	-	수로1	7,722.0	-	-	7,722.0	-	-	-	

4.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문화예술용지 (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이나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서 제시한 허용용적률에 <별표3-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벽건축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한 3개 획지이내에서 맞벽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예술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 건축물의 전면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2개 또는 3개획지 단위로 공동주차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하며, 인접한 건축물과 층간높이, 입면형태 등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10%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지붕이 경사지붕으로 계획된 경우 경사도는 1:0.8~1:1.2의 범위로 하며, 실외기 설치공간을 계획시 반드시 고려한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경사의 방향은 가로방향에 대해 가급적 직교방향으로 계획하며, 인접건물이 경사지붕인 경우 시각적(경사방향, 경사각도 등), 실용적(우수처리 등)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문화예술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 별표 3-1 > 문화예술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문화예술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A	
	권장 용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도자기, 조각, 공예, 회화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공방, 갤러리, 전시·판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소극장,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공연장, 전시장
	허용 용도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2종 근린생활시설(철타이 설치된 옥외골프연습장, 종교집회장, 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불허 용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 아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라, 사, 아, 차, 타목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강화용적률		170%이상	
최저층수		2층	
최고층수		4층	
해당블록		문화1~3	

※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별표3-2>에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페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 별표 3-2 > 문화예술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구 분	행위강화요소		비 고
	생태면적률	문화예술용도(권장용도)	
문화1~문화3	20% 미만 (-3%)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과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이 1/2 이상을 권장용도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7%)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을 참조하여 산출함

※ 문화예술용도 설치에 따른 주거용도 허용시 1세대에 한하며 (합필의 경우에도 동일), 주거용도는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함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용이나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1>에서 제시한 허용용적률에 <별표3-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높이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벽건축 권장 - 연접한 획지의 맞벽건축을 허용하되 건축물 너비(폭) 25m 이내 간격에서 입면의 변화(입면분절 요소, 건축물 배치 등)를 모색하여야 한다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지침도상에 별도의 건축선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예술용지는 전면도로로부터 최소 1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지침도상에서 별도의 건축선 또는 벽면선이 제시된 경우에는 이를 따르도록 한다. 건축물의 전면은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2개~4개 획지 단위로 공동주차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3	형태 및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면적의 50% 이내에서만 허용한다. (평지붕 면적의 30%는 옥상녹화 의무)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4.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난간 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 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이어야 한다. • 외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문화예술용지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의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토록 한다. - 획지 합병시 획일적인 입면이 되지 않도록 입면 분절 요소를 적극 활용 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여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색채는 경관계획에서 제시하는 색채계획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 별표 3-1 > 문화예술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분		문화예술용지	
도면표시		CA	
건축물 용도	권장 용도	1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종 근린생활시설(문화예술기능 관련 소매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 사진관, 표구점, 서점, 문화예술관련 수리점·학원·교육원·사무소(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등록된 경우) •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식물원·수족관 • 판매시설 중 문화예술관련 상점 • 교육연구시설 중 문화예술관련 대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촬영소
	허용 용도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 단독주택 중 가목 단독주택(상층부 1세대에 한하며, 전용면적 60㎡ 이하)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동물병원, 독서실, 기원, 주민체육시설 • 문화집회시설 중 음식점, 회의장 • 교육연구시설 중 대학교·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연구소·도서관 • 노유자시설 • 운동시설 중 탁구장·당구장 등과 체육관(옥외 철타골프장 제외)
	불허 용도	1층 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이하	
허용용적률		180%이하	
강화용적률		132%이상	
최저층수		2층	
최고층수		4층	
해당블록		문화1~3	

- ※ 용적률은 허용용적률(강화용적률)로서 <별표3-2>에서 강화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강화용적률을 산출함
- ※ 문화예술기능은 다음과 같음
 - 미술·디자인·공예 : 동양화, 서양화, 서예, 조소, 산업, 섬유, 시각디자인, 공예, 의상, 조명, 도자기, 골동품, 각종 장식품 등
 - 음악 분야 : 성악·기악·국악·농악·판소리 등 전통·민속음악, 뮤지컬, 오페라, 대중가요, 영화음악, 드라마 OST, 광고음악 등
 - 연극·무용·판토마임 등
 - 사진, 영상,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디지털 문화예술 콘텐츠 등
 - 수석, 화훼, 분재, 관상용 어류 판매 등
 - 문학 및 인문학
- ※ 문화예술관련시설이란 ① 문화예술기능을 서비스하거나 ② 문화예술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 ③ 문화예술기능 서비스 및 상품을 제작·창조하는 기능, ④ 문화예술기능 서비스 및 상품을 제작·제공하기 위해 교육·훈련하는 기능, ⑤ 문화예술기능의 지원을 받는 기능, ⑥ 이상의 기능을 지원하는 기능(문화예술 관련 업무기능 등)의 시설로 정의할 수 있음
 - 문화예술기능을 서비스하는 시설 유형으로는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등 전시장 등이 대표적임
 - 문화예술기능 상품을 판매하는 기능 유형으로는 표구점, 서점, 화랑, 악기점, 사진관, 공예품·도자기 판매점뿐만 아니라 연극·뮤지컬·영화·오페라의 소품 판매점 등 다양함
 - 문화예술기능 서비스 및 상품 제작·창조 기능 시설로는 공연 연습장, 공방, 방송국, 촬영소 등 다양함
 - 문화예술기능의 지원을 받는 기능으로는 방송국, 촬영소, 예식장 등이 있음. 영화, 연극, 오페라, 대중가요, 무용등 공연예술분야는 그 자체가 문화예술 분야일 뿐만 아니라 의상, 미술, 조명, 소품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기능을 지원 받음
 - 문화예술기능을 지원하는 기능의 시설로는 관련 단체의 사무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기능의 서비스 및 상품의 제작 및 제공과 관련한 기획,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임
- ※ 권장용도와 관련하여 이상의 6가지 문화예술기능 시설 중 문화예술관련 상품 판매기능시설 이외의 시설은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에 등록되거나 승인을 받아야함
- ※ 문화예술 관련 상점은 문화예술기능의 범주에 포함되는 상품을 매장면적의 30% 이상 매대면적의 50% 이상 전시 판매하여야 함

< 별표 3-2 > 문화예술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구 분	행위강화요소		비 고											
	생태면적률	문화예술용도(권장용도)												
문화1~문화3	20% 미만 (-3%)	① 건축물 전체에 대한 권장용도 설치의무 : 지상층 연면적(주차장, 기계실, 화장실, 계단, 엘리베이터 홀 제외)의 30%에 해당되는 면적을 권장용도로 지상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설치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3">지상층 연면적의</td> <td>20% 이상 ~ 30% 미만</td> <td>- 10%</td> </tr> <tr> <td>10% 이상 ~ 20% 미만</td> <td>- 15%</td> </tr> <tr> <td>10% 미만</td> <td>- 20%</td> </tr> </table>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 ~ 30% 미만	- 10%	10% 이상 ~ 20% 미만	- 15%	10% 미만	- 20%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상 ~ 30% 미만	- 10%												
	10% 이상 ~ 20% 미만	- 15%												
	10% 미만	- 20%												
		② 1층 또는 2층의 권장용도 설치의무 : 1층 또는 2층에 건축면적(건축물 수평투영면적)의 5/10이상 권장용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설치 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5">건축면적의</td> <td>4/10 이상 ~ 5/10 미만</td> <td>- 5%</td> </tr> <tr> <td>3/10 이상 ~ 4/10 미만</td> <td>- 10%</td> </tr> <tr> <td>2/10 이상 ~ 3/10 미만</td> <td>- 15%</td> </tr> <tr> <td>1/10 이상 ~ 2/10 미만</td> <td>- 20%</td> </tr> <tr> <td>1/10 미만</td> <td>- 25%</td> </tr> </table>	건축면적의	4/10 이상 ~ 5/10 미만	- 5%	3/10 이상 ~ 4/10 미만	- 10%	2/10 이상 ~ 3/10 미만	- 15%	1/10 이상 ~ 2/10 미만	- 20%	1/10 미만	- 25%	
건축면적의	4/10 이상 ~ 5/10 미만	- 5%												
	3/10 이상 ~ 4/10 미만	- 10%												
	2/10 이상 ~ 3/10 미만	- 15%												
	1/10 이상 ~ 2/10 미만	- 20%												
	1/10 미만	-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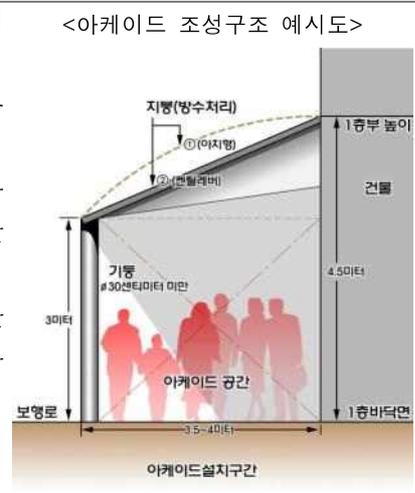
-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을 참조하여 산출함
- ※ 문화예술용도 설치에 따른 주거용도 허용시 1세대에 한하며 (합필한 경우에는 합필한 획지 수 만큼 허용), 주거용도는 최상층에 설치하도록 함
- ※ 권장용도 설치의무 ①, ②는 중복하여 적용함(최대 -45%)

- 4)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5)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6)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2,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2,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용도는 <별표6-1,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광장, 선형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6-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6-4>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가로면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 맞벽건축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접한 3개 획지이내에서 맞벽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정시설(지붕면적의 50%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아케이드 설치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획지전면쪽에 맞추어 반드시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개방된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2,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2,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케이드 공간1)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결한 아케이드 공간 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2)'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아케이드공간 :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획지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6-1 > 상업시설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판매시설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상점에 한함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	◇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한함	X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한함
위락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X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에 한함	◇ 주유소에 한함	◇ 주유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주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용도,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불허용도

주2)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별표 6-2 > 상업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건폐율	70%이하	70%이하	70%이하
허용용적률	700%이하	420%이하	560%이하
강화용적률	665%이상	400%이상	530%이상
최고높이	-	30m이하	38m이하
최저높이	-	-	-
해당블록	일상1	근상1	근상2

< 별표 6-3 >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B1 (일반업무)	B2 (일반업무)	B3 (공공업무)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 6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운동시설(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 소방파출소(부대시설로 소방교육시설포함) • 우체국 •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 경찰서 • 파출소 • 동주민센터 • 보건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60%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적률-500%이하 • 강화용적률-47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적률-300%이하 • 강화용적률-28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소방파출소 : 허용 - 200%이하, 강화 - 190%이상 • 우체국 : 허용 - 500%이하, 강화 - 475%이상 • 전신전화국 : 허용 - 200%이하, 강화 - 190%이상 • 경찰서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파출소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동주민센터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보건소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최고층수		-	5	-
해당블록		업무1	업무2~업무5	소방서1, 소파1~2,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주1) B3공공업무시설중 동주민센터용지에는 일반업무시설도 허용용도로 함

주2) B1,2일반업무시설중 업무1,3에는 요양병원도 허용용도로 함

주3) B2 일반업무시설중 업무4에는 공공업무시설도 허용용도로 함

< 별표 6-4 > 상업·업무시설용지 허용용적률 강화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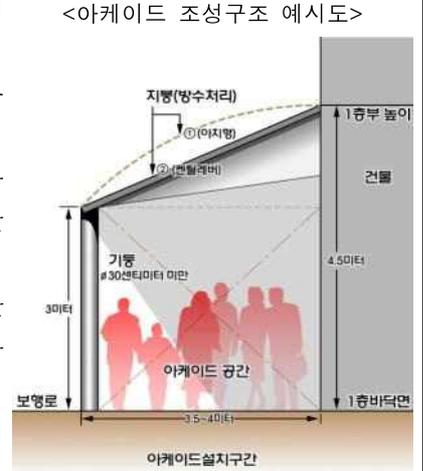
구 분	생태면적률	비 고
일반상업 (C1)	20% 미만 (-35%)	
근린상업 (C2)	20% 미만 (-20%)	
근린상업 (C3)	20% 미만 (-30%)	
일반업무 (B1)	20% 미만 (-25%)	
일반업무 (B2)	20% 미만 (-15%)	
공공업무 (B3)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보건소, 동주민센터	20% 미만 (-20%)
	우체국	20% 미만 (-25%)
	전신전화국, 소방파출소	20% 미만 (-10%)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 참조하여 산출함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 용도는 <별표6-1,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광장, 선형녹지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건축연면적의 50%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6-3>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6-4>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2, 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전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위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미터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 1층벽면 지정선에 면한 외벽면 - 상기 조건들이 겹치는 획지는 각 규정 모두 적용 설치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20센티미터 이상 단차가 나지 않도록 한다. 가로변 전면부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침도에서 지정된 해당 획지의 건축 지정선 길이의 3분의 2이상에 전면부 외벽면이 접하여야 한다. 맞벽건축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한 3개 획지내에서 맞벽건축을 권장한다. - 지상 1층의 층고는 4~4.5m로 하여 인접 건축물과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지정선에 면한 외벽면은 70%이상을 투시형으로 한다. 이때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옥상녹화를 포함한 조경시설(지붕면적의 50%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아케이드 설치구간이 지정된 획지에서는 획지전면폭에 맞추어 반드시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개방된 통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일상1 근상1~ 근상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케이드 공간1)내의 보도면과 인접한 포장면과의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종단면에 높이차가 날 경우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케이드 공간내의 보도면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계단의 설치가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경사로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바닥의 높이를 연결한 아케이드 공간 내 보도면의 높이보다 높게 조성할 경우, 그 높이차는 20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아케이드 공간내에는 '보행지장물2)'의 설치를 불허하며, 영업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업무용지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업업무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 옥외광고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9>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아케이드공간 : 열주에 의해 지탱되는 아치 또는 반원형의 천장 등을 연속적으로 가설한 구조물과 그것이 조성하는 개방된 통로공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아케이드에 면한 획지의 사업자가 건축물 건설시 아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별표 6-1 > 상업시설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단독주택	X	X	X
공동주택	X	X	X
제1종근린생활시설	○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단, 당해용도가 건물의 부수용도이어야 함
판매시설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 상점에 한함	○ 상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운수시설	X	X	X
의료시설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	◇
노유자시설	◇	○	◇
수련시설	◇	○	◇
운동시설	◇	○	◇
업무시설	○	◇	○
숙박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한함	X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에 한함
위락시설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X	◇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된 경우에 한함
공장	X	X	X
창고시설	X	X	X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에 한함	◇ 주유소에 한함	◇ 주유소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X	X	X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X	X	X
교정 및 군사시설	X	X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에 한함
발전시설	X	X	X
묘지관련시설	X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주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수 있는 용도,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불허용도

주2)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상업용지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 별표 6-2 > 상업시설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C1 (일반상업)	C2 (근린상업)	C3 (근린상업)
건폐율	70%이하	70%이하	70%이하
허용용적률	700%이하	420%이하	560%이하
강화용적률	665%이상	400%이상	530%이상
최고높이	-	30m이하	38m이하
최저높이	-	-	-
해당블록	일상1	근상1	근상2

< 별표 6-3 >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도면 표시	B1 (일반업무)	B2 (일반업무)	B3 (공공업무)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무시설(설치의무비율 60%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 운동시설(철타이 설치된 실외골프장 제외), 교육연구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장례식장 제외) •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 소방파출소(부대시설로 소방교육시설포함) • 우체국 • 전신전화국 및 통신용시설 • 경찰서 • 파출소 • 동주민센터 • 보건소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60%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적률-500%이하 • 강화용적률-47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적률-300%이하 • 강화용적률-285%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서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소방파출소 : 허용 - 200%이하, 강화 - 190%이상 • 우체국 : 허용 - 500%이하, 강화 - 475%이상 • 전신전화국 : 허용 - 200%이하, 강화 - 190%이상 • 경찰서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파출소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동주민센터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 보건소 : 허용 - 400%이하, 강화 - 380%이상
최고층수		-	5	-
해당블록		업무1	업무2~업무5	소방서1, 소파1, 우체1~2, 전화1~2, 경찰서1, 파출1~2, 동1~4, 보건1

주1) B3공공업무시설중 동주민센터용지에는 일반업무시설도 허용용도로 함

주2) B1,2일반업무시설중 업무1,3에는 요양병원도 허용용도로 함

주3) B2 일반업무시설중 업무4에는 공공업무시설도 허용용도로 함

< 별표 6-4 > 상업·업무시설용지 허용용적률 강화항목

구 분	생태면적률	비 고
일반상업 (C1)	20% 미만 (-35%)	
근린상업 (C2)	20% 미만 (-20%)	
근린상업 (C3)	20% 미만 (-30%)	
일반업무 (B1)	20% 미만 (-25%)	
일반업무 (B2)	20% 미만 (-15%)	
공공업무 (B3)	소방서, 경찰서, 파출소, 보건소, 동주민센터	20% 미만 (-20%)
	우체국	20% 미만 (-25%)
	전신전화국, 소방파출소	20% 미만 (-10%)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 참조하여 산출함

7) 수변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기타시설용지 (변경)

■ 지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0.5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과 강화용적률이 주어진 건축물의 용적률은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별표8>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한 용적률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을 제외한 평지붕의 경우(일부 평지붕포함)에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옥상녹화로 하여야 한다.(단, 주변지형과 연계되어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 50%이하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다)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28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1-1)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900%이하, 강화용적률 - 855%이상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2, 주3, 주5, 주4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1-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900%이하, 강화용적률 - 855%이상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2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2-1)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50%이하, 강화용적률 - 42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9, 주30~32, 주4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2-2)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50%이하, 강화용적률 - 42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34, 주35, 주3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3-2)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40%이하, 강화용적률 - 22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1, 주6~8, 주10~11, 주13~18, 주2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15의 경우 연접한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차장(F1)과 합병하여 개발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3-1)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70%이하, 강화용적률 - 25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4, 주12, 주19, 주33, 주36, 주 38~41, 주4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3-2)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70%이하, 강화용적률 - 25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20, 주2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19m이하 (수로변 공공공지의 계획고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주2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6)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20m이하 (대로변 대지경계부 계획고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주24, 주2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7)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600%이하, 강화용적률 - 570%이상
		높이(층)	• 10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1~3, 유5~6, 유8~14	유1~3, 유5~6, 유8~14	용도	•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S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초1~초13	초1~초13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도면표시 : S2)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1~중6	중1~중6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도면표시 : S3)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1~고5 특1	고1~고5 특1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면표시 : S4, S5)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1	대1	용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의한 대학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도면표시 : S6)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2~3 종교6~11, 종교13~ 18, 종교21~ 29	종3,종6,종8, 종9,종10, 종14, 종16~ 17, 종22, 종25~27, 종2, 종7,종11,종1 3,종15,종18, 종21,종23,종 24,종28,종2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등)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RF)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등), 노유자시설, 유치원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RF) (단,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에 한함)
	종교2~3 종교6~11, 종교13~18, 종교21~29	건폐율	• 50% 이하
	종교2~3,종6,종 9 종13~18,종2 2, 종25~26,종2 8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 강화용적률 - 190%이상
	종7~8, 종10~11,종2 1, 종23~24,종2 7,종29	높이(층)	-
			• 4층 이하
북2~ 북10	북2~북4, 북6~북7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1)
	북5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중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2)
	북8~북10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중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3)
	북2~ 북10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1	청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U)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30%이하 강화용적률 - 21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체2~체3	체2~체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사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도면표시 : H)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360%이하, 강화용적률 - 34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집2	집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1)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폐1	폐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1	문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문화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CU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1~위6	위1~위5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 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도면표시 : G1)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 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호에 한함)도면표시 : G2)
	위1~위5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	-
	위6	배치 및 건축선	-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위1~위6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1	방1	용도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의1	의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 중 종합병원, 100병상이상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포함]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강화용적률 - 38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연구1	연구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회의장, 전시장 (부수용도는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도면표시 : I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300%이하, 강화용적률 - 28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시험1	시험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회의장, 전시장 (부수용도는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1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10%이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도면표시 : I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강화용적률 - 380%이상
		높이(층)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자족시설1	자족시설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MS-2,3,5,6,8~11만 가능)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 호텔업시설, 4호국제회의업시설, 7호 관광편의시설업시설(MS-1,4,7,12만 가능)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판매시설(MS-12에 한함)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이내 이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내 지원시설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연면적은 포함된 것으로 봄) 창고시설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제외) (도면표시 : MS)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500%이하, 강화용적률 - 475%이상
		높이(층)	•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변1~2, 전기1	변1~2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3)
	전기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4)
	변1~2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전기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변1~2, 전기1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열1	열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1~2	지1	용도	• 지하차도 전기실 (도면표시 : Z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층수	-
	지2	용도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도면표시 : Z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층수	• 1층 이하
	지1~2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통신1	통신1	용도	• 도시통합정보센터 • 부대시설 (도면표시 : T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주제공원7 (봉안시설)	주제공원7 (봉안시설)	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9호의 봉안시설과 봉안시설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 이하
		용적률	• 8%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 별표 8 > 기타시설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구 분	생태면적률	비 고
주차장	P1-1, P1-2	20%미만 (-45%)
	P2-1, P2-2	20%미만 (-25%)
	P3-1, P3-2	20%미만 (-15%)
	P5, P6	20%미만 (-10%)
	P7	20%미만 (-30%)
W1~W3, CU1	40%미만 (-10%)	
S1~S4	60%미만 (-10%)	
RF	30%미만 (-10%)	
U	30%미만 (-20%)	
H, M	30%미만 (-20%)	
도시지원시설용 지	I1	20%미만 (-15%)
	I2	20%미만 (-20%)
MS	20%미만 (-25%)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을 기준으로 산출함

< 별표 9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조성되는 김포한강 신도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김포한강 신도시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지주이용간판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돌출간판·옥상간판·창문이용광고물·세로형간판·에드빌 등은 표시할 수 없다. •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김포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공통		간판의 설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10층 이하 가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가로형 information 또는 연립지주이용간판 중 1개를 선택 보조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광고물은 사업승인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 김포한강 신도시내 주요시설용지의 옥외광고물은 ‘<표IV-7-1>용지별 광고물의 설치유형 및 수량’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7장 옥외광고물 편을 따른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광고물의 색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 · 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 내 광고물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 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 단, CI(Corporate & Identity), SI(Symbol & Identity), BI(Brand & Identity) 등의 경우 심벌마크와 로고타입만 인정하고, 고유 색채의 사용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 광고물등은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은 파스텔 톤의 색채, 광고물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 ·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합판, 비닐, 스텔트, 함석 등의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설치 · 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거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 · 정방형 · 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 등의 문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 ·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 · 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 주소 · 상호 · 상표 · 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1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된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특별규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지구의 거리, 수변상업지구내 상업용지에 한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형성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은 활력적 도시공간연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강화구역”을 지정하며, 해당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법, 령, 시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의 내용을 강화 적용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7장 옥외광고물 편을 따른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을 함께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로형간판의 입체형 문자·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을 건물의 10층이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도로폭이 25M미만인 경우 가로50CM×세로50CM, 도로폭이 25M이상 50M미만인 경우 가로60CM×세로60CM, 도로폭이 50M이상인 경우 가로70CM×세로70CM 이내로 하여야한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며, 건물명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가로형간판은 입체형 설치만 가능하며 판류형의 광고물은 금지한다. 건물 최상단(옥상구조물의 벽면 포함)중 1면에 입체형으로 건물명(회사명 포함)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능하다. 광고물은 양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조재는 광고물 세로크기의 2/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의 개별문자, 심벌, 로고는 건물의 폭을 벗어날 수 없다.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 중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가로형간판의 표시위치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형간판 중 면적이 5㎡ 이하인 가로형간판도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 종합안내판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종합안내판은 업소가 2개 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1개의 가로형 information을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information의 최대크기는 가로 1.5m, 세로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입점한 업소의 수가 많아 모든 업소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출형간판의 표시를 금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에는 1층에 한하여 1개업소에 한해 1개만 표시하되 건물외벽에 돌출형으로 표시하고 표지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점포에 한하여 점포에 한하여 점포별 1개 이내, 면적 0.36㎡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규제강화구역에는 개성 있는 가로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김포시 옥외광고물심의회에 심의를 득한 후 행어형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2. 가로, 세로 각 50cm 미만, 두께 10cm 미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 연립형식(종합안내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이내, 가로 폭은 1.2m 이내로 두께는 0.5m 이내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되 층별 위치를 변경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주이용 간판 설치 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및 통행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차도로부터 3m이상)을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 표시면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격된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김포한강 신도시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지주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 설치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주,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를 통하여 제안된 표시제한·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②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김포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0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기 본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colspan="2">대 상 용 지</th> </tr> <tr> <td></td> <th style="width: 40%;">기 존 권 장 지 역</th> <th style="width: 40%;">추 가 권 장 지 역</th> </tr> </thead> <tbody> <tr> <td>상업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td> <td></td> </tr> <tr> <td>업무용지</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td> </tr> <tr> <td>수변상업 시설 용지</td> <td></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td> </tr> <tr> <td>아파트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 단지: Ac-11, Ac-12 </td> <td></td> </tr> <tr> <td>주상복합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td> <td></td> </tr> <tr> <td>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td> </tr> <tr> <td>공급처리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td> <td></td> </tr> <tr> <td>교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용 지			기 존 권 장 지 역	추 가 권 장 지 역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수변상업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아파트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 단지: Ac-11, Ac-12 		주상복합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공급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구 분	대 상 용 지																													
				기 존 권 장 지 역	추 가 권 장 지 역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수변상업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아파트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 단지: Ac-11, Ac-12 																													
			주상복합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공급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대지경계부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미터 높이의 화관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경우에 공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으며, 생활가로에 면한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0.5미터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 설치로 가로변 녹지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과 강화용적률이 주어진 건축물의 용적률은 허용용적률을 기준으로 <별표8-1>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한 용적률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사지붕을 제외한 평지붕의 경우(일부 평지붕포함)에 옥상면적의 50% 이상을 옥상녹화로 하여야 한다.(단, 주변지형과 연계되어 보행공간으로 이용되는 경우 50%이하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다)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28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1-1)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900%이하, 강화용적률 - 855%이상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주2, 주3, 주5, 주45	주28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1-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9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900%이하, 강화용적률 - 855%이상
			높이(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2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2-1)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50%이하, 강화용적률 - 42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9, 주30~32, 주4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2-2)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50%이하, 강화용적률 - 42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34, 주35, 주3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3-2)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40%이하, 강화용적률 - 22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1, 주6~8, 주10~11, 주13~18, 주25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주15의 경우 연접한 김포장기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주차장(F1)과 합병하여 개발시 김포한강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른다.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후면도로나 부출입구변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P3-1)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70%이하, 강화용적률 - 25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주1~ 주21, 주24~ 주41, 주45~ 주47	주4, 주12, 주19, 주33, 주36, 주38 ~41, 주4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3-2)
		건폐율	• 9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70%이하, 강화용적률 - 255%이상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붕의 형태는 평지붕을 원칙으로 옥상녹화(70% 이상)를 하여야 한다.
	주20, 주26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5)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19m이하 (수로변 공공공지의 계획고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주2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6)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20m이하 (대로변 대지경계부 계획고 기준)
		배치 및 건축선	-
	주24, 주27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에 한하며, 해당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건축연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 (도면표시 : P7)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600%이하, 강화용적률 - 570%이상
		높이(층)	• 10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유1~3, 유5~6, 유8~14	유1~3, 유5~6, 유8~14	용도	• 유치원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용도를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의 70%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S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초1~초13	초1~초13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도면표시 : S2)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1~중6	중1~중6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도면표시 : S3)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고1~고5 특1	고1~고5 특1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도면표시 : S4, S5)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대1	대1	용도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조에 의한 대학 (대학 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도면표시 : S6)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배치를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종교2~3 종교6~11, 종교13~ 18, 종교21~ 29	종3,종6,종8,종 9,종10, 종14, 종16~17, 종22, 종25~27, 종2, 종7,종11,종13, 종15,종18,종21 ,종23,종24,종2 8,종29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등)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RF)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목회자 숙소 등), 노유자시설, 유치원에 한해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RF) (단,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은 부수용도로서 건축물 연면적의 30%이하에 한함)
	종교2~3 종교6~11, 종교13~18, 종교21~29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 강화용적률 - 190%이상
	종2~3,종6,종9 종13~18,종22, 종25~26,종28	높이(층)	-
	종7~8, 종10~11,종21, 종23~24,종27, 종29		• 4층 이하
복2~ 복10	복2~복4, 복6~복7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1)
	복5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2)
	복8~복10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의 사회복지시설 중 보육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W3)
	복2~ 복10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청1	청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 청소년수련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U)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30%이하 강화용적률 - 21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체2~체3	체2~체3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 2종 근린생활시설(단,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단란주점 제외), 운동시설(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에 한하여 허용한다. 이때,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은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한다. (도면표시 : H)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적률 - 360%이하, 강화용적률 - 34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집2	집2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1)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폐1	폐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2)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4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1	문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의 문화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CU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200%이하, 강화용적률 - 19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1~위6	위1~위5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부대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호에 한함)(도면표시 : G1)	
		위6	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대시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호에 한함)도면표시 : G2)
	위1~위5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위6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1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위1~위6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방1	방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의 방수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7)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의1	의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가목 중 종합병원, 100병상이상 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정신병원 제외) 포함] 및 그 부속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강화용적률 - 380%이상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연구1	연구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회의장, 전시장 (부수용도는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도면표시 : I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300%이하, 강화용적률 - 285%이상
		높이(층)	• 5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시험1	시험1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교육원, 직업훈련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회의장, 전시장 (부수용도는 전체시설 연면적의 30% 이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1중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10%이내)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시설 (도면표시 : I2)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허용용적률 - 400%이하, 강화용적률 - 380%이상
		높이(층)	• 7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자족시설 1~2	자족시설 1~2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8-1>에서 제시한 용적률 기준으로 <별표8-2>와 같이 용적률 행위강화 항목의 준수여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자족시설2의 경우 대지의 일부를 지침 및 지침도에 지정되지 않은 도로, 공개공지 등 공공시설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 <별표8-3>에 따라 허용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8-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자족시설2의 경우에는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가마지천에 면한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m 이상, 공동주택과 마주하는 부분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5m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한다.
		형태 및 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외벽의 처리 - 건축물의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변1~2, 전기1	변1~2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3)
		전기1	용도
	변1~2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전기1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변1~2, 전기1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열1	열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도면표시 : Z6)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400%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지1~2	지1	용도	• 지하차도 전기실 (도면표시 : Z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층수	-
	지2	용도	• 지하차도 관리사무소 (도면표시 : Z8)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60% 이하
		층수	• 1층 이하
	지1~2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통신1	통신1	용도	• 도시통합정보센터 • 부대시설 (도면표시 : T1)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8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주제공원7 (봉안시설)	주제공원7 (봉안시설)	용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 제19조 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9호의 봉안시설과 봉안시설의 부속용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2% 이하
		용적률	• 8% 이하
		높이(층)	-
		배치 및 건축선	-
		형태 및 외관	-

< 별표 8-1 > 자족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자족시설용지	
	도면 표시	MS1	MS2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MS-12에 한함)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학원, 교육원, 직업 훈련소 • 업무시설(오피스텔 면적은 전용면적 40㎡ 이하로서 MS-2,3,5,6,8~11만 가능) •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 집적기반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 창고시설 • 방송통신시설 • 「관광진흥법」 제3조제①항제2호가목 호텔업시설, 4호국제회의업시설, 7호 관광편의 시설업시설 (MS-1,4,7,12만 가능) • 원예시설, 첨단농업시설,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시설, 그 밖에 농업연구 관련 시설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이내이되 지식산업센터,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호텔업시설 내 지원시설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연면적은 포함된 것으로 봄)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검사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관람장, 전시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의료시설 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 전용면적 40㎡ 이하로 공급) •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 • MS-13,MS-14-3에 한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집적기반시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 • 운동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과 안마미술소제외) (바닥면적의 합이 전체시설 연면적의 30%이내이되 단독건축물 형태도 가능,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내 지원시설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연면적은 포함된 것으로 봄)
	건폐율		6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400%이하 (500%이하)
	강화용적률	475%이상	375%이상 (475%이상)
	최고층수	10층이하	15층이하
	해당블럭	MS1	MS2

< 별표 8-2 > 기타시설용지 허용용적률 강화 항목

구 분		생태면적률	비 고
주차장	P1-1, P1-2	20%미만 (-45%)	
	P2-1, P2-2	20%미만 (-25%)	
	P3-1, P3-2	20%미만 (-15%)	
	P5, P6	20%미만 (-10%)	
	P7	20%미만 (-30%)	
W1~W3, CU1		40%미만 (-10%)	
S1~S4		60%미만 (-10%)	
RF		30%미만 (-10%)	
U		30%미만 (-20%)	
H, M		30%미만 (-20%)	
도시지원시설용 지	I1	20%미만 (-15%)	
	I2	20%미만 (-20%)	
MS1,2		20%미만 (-25%)	

※ 생태면적률의 계산은 <별표11>을 기준으로 산출함

<표 8-3 > 자족시설용지(MS2) 허용용적률 완화항목

공공시설 제공 비율	제공 비율
5%이상 (+31%)	11%이상 (+74%)
6%이상 (+38%)	12%이상 (+81%)
7%이상 (+45%)	13%이상 (+89%)
8%이상 (+52%)	14%이상 (+97%)
9%이상 (+59%)	15%이상 (+100%)
10%이상 (+66%)	

※ 공공시설 제공 비율은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임

※ “공공시설”이란“도로” 및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를 말함.

< 별표 9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롭게 조성되는 김포한강 신도시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하도록 한다. • 김포한강 신도시만의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할 수 있는 독특한 개성과 통일감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선도적인 지구가 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지주이용간판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돌출간판·옥상간판·창문이용광고물·세로형간판·에드빌론 등은 표시할 수 없다. •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김포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간판의 설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를 1개 이내로 하며, 10층 이하 가로형간판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1개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약국·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간판을 표시하는 경우 2. 가로형 information 또는 연립지주이용간판 중 1개를 선택 보조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왕복2차선 이상의 도로의 곡각지점(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광고물은 사업승인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주차장용도외의 옥외광고물은 설치할 수 없다. • 김포한강 신도시내 주요시설용지의 옥외광고물은 ‘<표IV-7-1>용지별 광고물의 설치유형 및 수량’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7장 옥외광고물 편을 따른다.
		광고물의 색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바탕색은 주변 건물 및 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순도 높은 원색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건물의 외장색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통색을 사용하되 가급적 명도 5이상 채도 4이하로, 흑색·적색의 사용은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동일 건물 내 광고물의 바탕색은 같은 색상으로 표시하되, 그 지역의 독창성, 정체성(고유색상, C.I.P) 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제품 이미지 등 고유 색채의 사용은 흑색 또는 적색의 경우 전체 표시면적 2분의 1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CI(Corporate & Identity), SI(Simbol & Identity), BI(Brand & Identity) 등의 경우 심벌마크와 로고타입만 인정하고, 고유 색채의 사용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 • 광고물등은 가급적 자극적이지 않은 파스텔 톤의 색채, 광고물등의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색채 또는 간접조명에 의한 색채효과 등을 고려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광고물등의 형태 및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재료 등은 양질의 자재로 마감하고 구조적·시각적으로 안정감을 확보하고 합판, 비닐, 스텔트, 합석 등의 불량재질 및 저질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은 벽면의 상태를 고려하여 크기와 위치를 정하여야 하며,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광고물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광고물등의 설치·변경 또는 제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거시 설치 흔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광고물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하는 벽면의 일정위치에 녹이 슬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고급재료를 이용한 광고물 게시시설을 벽면으로부터 돌출폭 10cm이내로 견고하게 하여 부착할 수 있다. • 광고물 등은 미관풍치와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장방형·정방형·타원형 기타 모형 등으로 변형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형된 광고물은 규정된 면적과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광고물 등은 교통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광고물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고물 등의 문자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맞춤법·국어의 로마자표기법·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여야 한다. • 딱딱한 느낌을 주는 사각형체의 문자는 가급적 사용을 억제하고, 상품이나 업소를 상징하는 픽토그램과 심벌을 개발하여 활용한다. • 공공표지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자, 도형 등은 표기할 수 없다. • 문자의 크기 등이 당해 건물·공작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등과 관련이 없는 것을 부착하거나,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영업내용은 광고물의 표시 면적 중 각 면의 10% 이내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문자, 도형 등으로 표시된 광고물,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특별규제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지구의 거리, 수변상업지구내 상업용지에 한해 차별화된 도시이미지형성이 요구되는 특정지역은 활력적 도시공간연출을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강화구역”을 지정하며, 해당구역내의 옥외광고물은 법, 령, 시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지침의 내용을 강화 적용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7장 옥외광고물 편을 따른다.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 및 상업지역과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경우에는 네온류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1. 가로형간판의 입체형 문자·도형에 LED를 삽입하여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로 표시하는 경우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등(“+,”약”)의 경우에만 점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기배선, 안정기 등 전기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영 제31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간판은 1개업소당 하나의 간판을 건물의 10층이하 정면에 입체형 문자·도형 등을 부착할 수 있다. 문자의 크기는 도로폭이 25M미만인 경우 가로50CM×세로50CM, 도로폭이 25M이상 50M미만인 경우 가로60CM×세로60CM, 도로폭이 50M이상인 경우 가로70CM×세로70CM 이내로 하여야한다.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에는 건물명을 제외한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며, 건물명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여야 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가로형간판을 양면에 표시하는 경우 그 형상이나 높이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가로형간판은 입체형 설치만 가능하며 판류형의 광고물은 금지한다. 건물 최상단(옥상구조물의 벽면 포함)중 1면에 입체형으로 건물명(회사명 포함) 건물을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표시가능하다. 광고물은 양카를 사용하여 벽에 직접 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이프, 알루미늄 등 보조재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조재는 광고물 세로크기의 2/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호의 개별문자, 심벌, 로고는 건물의 폭을 벗어날 수 없다. 2층 이상에 설치되는 가로형간판 중 건축연면적 2,000㎡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모든 가로형간판의 표시위치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로형간판 중 면적이 5㎡ 이하인 가로형간판도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로형 종합안내판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로형 종합안내판은 업소가 2개 이상인 건물에 한하여 1개의 가로형 information을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 information의 최대크기는 가로 1.5m, 세로3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에 입점한 업소의 수가 많아 모든 업소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에 따라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출형간판의 표시를 금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상 가로형간판의 표시가 어려운 경우와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에는 1층에 한하여 1개업소에 한해 1개만 표시하되 건물외벽에 돌출형으로 표시하고 표시등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점포에 한하여 점포에 한하여 점포별 1개 이내, 면적 0.36㎡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광고물의 표시내용은 2개면 이내로 하되, 돌출간판의 측면(건물의 정면에서 보이는 면) 부분에는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광고물 규제강화구역에는 개성 있는 가로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김포시 옥외광고물심의회에 심의를 득한 후 행어형 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간판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 2. 가로, 세로 각 50cm 미만, 두께 10cm 미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부지안의 지주이용간판은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해 연립형식(종합안내판)으로 건물의 주출입구 주변에 1개만 표시·설치할 수 있다. • 연립형식(종합안내판) 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6m이내, 가로 폭은 1.2m 이내로 두께는 0.5m 이내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 상호·위치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위치에 한하며,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표시하되 층별 위치를 변경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주이용 간판 설치 시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 및 통행의 용이 및 도시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보도가 없을 경우 차도로부터 3m이상)을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하단으로 보행인 또는 차량 등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 표시면은 지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이격된 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기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파이프 등의 단순지주를 이용한 돌출광고물의 형태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는 김포한강 신도시내의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지주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 설치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토지주, 건물주와 업소주가 합의를 통하여 제안된 표시제한·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② 광고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수량감소, 면적감소,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김포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 별표 10 >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 통		기 본 원 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야간 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으로 지정된 용지는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구 분</th> <th colspan="2">대 상 용 지</th> </tr> <tr> <td></td> <th style="width: 60%;">기존 권장 지역</th> <th style="width: 20%;">추가 권장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상업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업무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수변상업 시설 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아파트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단지: Ac-11, Ac-12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주상복합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 자족시설, 문화예술용지</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CA-15 </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공급처리시설</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td> <td></td> </tr> <tr> <td>교량</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대 상 용 지			기존 권장 지역	추가 권장지역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	수변상업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	아파트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단지: Ac-11, Ac-12 	-	주상복합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	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 자족시설, 문화예술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CA-15 	-	공급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구 분	대 상 용 지																													
				기존 권장 지역	추가 권장지역																												
			상업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 역세권 주변 상업용지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용지 	-																												
			업무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번 페스티벌 존 업무용지 : B1-1, B1-2, B1-3, B1-4 	-																												
			수변상업 시설 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변 수변상업시설 용지: C4-1, C4-2, C4-3, C4-4, C4-5, C4-6, C4-7, C4-8, C4-9, C4-10, C4-11, C4-12, C4-13, C4-14 	-																												
			아파트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7개 단지: Ac-01, Aa-03, Ab-04, Aa-07, Ab-09, Ab-10, Ac-16 한강변에 위치한 2개단지: Ac-11, Ac-12 	-																												
			주상복합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2개 단지: Cc-01, Cc-03, 수변상업시설용지 서측에 위치한 1개 단지 : Cc-05 	-																												
			문화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 자족시설, 문화예술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한강신도시 내 주요 문화시설: 문1 김포한강신도시 진입부에 위치한 도시지원시설용지 김포한강신도시의 어번 페스티벌 존 외곽부에 위치한 자족시설용지 : MS-1, MS-2, MS-3, MS-4, MS-5, MS-6, MS-7, MS-8, MS-9, MS-10, MS-11, MS-12 문화예술용지 : CA-1, CA-2, CA-3, CA-4, CA-5, CA-6, CA-7, CA-8, CA-9, CA-10, CA-11, CA-12, CA-13, CA-14, CA-15 	-																												
			공급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간선도로변 혐오시설의 경관계획적 조성을 통한 이미지 제고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대수로를 횡단하는 간선 도로축상 교량 																																

나.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변경)

- 1) 단독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2)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3) 문화예술용지 (변경)

■ 기 정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3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한계선 및 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용지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변경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문화1 ~ 문화3	문화1 ~ 문화3	대지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및 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차량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의 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1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맞벽건축의 경우 2개~4개 획지 단위로 공동주차통로를 확보하도록 권장한다.
		부설 주차장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용지내 주차장은‘주차장법’및‘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설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의 포장은 ‘투수성 포장’1)을 원칙으로 한다.(단, 피로티 하부 주차장 제외)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안전시계 확보 : 대지내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경사로의 시작점 또는 카엘리베이터 입구)은 전면도로측 대지경계선에서 3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전면도로에서 건축선의 후퇴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벽면한계선(지정선) 또는 건축한계선(지정선)에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이때 대지경계선에서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시작점까지의 차량동선은 보도와 단차가 없도록 평탄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경보장치, 신호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1)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성포장으로 본다.

- 4) 공동주택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5) 주상복합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 6) 상업·업무시설용지 (변경)

■ 기정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2,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2,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3.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조경은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 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대지안 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2,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2,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1)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2) :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 변경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 소파1,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 파출1~ 2, 동1~4, 보건1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 소파1,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 파출1~ 2, 동1~4, 보건1	대지내 공지	전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면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건축지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 중 공개공지나 공공조경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는 공공보행통로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개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개공지는 <별표12>의 기준을 따르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면도로변, 전면도로 각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공지”는 지침도에서 지정한 위치를 권장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행자의 출입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상업지역 활성화 및 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지점 기타 특별계획구역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조경은 <별표12>의 기준을 따른다.
			공공 보행 통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보행통로의 바닥은 인접한 보도 또는 건축물 내부의 바닥과 동일한 포장재료나 포장패턴 등으로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바닥의 높이는 인접보도의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 건축물을 통과하여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지정된 공간(층단위 공간)이외의 부분은 건축물의 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조성기준은 <별표12>을 따른다.
		대지안 의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 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 연면적 1,000㎡~2,000㎡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 연면적 1,000㎡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일상1 근린1~ 근린2 업무1~ 업무5, 소방서1, 소파1, 우체1~ 2, 전화1~ 2, 경찰서1, 파출1~ 2, 동1~4, 보건1	부설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김포시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시설: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안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층에 건축선으로 확보된 전면공지 면적의 20% 이상을 자전거 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1):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공간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을 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옥외주차장의 조경(2):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미터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 1미터이상, 높이 0.5미터 내지 0.6미터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3미터 이상, 수관폭 1.5미터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13>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쓰레기관로 수송시설의 설치 및 기준은 <별표14>을 따른다.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15>를 따른다.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표16>를 따른다.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친화적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의 내용을 준용하되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은 설치권장 및 의무기준의 1.5배를 강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장한다.

7) 수변상업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8) 공공시설물 및 기타시설용지 (변경없음) : 게재생략

IV.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1.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V.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김포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980-5507)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031-999-57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